

매장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총서 제9책

고양 문봉서원지 기본조사용역 보고서

200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고 양 시

매장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총서 제9책

고양 문봉서원지 기본조사용역 보고서

박경식
홍정원
방유리
김호준
이동준

200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고 양 시

본 보고서는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와 고양시의 용역계약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조사 및 보고서 발간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고양시에서 부담하였다.
(조사 경비 : 26,800,000원)

표지설명

문봉서원지 전경

目 次

I. 緒言	9
II. 조사경위 및 방법	11
1. 조사경위	11
2. 조사방법	11
III. 조선시대 서원의 역사와 기능	15
IV. 문봉서원과 고양8현(高陽八賢)	51
V. 지표 및 시굴조사	81
1. 조사내용	81
2. 출토유물	86
VI. 문봉서원 복원계획 도면	131
VII. 조사자 의견 - 정비 복원을 위한 제언	174

지도 · 사진 · 탐본 · 도면목차

1. 지도 목차

지도 1. 문봉서원지 위치도(1:25,000)

지도 2. 문봉서원지 위치도 (1:5,000)

2. 사진 목차

1) 조사 유구

사진 1. 문봉서원지 원경

사진 2. 문봉서원지 근경

사진 3. 문봉서원지 동쪽 경작지 및 창고

사진 4. 문봉서원지 동쪽 주택가

사진 5. 문봉서원지 동쪽 경작지

사진 6. 문봉서원지 서쪽 경사면

사진 7. 문봉서원지 서쪽 경사면 배수로

사진 8. 개토제

사진 9. 시굴조사전 전경

사진 10. 지표에 드러나 있던 방형초석

사진 11. 시굴 1트렌치 전경(남동쪽에서)

사진 12. 시굴 1트렌치 전경(북서쪽에서)

사진 13. 시굴 1트렌치 초석 및 기단 노출상황
(남쪽에서)

사진 14. 시굴 1트렌치 초석 및 기단 노출상황
(북서쪽에서)

사진 15. 시굴 1트렌치 초석 및 기단 노출상황
(근경)

사진 16. 시굴 1트렌치 초석1 노출상황

사진 17. 시굴 1트렌치 초석2 노출상황

사진 18. 시굴 1트렌치 기단면석 축조상태

사진 19. 시굴 1트렌치 서벽 토층상태

사진 20. 시굴 1트렌치 백자제기 출토상태

사진 21. 시굴 2트렌치 전경(북동쪽에서)

사진 22. 시굴 2트렌치 전경(남쪽에서)

사진 23. 시굴 2트렌치 기단면석 축조상태

사진 24. 시굴 3트렌치 전경(동남쪽에서)

사진 25. 시굴 3트렌치 전경(북서쪽에서)

사진 26. 시굴 3트렌치 피트(동남쪽에서)

사진 27. 시굴 3트렌치 북벽 토층상태

사진 28. 시굴 4트렌치 기단면석 노출상황
(동쪽에서)

사진 29. 시굴 4트렌치 기단면석 노출상태
(서쪽에서)

사진 30. 방치되어 있는 원형 초석

사진 31. 작업광경

사진 32. 매몰 후 전경

2) 출토유물

사진 1. 과도문 평기와

사진 2. 과도문 평기와

사진 3. 과도문 평기와

사진 4. 과도문 평기와

사진 5. 과도문 평기와

사진 6. 과도문 평기와

사진 7. 과도문 평기와

사진 8. 과도문 평기와

사진 9. 과도문 평기와

사진 10. 기하문 평기와

사진 11. 기하문 평기와

사진 12. 기하문 평기와

사진 13. 기하문 평기와

사진 14. 기하문 평기와

사진 15. 기하문 평기와

사진 16. 기하문 평기와

사진 17. 기하문 평기와

사진 18. 기하문 평기와

사진 19. 기하문 평기와

사진 20. 기하문 평기와

사진 21. 무문 평기와

사진 22. 무문 평기와

사진 23. 무문 평기와

사진 24. 백자 제기

사진 25. 백자 제기

사진 26. 백자 제기

사진 27. 백자 제기

사진 28. 백자 제기

3. 답본 목차

답본 1. 과도문 평기와

답본 2. 과도문 평기와

답본 3. 과도문 평기와

답본 4. 과도문 평기와

답본 5. 과도문 평기와

답본 6. 과도문 평기와

답본 7. 파도문 평기와
답본 8. 파도문 평기와
답본 9. 파도문 평기와
답본 10. 기하문 평기와
답본 11. 기하문 평기와
답본 12. 기하문 평기와
답본 13. 기하문 평기와
답본 14. 기하문 평기와
답본 15. 기하문 평기와

답본 16. 기하문 평기와
답본 17. 기하문 평기와
답본 18. 기하문 평기와
답본 19. 기하문 평기와
답본 20. 기하문 평기와
답본 21. 무문 평기와
답본 22. 무문 평기와
답본 23. 무문 평기와

4. 도면 목차

1) 조사유구

도면 1. 현황 실측 평면도 ① (1:1,200)
도면 2. 현황 실측 평면도 ② (1:300)
도면 3. 문봉서원지 종단면도
도면 4. 시굴조사 지역 전체 평면도
도면 5. 시굴 1 확장트렌치 평면도
도면 6. 시굴 1 트렌치 서벽 토층도
도면 7. 시굴 1 트렌치 남벽 토층도
도면 8. 시굴 1 확장트렌치 초석① 입면도
도면 9. 시굴 1 확장트렌치 초석② 입면도
도면 10. 시굴 2 확장트렌치 평면도
도면 11. 시굴 2 확장트렌치 서편 기단열 입면도
도면 12. 시굴 2 트렌치 남벽 토층도
도면 13. 시굴 3 트렌치 서벽 토층도
도면 14. 시굴 4 트렌치 평면도
도면 15. 원형 초석 평면도 및 입면도

2) 출토유물

도면 1. 백자 제기
도면 2. 백자 제기
도면 3. 백자 제기
도면 4. 백자 제기
도면 5. 백자 제기

3) 문봉서원지 복원계획 도면

도면 1. 토지 이용 계획도 (1:400)

도면 2. 배치도 (1:400)

도면 3. 대지 종단면도 (1:300)

도면 4. 사당 평면도 (1:50)

도면 5. 사당 정면도 (1:50)

도면 6. 사당 측면도 (1:50)

도면 7. 사당 배면도 (1:50)

도면 8. 사당 종단면도 (1:50)

도면 9. 사당 횡단면도 (1:50)

도면 10. 사당 양시도 (1:50)

도면 11. 사당 와복도 (1:50)

도면 12. 강당 평면도 (1:50)

도면 13. 강당 정면도 (1:50)

도면 14. 강당 측면도 (1:50)

도면 15. 강당 배면도 (1:50)

도면 16. 강당 종단면도(1:50)

도면 17. 강당 횡단면도 (1:50)

도면 18. 강당 양시도 (1:50)

도면 19. 강당 와복도 (1:50)

도면 20. 동채 평면도 (1:50)

도면 21. 동채 정면도 (1:50)

도면 22. 동채 측면도 (1:50)

도면 23. 서재 평면도 (1:50)

도면 24. 서재 정면도 (1:50)

도면 25. 서재 측면도 (1:50)

도면 26. 내삼문 평면도 (1:50)

도면 27. 내삼문 정면도 (1:50)

도면 28. 내삼문 배면도 (1:50)

도면 29. 내삼문 측면도 (1:50)

도면 30. 내삼문 종단면도 (1:50)

도면 31. 내삼문 횡단면도 (1:50)

도면 32. 내삼문 양시도 (1:50)

도면 33. 내삼문 와복도 (1:50)

도면 34. 외삼문 평면도 (1:50)

도면 35. 외삼문 정면도 (1:50)

도면 36. 외삼문 배면도 (1:50)

도면 37. 외삼문 측면도 (1:50)

도면 38. 외삼문 종단면도 (1:50)

도면 39. 외삼문 횡단면도 (1:50)

도면 40. 외삼문 양시도 (1:50)

도면 41. 외삼문 와복도 (1:50)

여 백

I. 緒 言

본 보고서는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문봉동 산 73-2번지에 자리한 문봉서원지에 관한 지표 및 시굴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문봉서원은 1688(숙종 4)년에 건립되었고, 1709(숙종 35)년에 사액서원으로 제수되어 고양지역의 학문발전에 기여하였다. 이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철해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문헌에 의해서만 서원의 편린과 이곳에 제향되었던 高陽八賢의 면모를 살필 수 있을 따름이었다. 이 같은 상태에서 고양시에서는 문봉서원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복원자료를 수집하고자 본 연구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본 연구소에서는 2000년 11월 16일부터 2001년 1월 12일에 걸쳐 다음과 같은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지도 위원 : 최영희(한림대학교 석좌교수, 문화재위원)
故 한병삼(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문화재위원)
정영호(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문화재위원)

단 장 : 박경식(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소장)

조 사 원 : 서영일(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상임연구원)
김철웅(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상임연구원)
엄기표(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조사보조원: 방유리(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원)
김호준(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이동준(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문봉서원지에 대한 조사는 박경식의 주관 하에 전 조사원과 우리 대학교 사학과에 재학중인 이상수·이재실·홍석균·김현우·조충현이 시종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현장조사는 박경식의 주관하에 서영일과 이동준이 담당하였고, 유구의 실측은 김호준·이동준이 전담하였다. 그리고 출토유물의 정리는 김철웅·엄기표·방유리가, 사진촬영은 박경식이 전담하였다.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유물 및 사진정리는 전 조사원이 분담하였고, 출토유물의 실측과 복원은 방유리가 전담하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작성은 박경식·홍정원·김호준·이동준·방유리가 분담하여 집필하였다. 그리고 문봉서원에 대한 정비복원 도면은 한빛토건 이주희 소장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아주신 한병삼 최영희 정영호 지도위원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타계하신故 한병삼 선생님의 노고를 잊을 수 없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본 연구소에서 주관한 여러 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와 보고서 집필 과정에서도 수시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아마 지금의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가 있기까지에는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으리라 믿는다. 그동안 본 연구소에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면을 빌어서나마 삼가故한병삼 선생님의 영전에 조의를 표한다. 아울러 본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고양시 황교선시장님, 문화공보담당관실 이종구담당관님, 최경현계장님, 이종선선생님, 사유지를 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굴조사 내내 사업을 포기하며 성원해 주신 대동관별의 최원균시장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행정적인 실무를 진행해 주신 단국대학교 연구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II. 조사경위 및 방법

1. 조사경위

고양시 덕양구 문봉동 산 73-2번지에 위치한 문봉서원지는 1688년(숙종 4)에 건립된 서원으로 1709(숙종 35)년에 사액서원으로 제수되어 고양지역의 학문발전에 기여하였다. 이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철해되어 폐허화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문헌에 의해서만 그 편린과 제향되었던 高陽八賢의 면모를 살필 수 있을 따름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양시에서는 문봉서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본 연구소에 의뢰하였다.

첫째, 현 문봉서원지 일원에 대한 지표 및 시굴조사를 병행하여 이곳이 문봉서원지임을 밝힌다.

둘째,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현 위치에 문봉서원의 복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현재 고양시에서 계획중인 문봉서원 복원에 대한 기본 계획도면을 작성한다.

조사단에서는 이같은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지니고 조사에 임하였다.

첫째, 문봉서원지에 대한 지표 및 시굴조사를 통해 서원의 전체 윤곽은 물론 남아있는 건물지의 규모를 확인한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서원의 건립에서 철해되기까지의 과정과 문봉서원에 제향되었던 고양8현의 면면을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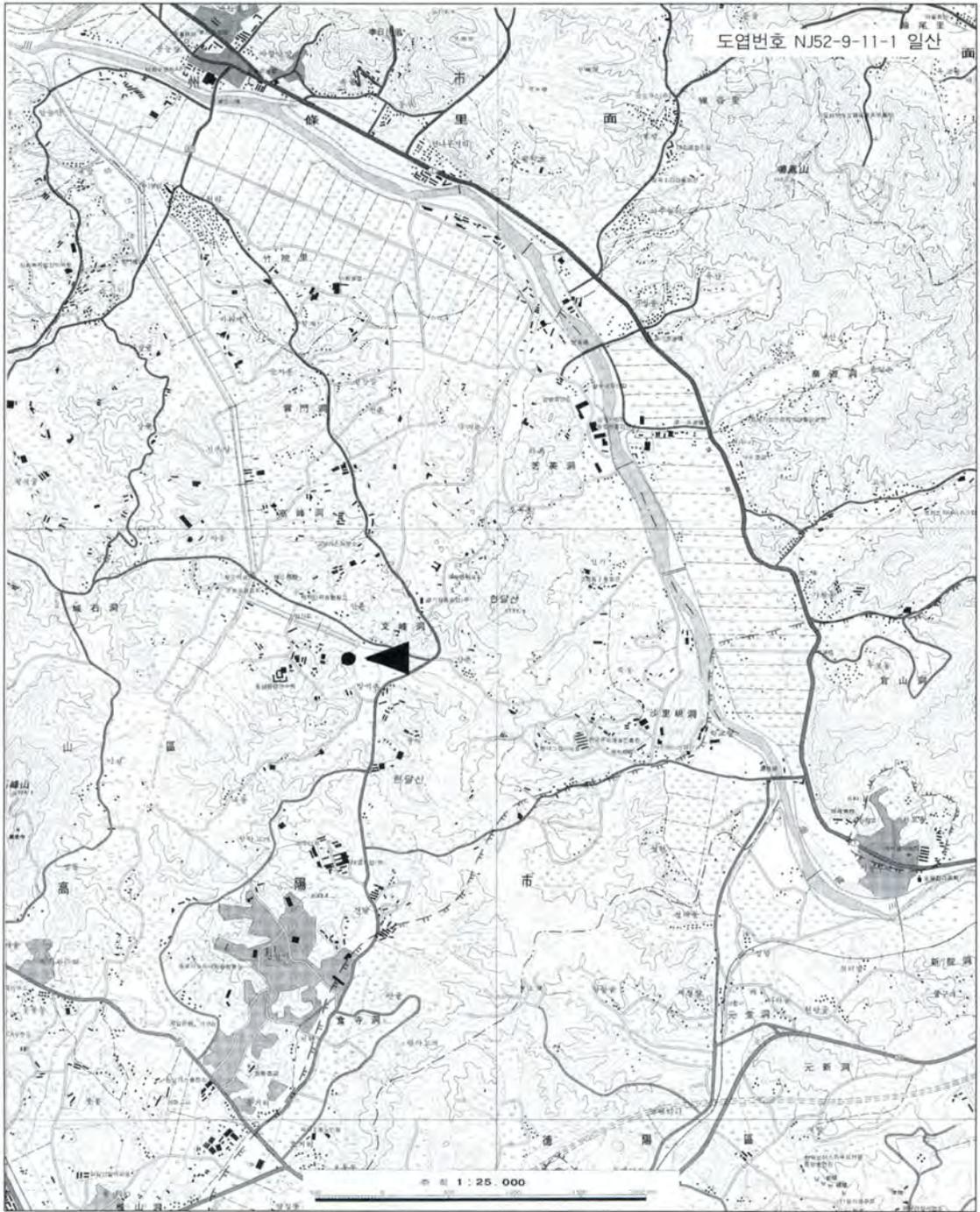
셋째, 문봉서원은 비록 터만 남은 유적이지만,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고양시의 유적보호와 시민의 향토문화 의식 함양에 가일층 기여한다.

2. 조사방법

문봉서원지에 대한 조사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조선시대 서원의 역사와 기능 및 문봉서원과 고양8현에 대한 인물사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문봉서원지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산 73-2번지 일대는 현재 대동관벨기업이 임대한 개인 소유의 사유지로 능선을 삭토한 후 건축자재의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지조사는 수 차례에 걸친 답사를 통해 잔존해 있을 유구의 색출과 서원에 관한 주민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그러나 현지에

서 확인되는 것은 지표에 노출된 초석 2기 불과하였다. 주민들에 의하면 조사대상 지역은 근년에 이르기 까지 경작지로 활용하였고, 서쪽의 야산에 형성된 경사면은 목장과 경작을 위해 삭토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문봉서원지에 대한 현장 조사는 전체 측량과 시굴조사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시굴조사에서는 대상지역에 4개소의 시굴트렌치를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지도 1. 문봉서원지 위치도(1:25,000)



지도 2. 문봉서원지 위치도 (1:5,000)

Ⅲ. 조선시대 서원의 역사와 기능

1. 머리말

서원은 조선중기 이후 유생의 講學과 先賢奉祀를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이자 향촌 운영기구이다. 그 기원은 중국의 당나라 말기부터 찾을 수 있지만 定制化된 것은 宋나라에 들어와서이다. 특히 朱子가 白鹿洞書院을 열고 道學鍊磨의 도장으로써 이를 보급한 이래 南宋·元·明을 거치면서 성행을 보게 되었다. 조선에 있어서 서원의 기원은 16세기 중엽인 중종 38년 周世鸞이 白雲洞書院을 창건한데서 시작되었다. 중국의 서원이 관인 양성을 위한 준비기구로서 학교의 성격을 고수하였음에 비하여, 조선의 서원은 사림의 藏修·講學과 教化를 위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림의 聚會所로서 정치·사회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띄었다. 즉, 사림 세력이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앙정치로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는 17·18세기에 이르러서는 붕당정치의 지역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띄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원은 사림의 중앙 진출과 붕당의 발생, 그리고 붕당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시도된 탕평정책과 이후 전개되는 세도정치라는 정치 운영 형태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그리하여 서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간 약 18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을 정도이다.

일찍이 朴齊炯은 『近世朝鮮政鑑』에서 조선시대 붕당 중심의 정치에 있어 서원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서원 연구는 그 출발 과정에서 일본에 의한 타율성론이나 정체성론에 입각한 식민사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여 당쟁의 소굴이라든가, 양반이 백성을 토색질하는 본거요, 학교 제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본으로서 거론되는 정도에 그쳤다.

서원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연구가 시작되는 것은 柳洪烈의 「조선에 있어서 서원의 성립」에서 비롯된다.¹⁾ 여기서 그는 서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서원이란 국가설립의 교육기관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지방 유지의 힘으로 建營된 地方儒生을 위한 私立學校이었고, 그 설립의 취지는 朱子의 白鹿洞書院을 따른 것으로서 儒林 상호간에 釀成된 점에 있어서는 儒林의 藏修鍊磨의 地이며, 그들의 유일한 통합기관이며 집합소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書院의 出現은 당시 社會에 지대한 충동을 주게 되어 이후 地方에 분산된 儒林들로 하여금 이를 모방하여 各地에 書院을 설치하여 講學處로 삼는 한편 賜額運動 등을 일으킴으로써 朝鮮朝中期 이후의 社會에 物心兩面

1) 유흥렬, 「조선에 있어서 서원의 성립(상·하)」, 『청구학총』 29, 30, 청구학회, 1939; 『한국사회 사상사논고』, 일조각, 1980에 재수록.

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유흥렬의 서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이후의 서원 연구에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 관인학 자들에 의해 인식된 서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 해방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별다른 연구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에 들어와 내재적 발전론의 적용에 따른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서원에 대한 연구 또한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 영향을 받은 1970년대에 들어와 鄭萬祚의 「17-18세기의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²⁾과 최완기의 「조선 서원 일고」³⁾ 등을 계기로 새로운 연구 방향이 터전을 잡게 되어, 1970년대 후반부터는 서원에 관련된 각 분야별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80년대 이후에는 각 서원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등 연구의 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세밀화되었다. 특히 실록 뿐만 아니라 『列邑院宇事蹟』, 『書院勝錄』, 『俎頭錄』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서원의 古文書, 書院誌, 書院日記, 通文 등을 발굴함으로써 이전 시기에 비하여 서원 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⁴⁾

본고에서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서원의 성립에서부터 철폐기까지의 제반 과정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서원의 成立과 그 건립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⁵⁾ 우선 서원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시대적 배

2) 정만조, 「17-18세기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5.

3) 최완기, 『조선서원 일고』, 『역사교육』 18, 역사교육연구회, 1975.

4) 서원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고석규, 「조선 서원·사우에 대한 연구의 추이와 그 성격」, 『외대사학』 창간호, 1987.

정만조, 「최근의 서원연구의 동향에 대한 검토」, 『한국학논총』 18,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1995.

5) 서원의 성립과 건립 과정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유흥렬, 『조선에 있어서 서원의 성립(상·하)』, 『청구학총』 29, 30, 청구학회, 1939; 『한국사회 사상사논고』, 일조각, 1980에 재수록.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 사우에 대한 시론-특히 사립의 건립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5.

최완기, 「조선서원 일고」, 『역사교육』 18, 역사교육연구회, 1975.

_____, 「조선조 서원성립의 제문제」,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정만조, 「조선서원의 성립과정」,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윤희범, 「백운동서원의 설립과 풍기사립」, 『진단학보』 49, 진단학회, 1980.

김용우, 「조선 서원·사우에 대한 일고찰-건립추이 및 제향인물을 중심으로」, 『호서사학』 13, 호서사학회, 1985.

송양섭, 「서원의 사묘성립과정에 관한 고찰」, 『논문집』 29, 춘천교육대학교, 1989.

이상구, 「장흥지방 원사의 건립배경과 배향인물의 성격」, 『호남향사회보』 2, 1991.

박지현, 「전남지역 서원·사우의 건립성격」, 『호남향사회보』 2, 1992.

박양자, 「오봉서원 설립배경과 그 유학적 성격」, 『우리문화』 창간호, 1994.

이수환, 「위산 구강서원의 설치와 사액과정」, 『대구사학』 49, 대구사학회, 1995.

_____, 「서원건립활동」, 『한국사 28-조선 중기 사람세력의 등장과 활동』, 국사편찬위원회, 1996.

경을 관학의 부진과 사림 세력의 교학진흥책에서 찾아보고, 그 시초인 백운동서원의 건립을 고찰하여 최초 서원의 성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서원 건립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시기별·지역별 고찰과 함께 그 건립 주체의 성격을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

둘째, 서원의 機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적 기능에서는 서원의 시설과 배치, 임원의 구조와 역할, 교육의 내용과 평가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한다.⁶⁾ 정치적 기능에서는 시기의 변천에 따라 서원이 중앙 정계의 변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전개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회적 기능에서는 향촌 사회에서 사족 중심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원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⁷⁾

셋째, 서원의 폐단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⁸⁾ 1절에

박헌순, 「수원지역 서원의 건립주체와 제향인물고」, 『수원문화사연구』 2, 수원문화원, 1998.

6) 서원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완기, 「조선조 서원의 교학기능 일고」, 『사학연구』 25, 한국사학회, 1975.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_____, 「서원의 교육문화적 성격」,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이병직, 「조선전기 서원의 교육 기능」,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김춘현, 「서원의 형성배경과 교육실제」, 『공주교육대학논문집』 17, 공주교육대학교, 1981.

민병하, 「조선시대의 서원교육」, 『대동문화연구』 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3.

이시용, 「조선조 서원교육」, 『논문집-교육편-』 17, 인천교육대학교, 1983.

이수환, 「조선시대 서원의 내부구조-원임, 원생을 중심으로-」, 『교남사학』 2,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1986.

송양변, 「조선시대 서원교육에 관한 일고찰」, 『교육연구』 8, 1990.

윤희면, 「조선후기 서원의 액내원생」, 『성곡논총』 23, 1992.

_____, 「조선시대 서원 원임 연구」, 『역사교육』 54, 1993.

송양섭, 「조선시대의 서원교육-강원도와 관련하여」, 『강원문화연구』 13, 1994.

심의보, 「17세기 조선조 서원의 성립과정과 교육활동-돈암서원을 중심으로」, 『박물관지』 3, 1994.

7) 서원의 정치·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주진, 「서원과 그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이수환, 「서원의 정치·사회사적 고찰」, 『교남사학』 창간호,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1985.

정만조, 「조선조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사림활동의 전개와 관련하여」, 『한국사학』 10, 1988.

이해준, 「17~18세기 서원의 당파적 성격-전남지방 사례를 중심으로-」, 『창해박병국교수 정년기념 사학논총』, 1994.

_____,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 21, 국사편찬위원회, 1991.

_____, 「조선후기 전남 서원의 문중성향」, 『전남문화재』 6, 1994.

김문택, 「16~17세기 나주지방의 사족동향과 서원향진」, 『청계사학』 11, 1994.

정만조,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한국사-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31, 국사편찬위원회, 1998.

8) 서원의 폐단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대책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성대경, 「대원군의 서원철폐」, 『천관우선생 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1985.

정만조, 「조선후기의 대서원시책」, 『제3회국제학술회의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이해준, 「조선후기 서원의 성격변화와 서원정책」, 『배중무총장퇴임기념 사학논총』, 1994.

서는 서원의 폐단이 처음으로 논의되는 효종대부터 경종대까지의 과정을, 2절에서는 탕평정치를 추구하는 영조의 강력한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서원 철폐를, 3절에서는 왕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대원군과 고종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대대적인 서원 철폐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럼으로써 서원이 지닌 정치·사회적 기능들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여 그 폐단이 논의되고,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게 되는지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서원의 성립과 기능, 폐단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대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후에 다루고자 하는 文峯書院의 創建과 發展, 그리고 撤廢에 따른 전반적인 변화상을 고찰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書院의 成立과 發展

1) 書院의 成立 背景

서원 성립의 배경으로는 관학의 부진과 조광조를 위시한 사림세력의 교학진흥책을 들 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周世鵬의 白雲洞書院이 건립되었는데, 문헌상에 나타나는 조선조 서원의 기원은 세종대에 서부터 비롯된다.⁹⁾ 세종은 건국초의 중앙집권적인 왕권강화와 지배사상인 유교이념의 보급을 위하여 교육제도를 정비하며 중앙에는 成均館과 四學을, 그리고 지방 각지에는 鄉校를 설립하여 국가 관리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국왕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조선 초기에는 관학의 발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세조대에 이르러 관학은 점차 쇠퇴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여 교육적 기능을 상실해 가기 시작한다.¹⁰⁾ 이러한 관학의 부진은 成宗代에도 지속되다가 燕山君의 폭정으로 극에 달하게 된다. 연산군은 관학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戊午士禍를 일으켜 金瑬孫·金宏弼 등을 중심으로 한 金宗直 일파의 名儒들을 斬首·流配시키고, 성균관을 동대문 밖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를 音樂宴遊의 장소로 삼는 등 유학 및 관학의 진흥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중종 및 반정을 주도한 공신세력들은 새로운 정치의 혁신을 갈구하는 백성들의 바람에 부응하고, 연산군의 폐정을 드러내 반정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관학의 부흥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반

윤희면, 『고종대의 서원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10,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9.

9) 『世宗實錄』 卽位年 11月 乙酉條.

其有儒士置書院 教誨生徒者 啓聞褒賞

그러나 이 당시의 서원은 단지 교육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사설교육기관이었을 뿐, 이후 나타나는 先賢奉祀와 鄉村教化를 목적으로 하는 서원과는 거리가 멀다.

10) 『世祖實錄』 卷 2, 元年 9月 庚辰條.

정 직후 원년 10월에는 성균관을 修葺하고,¹¹⁾ 12월에는 四學을 수리하였으며,¹²⁾ 중종 4년 6월에는 師儒를 선발하여 관학의 빠진 인원을 채우고 유생을 모아서 강론케 하는 등 주로 관학을 중심으로 한 구제회복과 보완이 이루어졌다.¹³⁾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관학의 부진은 계속되었다. 이렇듯 관학이 부진하게 된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武를 통한 관직으로의 진출이다. 관리등용의 길이 과거 이외에 忠順衛 등 무예를 통하여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학교는 과거준비를 위한 독점적 기구로서의 그 본래 권위를 잃고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따라서 교학의 수단은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¹⁴⁾

둘째, 敎官의 질이 저하되었다. 중종 14년 領事 申用溉는 관학부진의 원인을 아뢰는 上言¹⁵⁾에서 訓導의 지위가 천하여 생원·진사들도 훈도가 되기를 피하고, 다만 無學貪慾者만이 이를 바라고 국비를 蕩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부진상태는 중종 말년에 이를수록 더욱 심화되어 敎授·訓導의 태만으로 학교는 모두 쏠송가 되었고¹⁶⁾, 서울의 四學이 도살장으로 바뀌어 이용되기도 하였다.¹⁷⁾

셋째, 관학의 부진을 더욱 심화시킨 요인으로 세조와 연산군의 집정을 들 수가 있다. 세조는 자신의 즉위를 반대하였다 하여 집현전을 폐지하였고, 불교를 지나치게 존숭하여 유학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그리하여 학자들이 관계에서 물러나 草野에 묻히고자 하는 경향이 크게 늘기 시작하였다. 연산군은 앞서 지적한대로 각종 士禍를 일으켜 사람들을 몰살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학의 발달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듯 관학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종 9년 반정의 元勳으로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던 朴元宗, 柳順汀, 成希顔 등 3대신이 죽고, 趙光祖를 위시한 신진사류 일파가 정계에 진출하여 道學政治를 표방하게 되면서 관학의 부흥을 대신하여 교학진흥책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즉 그들은 도학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고, 이를 숭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학에 뛰어난 정몽주와 김굉필을 文廟에 從祀하기를 청하였던 것이다. 문묘종사 논의는 중종 5년에도 있었고, 중종 9년에는 司經 金鍊가 거론하였으나 조정 논의의 반대로 중지되었다. 중종 12년에는 成均生員 權 이 정몽주와 함께 김굉필의 종사를 청하는 상소를 올려 다시금 조정의 논란이 되었는데,¹⁸⁾ 결국 정치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정몽주만을 종사하는 것으로 결론짓

11) 『中宗實錄』卷 1, 元年 10月 庚戌條.

12) 『中宗實錄』卷 1, 元年 12月 戊申條.

13) 『中宗實錄』卷 8, 4年 6月 庚午條.

14) 『世宗實錄』卷 73, 27年 9月 丙申條.

15) 『中宗實錄』卷 33, 13年 6月 丁亥條.

16) 『中宗實錄』卷 89, 33年 11月 甲戌條.

17) 『中宗實錄』卷 97, 37年 正月 乙酉條.

『中宗實錄』卷 29, 12年 8月 庚戌條.

게 되었다.¹⁹⁾ 이러한 문묘중사운동은 사람이 교학진흥을 위해 특정인물을 제향한다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후일 사람의 尊賢處로서 서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라 하겠다.²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학의 계속된 부진과 교학진흥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묘중사운동 등은 서원이 출현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되어 이후 주세붕의 백운동서원이 창건되는 계기가 되었다.

2) 白雲洞書院의 創建과 賜額

중종 32년(1537) 권신 金安老의 실각 이후 조광조 계열 인물의 再敍用이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그들이 주장했던 정치이념과 시책의 부활론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러한 때 行副司果 魚得江은 지방 학계의 진흥을 위한 하나의 방책을 제시하였다.²¹⁾ 여기서 그는 중국에 있어서 大儒에 의한 강학의 성행을 지적하고 그것의 토대로서 精舍나 서원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정사나 서원류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먼 지방에 있는 유생들이 학문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각 도마다 큰 절을 한 곳 지정하여 도내의 名儒와 유생을 모이게 하여 독서토록 할 것을 청한 것이다. 그러나 어득강의 이 방안은 전체적으로 보아 유생에 대한 修己, 즉 爲己之學보다는 과거를 위한 製述에 치중한 것으로 관학과 마찬가지로 관인 획득을 위한 조처에 그치고 있다. 왜냐하면 宋代 이래 당시까지의 중국 서원은 과거와 밀착되어 관학의 보조적 구실을 하고 있었으며, 어득강의 중국 서원제에 대한 이해도 이러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밀착된 서원제의 도입을 암시하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써 寺刹에서의 儒生聚集과 詞章教育을 주장했던 것이다.²²⁾

이처럼 사람계의 교화론에 맞서 공신계의 興學策이 논의되는 가운데 서원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아닌 오히려 공신계열에 속하는 어득강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 당시 朝臣들 사이에서 養育人才의 한 방안으로써 서원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조정에서의 논의과정을 거친 후, 豊基郡守 周世鵬²³⁾은 중종 37년 安珣의 祠廟를 白雲洞 宿水

18) 『中宗實錄』卷 29, 12年 8月 庚戌條.

19) 『中宗實錄』卷 29, 12年 9月 庚寅條.

20) 정만조, 뒷 글, p. 33 참조.

21) 『中宗實錄』卷 98, 37年 7月 乙亥條.

22) 정만조, 뒷 글, p. 36 참조.

어득강의 이러한 견해가 조광조 계열 사람의 교화책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계가 爲人之學이라 하여 배척하는 詞章과 과거를 그가 중하게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같은 상소문에서 '근래의 士論이 후진을 勸勵할 목적으로 金安弼·鄭汝昌 2인을 높이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두 사람들에게 의정의 관작을 추증한 것은 너무 외람된 일이니 一二등을 깎아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람들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寺 옛 터에 건립하고, 다음해 안향의 遺像을 가져와 新廟에 받들어 모셨으며, 이어 사묘 앞에 서원을 세웠다. 그가 서원을 세운 동기는 그가 편찬한 『竹溪志』 序文에 잘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교화는 敎飢보다도 급한 것이며 반드시 尊賢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므로, 이에 入祠入院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특히 안향을 제향하려는 것은 안향이 진실로 동방 도학의 祖로서 삼한의 목은 때를 한번 씻어 내었고, 益齋·圃隱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에 들어와 天理가 復明하고 文風이 크게 흥하도록 하는, 실로 斯文에 막대한 공을 남긴 선현이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요컨대 주세봉에게 있어서는 교화를 위한 안향의 尊奉이 서원을 세우게 된 근본적인 동기였다고 하겠다.²⁴⁾

백운동서원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시의 慶尙監事였던 林百齡이 지급한 魚鹽에서 마련하였으며, 또 後任監事 李彥迪의 鹽藿施措와 郡內 進士 黃彬의 納租(75石)의 도움으로 약간의 寶米와 學田을 마련, 享祀와 養士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처음 터를 닦을 때 땅을 과면서 수득한 銅器 300여 근으로 書冊을 사들여 서원의 장서로 삼게 됨으로써 일단 서원의 체제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서원은 祠廟와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었고, 단지 사묘의 부수적인 존재에 그쳤다. 즉 사묘는 祠賢處이고 서원은 유생의 藏修 내지는 독서를 위한 건물을 가리킬 뿐, 후대에 보이듯이 강당과 사묘를 같이 갖는 형태로 이해되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이 때의 서원은 대개 과거공부 위주의 학교로 인식되었다. 서원이 유생의 藏修處 위주로 인식되면서 그들의 興起之心을 위한 사묘가 부설되어 강당과 사묘를 같이 갖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과거를 위한 독서보다는 修己가 중심이 된 것은 退溪 李滉에 의해 서이다.²⁵⁾

퇴계는 풍기군수로 부임하자²⁶⁾ 남송의 주자가 白鹿洞書院을 중건하고 서원의 勅額과 高宗御書石經 板本九經의 下賜를 조정에 청원한 故事를 본받아 백운동서원의 시설을 더욱 완비시키고자 하였다. 그의

23) 주세봉은 慶尙道 漆原(咸安) 태생이다. 本貫은 尙州, 字는 敬遊, 號는 愼齋이며 어려서부터 孝兒의 稱이 있었다. 그는 연산군 원년(1495)에 출생하여 중종 17년(1522)에 문과에 급제함으로써 관직에 올라 중종 36년(1541)에 경상도 豊基郡守로 전임하여 다음해 백운동서원의 공사를 시작하고 38년 이를 완성시켰다. 그후 명종 4년(1549)에는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해주에 文憲(首陽)書院을 세웠다. 그리고 명종 9년(1554)에 별세하였다.

24) 『中宗實錄』 卷 17, 9年 7月 庚子條.

주세봉은 급제하여 처음 벼슬할 때 南潯과 許磁와 같은 공신계열의 추천을 받아 玉堂 正字가 되었고, 따라서 후일 남곤 사후에 한 때 파직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乙巳士禍 당시에는 權臣에 붙어 부제학까지 오르고, 일찍이 사람의 배척을 받았던 李荇의 행장을 지어 과도하게 찬양한 적도 있고 해서 사람의 비난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말해진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조광조 계열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공신계열에 가깝다고 할 만하다.

25) 정만조, 윗 글, pp. 40~43 참조.

26) 퇴계는 명종 3년 정월부터 丹陽郡守를 지내다가 같은 해 10월에는 豊基郡守로 전임되어 다음해 12월 병으로 사임하였다.

서원관은 嶺南監司인 沈通源에게 보낸 「上沈方伯書」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는 당시의 通弊인 학교의 쇠퇴와 士風의 부정을 바로잡고 학자의 依歸處를 두기 위해서는 서원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또한 王化를 위해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어 서원이 우리나라에서 주세봉에 의해 처음 건립되었으나, 이것이 보다 성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장려나 지원이 필요하다 하였다.²⁷⁾ 이러한 그의 건의는 심동원에 의해서 轉啓上聞되었으며, 이에 명종은 3公과 禮曹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領議政 李, 左議政 沈連源, 右議政 尙震, 禮曹判書 尹漑, 禮曹參議 徐固 등은 백운동서원에 扁額과 서적 23건을 하사할 것과 감사·수령 등은 서원에 대해 유생의 講學讀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번잡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상언하였다.²⁸⁾ 이에 명종은 校書館으로 하여금 經書를 간행하여 이를 백운동서원에 加給시키고, 친필로 새겨진 紹修書院이라는 편액을 宣額하도록 하였다.²⁹⁾

이렇듯 조선에 있어서의 서원은 주세봉이 풍기지역의 교화를 위한 尊賢處로서 사묘를 건립함에 부수되어 처음 출현하여, 퇴계에 의해서 사액되면서 그 발전의 일단을 이루게 되었다.

3) 書院 建立의 類型別 分析

주세봉이 백운동서원을 창건한 이래 이황에 의해서 더욱 그 체제가 갖추어진 조선의 서원은 서서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다가 17~18세기에 들어와서는 수적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당시의 조선사회가 정치적으로는 朋黨政治下에서 집권의 명분을 얻기 위한 도학적 정통이 강조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유교적 사회윤리관에 입각하여 편성된 兩班門閥社會로서 문벌과 家勢의 유지를 위한 상호의 결속과 유대관계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었던 데에 기인한다. 본절에서는 서원의 건립이 각 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천을 가져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17~18세기에 나타나는 서원 건립의 급격한 증가 원인을 고찰하여 보도록 하겠다.

(표 1)³⁰⁾은 서원의 건립 수와 사액 수를 연대별·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서원의 건

27) 『退溪全書』 卷 9, 上沈方伯.

그가 조정에 곧바로 서원에 대한 장려책을 청원하지 않고 심동원에게 건의한 것은 당시 조정이 사회가 계속되는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사람의 움직임에 權臣係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칫하면 권신계가 서원을 또 다른 사람 탄압에 대한 구실로 삼을 우려가 있어서이다. 한편 심동원은 명종의 외척으로서 그의 찬동을 받아 상문한다면 조정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28) 『明宗實錄』 卷 10, 5年 2月 丙午條.

29) '紹修'란 명칭은 孔·孟의 脞을 잇고(紹), 자기 자신을 닦는다(修)는 데서 지어졌다.

30) (표 1)은 전용우의 「조선조 서원·사우에 대한 일고찰」(『호서사학』 13, 호서사학회, 1985)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하 서원의 시기별 건립 양상에 대한 설명은 그의 논문을 주로 참조하였다.

립이 시기별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급증,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창립기·발전기·쇠퇴기·회철기 등 4시기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창립기는 중종 38년 백운동서원이 창건된 이래 명종대까지로 25년간 17개의 서원이 건립되어 연평균 약 0.7개가 세워졌다. 이 시기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하에 서원이 창건되기 시작하였고, 제향인물의 설정도 도학적 연원을 기준으로 선택한 시기였다.

발전기는 선조대부터 숙종 39년까지로 146년간 363개의 서원이 건립되어 연평균 약 2.5개가 세워졌다. 발전기는 그 증가율에 따라 다시 3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제1기는 선조대부터 효종대까지로 92년간 152개의 서원이 건립되어 연평균 약 1.7개가 세워졌다. 이 시기는 국가의 보호 아래 서원이 계속 발전한 시기이며, 그에 따르는 폐해도 등장하여 조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한 때로 볼 수 있다. 제2기는 현종대부터 숙종 17년까지로 32년간 89개의 서원이 건립되어 연평균 약 2.8개가 세워져서 1기보다 6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다. 이 시기는 당쟁이 가열되고 그에 따라 서원의 疊設도 크게 성행하여 그 폐해가 컸다. 그러나 疊設禁止令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더욱 증가하게 된다. 제3기는 숙종 18년부터 39년까지로 22년간 122개의 서원이 건립되어 연평균 약 5.6개가 세워졌다. 이 시기는 자과 인물에 대한 건립과 청액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당의 인물을 폄하하여 이미 설립된 서원을 撤·撤額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쇠퇴기는 숙종 40년부터 영조 16년까지로 27년간 44개의 서원이 건립되어 연평균 약 1.6개가 세워졌다. 이 시기는 서원에 대한 수 차례의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자, 숙종이 보다 강력한 금령을 반포한 영향과 영조의 탕평정책으로 인하여 붕당간의 경쟁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전 시기에 비하여 그 건립이 줄어들게 되었다.

회철기는 영조 17년부터 헌종 7년까지로 101년간 12개의 서원이 건립되어 약 7~8년에 1개 정도 세워졌다. 이렇게 서원 건립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영조의 서원회철령으로 인하여 첩설서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이다.³¹⁾

서원의 건립은 이상과 같이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그러면 지역에 따른 서원 건립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에서 보면 우선 충청·전라·경상 등 3남 지역에 서원 건립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지역들은 일찍이 유교가 뿌리를 내려 名儒가 지속적으로 배출됨에 따라 사림세력들의 활동도 활발하였기 때문에, 서원의 건립 기반이 되는 사림들의 재지적 기반이 강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서원 건립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다. 한편 황해·평안·

31) 『英祖實錄』卷 53, 17年 4月 壬寅條.

〈표 1〉 서원의 연대별·지역별 건립 분포

지역 연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함경		평안		합계		
	건립	사액	건립	사액	건립	사액	건립	사액	건립	사액	건립	사액	건립	사액	건립	사액	건립	사액	
중종이전					1												1		
중종					1		2										3		
인종																			
명종	1		1		1		8	3	1		1	1	2		1		16	4	
선조	6	1	7		13	4	27	7			7	2	1	1	3	1	64	16	
광해군	2	2	7	4	5		14	5	2		1	1	1	1			32	13	
인조	2	1	5	1	6		13	2	2	1			1		1		30	5	
효종	5	3	1	1	5	2	10		2		3				1		27	6	
현종	6	5	8	6	8	7	18	9		2	2	1	5		5	3	52	33	
숙종	1-17	12	5	4	5	1	5	14	14	2		2	5		2	2	3	37	39
	18-39	8	18	20	8	23	10	59	10	2	1	3	8	2	3	5	5	122	63
	40-46		1	6	2	4		5	2							1	15	6	
경종		1	3	5	3	2	3		1			1					10	9	
영조	1-16	1	1	1	2	2	1	8	1	2		1		2	1	2		19	6
	17-52					2		1										3	
정조	1	1			2	4	1	4			1		1				6	6	
순조	2	1															2	1	
현종							1										1		
철종						1		1										1	
연대미상			1		4		9		4		1		6				25		
합계	46	40	64	34	81	32	193	58	18	4	22	19	21	8	20	13	465	208	

함경도는 儒化가 늦게 이루어져 효종대까지만 해도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역들도 현종대 이후 禮論이 격화되면서 각 당파가 자기파의 광범한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액을 빈번하게 해 주어 서원의 건립이 활발해졌다.³²⁾ 지역별 서원의 사액 수를 보면 절대수로는 경상·전라·경기·충청 순으로 되어 있지만, 건립 수에 따른 사액율을 따져 보면 양상이 달라진다. 사액율은 경기도가 46개 건립에 40개 서원이 사액을 받아 87%로 제일 높고, 다음이 황해 86%, 평안 65%, 충청 53%, 전라 40%, 함경 38%, 경상 30%, 강원 22%로 나타난다. 이는 사액이 文風보다는 중앙 정부와의 유대관계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역별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으로 제향인물의 당색별 성향을 들 수가 있겠다. 宋時烈을 위시한 宋

32)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5, pp. 261~264 참조.

浚吉, 趙憲, 金長生, 金尙憲 등의 서인계는 주로 기호지방에, 그리고 李滉, 鄭述 등의 남인계는 주로 영남 지방에 많이 제향되고 있다. 이는 서인이 기호에서 우세하고, 남인이 영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黨色의 분포와 일치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원의 건립은 이처럼 연대별·지역별로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주목할 점은 17~18세기에 나타나는 서원 건립의 급격한 증가이다. 그 증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원의 건립 주체를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그 주체들이 서원의 건립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원 건립의 주체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³⁾

첫째, 後孫에 의한 건립이다. 이는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질서변화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16세기 이래 지방 사족들은 향촌사회에서의 부세운영과 향임층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鄉規·鄉約 등의 향촌규약을 만들어 향리와 일반민들을 그들의 지배하에 수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향촌지배는 양란 이후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점차 위축되었고, 특히 양반 신분층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양반 권위의 축소와 자체 분열 현상은 종래와 같은 사족들의 향촌지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양란 이후 새롭게 부상하는 新興家門이나 상대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룬 新鄉勢力들의 향촌지배질서에의 참여는 종래의 기득권과 전통성을 지니면서 연대적인 이해를 반영하던 기존의 鄉案 질서 자체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수령권이나 향리들의 연결구조가 사족들의 향촌 지배권을 위협하게 되자 사족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으니,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혈연에 의해 구성된 동족집단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동족의식의 강화를 위해서 族譜를 편찬·간행하는 한편 서원에 그들의 선조를 배향하여 家勢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들은 결집된 문중의 기반을 서원에 연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향촌사회에서의 지위를 더욱 보강하고 확보하고자 하였다.³⁴⁾ 그러므로 후손에 의한 서원 건립의 표면적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선조를 높이고자 하는 조상숭배열이 강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실질적 이유는 문벌과 가문의 위세가 사회적 활동에 커다란 작용을 하는 양반사회에서 후손들의 정치·사회적 활동에 이용되는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門人에 의한 建立이다. 서원의 건립은 그 본래 기능이 사림의 講學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先儒를 祭享함으로써 사림의 본보기를 삼는다는데 있었기 때문에, 문인이나 후배 또는 私淑人에 의하여 서원의 건립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 경우 그 건립은 대부분 피봉사인이 생전에 寓居했거나 游息하던 곳, 그리고 그 스스로 精舍나 書齋, 書堂 등을 지어 후학을 교육하던 곳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확대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문인에 의한 서원 건립의 실질적 이유는 선유 제향

33) 정만조, 뒷 글, pp. 232~234 참조.

34) 이해준,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 21, 국사편찬위원회, 1991, pp. 6~10 참조.

의 의미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관련되어 있었다. 봉당정치하에서 師說을 견지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곧 자기 당과의 학문적 정통성 및 立朝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파의 先師나 黨人을 顯揚하고, 이를 중외에 널리 알려 사실과 자파 정론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 사람의 광범한 지지를 획득할 필요가 절실하였다. 그러므로 자파인물을 尊奉하기 위해 문인이나 후배를 앞세워 학통을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院祠를 건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봉당의 대립이 심하고 정권의 교체가 잦았던 숙종 연간에 많았다. 그리하여 서인이 집권하면 서인계 인물에 대한 서원 건립과 그에 대한 講額이 많았고,³⁵⁾ 이에 반해 남인이 집권하면 남인계 인물에 대한 서원 건립과 그에 대한 청액이 각파의 사람에 의해 일어났다.³⁶⁾ 또한 반대당의 인물을 폄하하여 기존의 서원을 훼손하는 일까지도 생기게 되었다.³⁷⁾

셋째, 鄉人에 의한 건립이다. 서원은 사람들의 講學所이므로 서원이 부재한 향촌은 사람들의 활동이 극히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졌다.³⁸⁾ 그러므로 향인들은 향촌에서의 기반 강화와 자제들의 교육을 위하여 서원을 건립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서원은 지명이 朱子나 程子 등 중국의 선현들의 이름과 偶合한 것을 들어 그들을 제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³⁹⁾ 뿐만 아니라 전혀 인적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의 인물들을 제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건립된 서원을 중심으로 향인들은 후손에 의한 학통 및 黨勢扶植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향촌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서원의 건립이 그 실제에 있어서는 후손·문인·향인에 의하여 각각 따로따로 추진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 당파의 형성이 동일한 인적 관계와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서원이 창건되는 경우 그 서원에 제향하는 인물과 직·간접으로 간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원 증설의 실제적인 원인을 양반사회에 있어서 양반세력 상호간의 보호와 결속이 무엇보다 필요하였던 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35) 숙종 21년 집권 서인들은 충주에 송시열을 제향하는 樓巖書院을 건립하여 노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해주고 노론 정권의 집권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36) 숙종 15년 己巳換局 후 집권한 남인은 윤선도를 위한 서원을 건립하여 윤선도가 비록 己亥 禮訟 때 定配를 당하였지만, 서인의 四宗說의 잘못됨을 극언하고 古禮의 엄정함을 밝히며 士論을 바르게 하였다고 하며 사액을 요청하였다(『書院叢錄』 卷 3, 肅宗 16年 4月 初 3日條). 그들의 이러한 논의는 서인을 대신하여 집권한 명분을 내세우고, 사림세력을 그들의 우익으로 끌어들여 정치적인 지지세력을 확보하고자 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내세운 것이다.

37) 숙종 36년 老論인 侍講官 李晩成은 務安에 소재한 東人 鄭介淸書院을 두고, 그를 제향함은 부당하다 하여 훼손할 것을 청하니 이에 훼손되었다(『肅宗實錄』 卷 36, 28年 5月 26日 丁未條.).

38) 『書院叢錄』 卷 4, 肅宗 18年 4月 初 3日條.

39) 『肅宗實錄』 卷 59, 43年 4月 癸卯條.

3. 書院의 機能

1) 教育的 機能

조선조 서원은 퇴계의 교학관에서 잘 드러나듯이 향촌 사림의 講學所이자 藏修處이므로 그 주요 기능 또한 순수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적 기능이다.⁴⁰⁾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치가 수려하고, 先賢이 講道하거나 寓居하던 곳에 위치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는 祠廟와 講堂이 主가 되고, 그 방위는 동향이나 남향이 원칙이었다. 원생들이 起居하던 곳인 齋는 강당이 동향인 경우에는 남북으로 마주하여 배치되었고, 남향인 경우에는 동서로 마주하였다. 같은 齋일지라도 南齋와 東齋에서 기거하는 유생이 先任이 된다. 이 밖에도 문집이나 서적을 펴내는 藏版庫, 책을 보관하는 書庫, 제사에 필요한 祭器庫, 서원의 관리와 식사 준비 등을 담당하는 庫廝, 시문을 짓고 대답하는 樓閣 등이 있다. 대체로 서고와 장판고는 강당 근처에 배치하였고, 제기고는 사당 가까이 설치하였다. 그리고 고사는 강학 구역 밖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원의 교육 행정은 국가의 일정한 영향하에 있었으나, 그 세부운영과 교육에 관한 예조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없었다. 그리하여 서원의 운영은 자체적으로 제정한 院規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원규에는 서원의 입학자격과 院任의 선출절차, 교육목표 및 벌칙조항 등이 수록되어 있다. 원임은 서원에 따라 그 명칭, 인원 및 임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院長·有司制度를 취하고 있다. 원장은 山長, 혹은 洞主로 지칭되며, 서원의 정신적 지주이면서 유림의 사표로서의 구실을 담당하였다. 서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원장은 퇴관한 관료이거나 당대의 名儒碩學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퇴계는 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원장은 休官者나 退官하여 隱逸者 중에서 가려 뽑아 녹봉을 지급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講長은 경학과 예절에 대한 講問을, 訓長은 학문근면과 훈도를, 齋長은 齋中の 일체 사무를, 執綱은 院中の 風氣를, 都有司는 원중의 대소사를, 副有司는 도유사의 보좌를, 直月은 堂會 때의 사무 집행을, 直日은 직일의 보좌를, 掌議는 원중 대소사의 評議를, 色掌은 제반사의 幹務하는 것을 담당한다. 이러한 원임의 선출은 추천제도에 의하였으며, 때로는 官府의 인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임기는 2·3년이 통례이나, 원장은 一期의 향사, 혹은 종신직이었다.

서원의 입학자격은 시대별·지역별·서원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리하여 대체로 법적인 기준은 까다롭지는 않았으나, 生員·進士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白雲洞書院·伊山書院·西岳書院의 院規를 보면, 生·進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初試 入格者를 入院시켰으며, 초시 未入格者라도 向學心과

40) 이하 서원의 구조, 교육 내용, 교육 과정 등은 정순목의 『한국 서원교육제도 연구』(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를 주로 참조하였다.

품행이 있는 자로서 입학을 원하면 有司가 斯文들에게 승인을 받아 허락하였다.

서원의 원생 수는 처음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이 學田의 규모에 따라 서원 자체적으로 정하였으나, 인조 32년에 정원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서원남설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된 숙종 36년에는 원생 수를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원생은 文廟從祀 儒賢書院에 30인, 사액서원에 20인, 미사액서원에 15인으로 정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규칙도 신분제가 문란하게 되고 서원이 남설됨과 동시에 와해되었다.

서원에서의 교육은 성리학적이고 도학적인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 관학에서의 교육이 과거와 법령의 규제에 얽매인 것과 비교할 때, 서원교육은 사학 특유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존중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퇴계가 伊山書院 院規에서 제시한 교재의 범위와 학습의 순서가 정형이 되어 四書五經으로 本原을 삼고, 『小學』, 『家禮』를 門戶로 삼는다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이 외에도 서원의 성격에 따라 經史子集 중에서 선별하여 교육하였다. 한편, 佛學·西學 등의 서책이나, 淫邪·酸邪에 관련되는 내용은 엄격히 금하였다. 그리고 그 교수방법으로는 배운 글을 소리 높여 읽고 의리를 문답하는 講이 있었다. 강은 대개 旬講·望講·月講 등으로 나뉜다. 또한 그 방법에 따라 暗誦朗讀인 背講과 臨文朗讀인 面講으로 분류된다. 낭독 뒤의 질의 응답은 단순한 암송 위주의 학습법을 극복하는 단계이다. 강을 받는 데에는 講儀라고 하는 일정한 절차를 두어, 학습에 대한 진지성과 예의를 갖추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到記制⁴¹⁾를 실시하여 원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학령의 준칙에 따라 考課評定과 독서지침을 제시하였다. 강의평가는 大通·通·略通·粗通·不의 5단계, 또는 通·略通·粗通·不의 4단계를 평가척도로 하였다.⁴²⁾

이상과 같은 강학활동 이외에 서원의 제향기능도 그 교육적 의미가 높다. 서원에서 행하는 春秋享祀는 엄격한 의례절차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원생들에게 바람직한 인간상인 先賢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향사시의 제반절차와 제례의식 등을 통하여 유생들이 평소 지나야 할 기본적인 법도와 몸가짐을 익히게 하였다.

한편, 서원은 다량의 서적을 보유하고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도서관적 기능을 하였다. 서원에서 서책을 간행하려고 할 때에는 堂會를 거쳐 議定하고, 곧 刊役所를 열었다. 그 간행 경비는 간역소에 딸린 전답에서 여러 해 적립한 비용과 향내 각 문중의 출연으로 충당하였다. 그리고 간역을 위한 임원을 선출하여 上有司가 지휘를 맡고, 실무책임은 刊役別有司가 맡았다. 사액서원에 대해서는 국왕이 서적을 下賜

41) 到記란 朝夕 식사 때마다 교수 1명이 養賢庫 직원과 함께 친히 학생을 점검하여 도기에 적어놓고 봉인하여 월말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원생의 출석 점검 뿐만 아니라 물품 용도의 낭비를 막고자 하여 마련된 것이다.

42) 大通은 旬講에 밝고, 설명에 막힘이 없어서 책의 취지를 두루 알고, 다른 책에까지 미치지 매우 밝게 알고 철저하게 통하는 경우, 通은 더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여도 구독에 상세하고 설명에 막힘이 없는 경우, 略通은 밝게 알고 철저하게 통하지는 못하나 辭意가 通劃한 경우, 粗通은 구독에 詳白하고 辭意는 깨달아 一章의 大旨를 알기는 하나 설명이 미진한 경우, 不은 낙제인 경우이다.

하는 것이 관례였다. 또한 국가에서 서적을 간행·반포할 경우나 국가의 藏書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도 별도의 하사가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관의 조치에 의하여 서적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각 서원들은 장서의 관리를 원규에 기입하여 세심하게 주의하였다. 이산서원 원규에는 서적을 서원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紹修書院 원규에는 邑宰의 자제가 서적을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西岳書院 원규에는 5일마다 서책을 점검하도록 하여 서책이 亡失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서원에서의 교육은 학문 연구의 다양성을 가져와 조선 중기 이후의 성리학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理氣論, 四端七情論, 禮論 등 다양한 논변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선 성리학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원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상 중앙 정계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교육 활동만을 전개할 수는 없었고, 이에 정치·사회적 기능이 강화되어 순수 학문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변질되어 가게 되었다.

2) 政治的 機能

초창기의 서원에서는 일차적으로 사람의 講學所라는 기능이 강조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서원에 향촌의 士子가 聚會하는 이상 사람의 향촌활동과 무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당시 중앙권력을 장악한 훈척계가 사람의 향촌활동을 극히 억제, 서원이 사람의 정치적 기반이 되기에는 아직 미약하였다. 더욱이 퇴계 역시 서원에서의 정치관계 논의나 지방관에 대한 품평 등을 극히 경계하고 있어 초창기의 서원에서는 정치적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다.

서원이 정치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단초는 선조 3년부터 본격화되는 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彦迪의 文廟從祀運動이다. 이들을 종사하는 것은 사람의 도학적 정통성을 인정받음으로써 그 집권의 명분을 확립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선조대에 건립된 대부분의 서원들은 이들을 제향하였으며, 주자를 제향한 곳도 적지 않았다. 이 시기의 서원은 사람의 講學處이자 祭享處라는 기능을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계의 정치활동을 대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김굉필·정여창 등을 제향함으로써 사람계의 정치적 지위와 집권세력으로서의 명분을 합리화·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³⁾

광해군대에 들어오면 서원은 점차 집권당의 정통성 부여와 정파세력의 확장에 이용되는 정치적 역할을 서서히 강화해 나가게 된다.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북인은 학연상의 취약점을 만회하기 위하여 그들의 학문적 연원인 曹植의 문묘종사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인계 서원이 이러한 종사를 요구하는 儒疏作成의 거점이 되면서 조식을 제향하는 서원의 건립이 추진되었다.⁴⁴⁾ 이에 서울의 삼각산 백

43) 정만조, 「조선조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 『한국사학』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p.78~80 참조.

44) 『光海君日記』 卷 11, 卽位年 12月 丙辰條.

운봉 아래에 조식을 봉사하는 서원을 건립하여 광해군 8년 11월에 백운서원이란 사액을 받게 하고,⁴⁵⁾ 또 전라도 강진에 서원을 설립하는 등 京鄕間에 조식서원을 건립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중심으로 당론을 모으고 自派의 주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⁴⁶⁾ 한편, 복인은 남인이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던 경상도의 안동·예안지역에 복인의 黨勢를 부식시키는 방법으로서 서원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즉, 퇴계를 제향하는 도산서원에 그의 제자 중 남인의 영수이던 柳成龍과는 정치노선을 달리하던 趙穆을 配享하여 이 지역을 복인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한 것이다.⁴⁷⁾ 이는 당시 붕당이 학연을 계기로 하여 당파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학문적 연계를 맺어 주는 士子의 聚會所로서의 서원 기능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원은 결과적으로 黨人간의 결속과 유대를 공고히 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조대에 이르러 집권한 서인세력은 반정의 명분과 집권의 합리화를 위한 방법으로써 그들의 학적 연인인 栗谷·牛溪의 문묘종사를 요구하였다.⁴⁸⁾ 사람이 집권하면서 본격화된 자파계 인물의 문묘종사 운동은 이제 집권세력의 정치운동으로 거의 항례적인 행사가 되다시피 한 것이다.

그리고 붕당정치의 전개에 따라 서원이 갖는 정치적 역할의 비중도 증대되었다. 붕당정치하에서는 일반사림의 광범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파계 인물을 顯揚하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문묘종사와 서원건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효종대 이후 거의 전국적으로 유림이 동원되었던 서인계의 栗谷·牛溪의 문묘종사 요구와 그에 대한 남인들의 반대,⁴⁹⁾ 숙종대 집권세력의 교체에 따른 黜享과 復享의 반복은 붕당정치에 있어서 문묘종사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잘 나타내어 주며, 서원 역시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다.⁵⁰⁾

이 시기 서원의 주요한 기능은 향촌사림의 공론과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을 집약하여 중앙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공론 수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향내에 있는 각각의 서원마다 개별적으로 일차 여론이 수렴·조정된 후 향교로 다시 취합되며, 이것이 도내의 통일된 의론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지방의 여론수렴 과정은 個別儒生→書院→鄕校→疏講(道)의 단계를 밟았다고 할 것이다.⁵¹⁾ 현

45) 『光海君日記』 卷 109, 8年 11月 丁丑條.

46) 『光海君日記』 卷 117, 9年 7月 甲戌條.

47) 『光海君日記』 卷 84, 6年 11月 癸酉條.

48) 『仁祖實錄』 卷 1, 元年 3月 乙亥條.

49) 『孝宗實錄』 卷 2, 即位年 11月 23日 戊寅條·卷 3, 1年 2月 22日 乙巳條; 『顯宗實錄』 卷 1, 即位年 12月 1日 丁亥條·卷 6, 3年 12月 14日 戊午條 等.

50) 栗谷·牛溪의 文廟從祀는 숙종 7년에 실현되었다가(『肅宗實錄』 卷 12, 7年 9月 戊辰條) 己巳換局이 있은 후 黜享(『肅宗實錄』 卷 20, 15年 3月 乙酉條), 다시 甲戌換局 후 復享(『肅宗實錄』 卷 27, 20年 6月 己未條)되는 등 정권의 변동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게 되었다.

종·숙종대 명분론 중심의 붕당정치 전개는 바로 이러한 서원의 정치적 기능이 작용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서원은 사림 공론에 의한 붕당정치 실현의 기반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듯 서원이 중앙 정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됨에 따라 서원에 대한 賜額도 초창기와는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어지게 된다. 즉 남인의 집권기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인계 서원에만 사액이 이루어지고, 서인의 집권기 또한 서인계 서원에만 사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례로 숙종초 남인 집권기에 사액을 받은 서인계 서원은 居昌의 金滉를 제향하는 서원 뿐인데, 이는 당시 비록 남인의 집권기였지만 서인계인 仁敬大妃 및 金錫胄 일파와 연합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비의 선조를 제향하는 서원에 사액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己巳換局 후 남인의 재집권 시기에도 서인계 서원은 개성의 宋象賢을 제향하는 서원만이 사액을 받았다. 이는 송상현이 壬亂에서 순절한 인물이었다는 까닭에 정치적인 영향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반면 서인 집권기에 사액을 받은 남인계 서원은 慶尙道 昌寧의 鄭述를 제향하는 서원 뿐이다. 이렇듯 사액이 집권 세력의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서원 건립 초기에 지녔던 祠廟로서의 기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교육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자파 서원에만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서원의 院任 구조도 중앙 당인과 관련되어 임명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본래 山林學者가 하기 마련인 서원의 院長職도 중앙의 高官이 역임하게 되었다. 또한 서원의 유생이 담당하였던 有司職에도 鄉有司와 縉紳有司의 구별을 따로 두어 향유사는 유생이 하고, 진신유사는 중앙의 당상관 이상의 고급 관료에게 위촉하였다. 그럼으로써 서원으로서의 서원유지에 필요한 행정적·물질적 지원을 중앙 관료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조직이 향촌사림과 중앙 관료의 연결을 맺게 해 주어 그들의 정치적 진출의 계제를 마련해 주는 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중앙 관인의 입장에서는 서원을 통하여 자파의 정론에 대한 향촌 사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⁵¹⁾ 이러한 경우는 숙종대 이후 중앙 정계에서 떨어진 북인이나 남인계 서원보다는 서인계 서원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서인계 서원인 遯巖書院의 경우 院長職에 成均館 祭酒, 吏曹判書, 大司憲, 大提學 등 중앙 정계의 핵심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또한 魯岡書院의 원장직에도 領相 李相·鄭元容, 判書 趙兼旨 등 정승·판서급이, 掌議에는 縣監·承旨·道伯 등 현직관료가 나타난다. 그리고 京掌議나 京有司, 道掌議 등의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51) 그 대표적인 예는 顯宗代의 服制論爭에서 찾을 수 있다. 복제는쟁의 전개과정에서 安東을 중심으로 한 嶺南의 유림 세력은 『儀禮』에 대한 상세한 변정과 고증작업을 진행시키고, 列邑에 通文을 돌려 禮設에 관한 의견을 수렴, 조정하여 柳世哲을 疏首로 한 영남 유생 천 여명의 聯疏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영남 유림들의 논의가 해당 지역의 향교와 서원조직을 통하여 이루어 졌고,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거쳐 서원통문을 통하여 도내 유림의 여론을 계도·수렴함으로써 연소가 작성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52) 정만조, 윗 글, p. 110 참조.

경장의로는 승지·판서·관찰사·참판 등이, 경유사·도장의로는 승지 등 自派 현직관료들이 임명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⁵³⁾

이상에서와 같이 서원의 정치적 기능은 시기가 지남에 따라 점차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숙종대에 들어서는 당쟁이 격화됨에 따라 서원의 정치적 기능도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하고, 단지 老論·少論·南人을 지지하는 鄉村士子의 공론을 수렴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의 서원은 겉으로는 사림 공론의 수렴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私黨政治의 소굴, 곧 당론의 淵藪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원의 폐단이 연달아 제기되며 결국 대대적인 철회까지 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3) 社會的 機能

16세기 이래 재지사족들은 留鄕所나 京在所, 鄕約과 社倉制의 시행 등으로 권위를 높여 갔다. 그리하여 향촌사회에서의 부세 운영과 향임층의 인사권을 쥐고, 鄕規·鄕約 등의 향촌규약을 만들어 鄕吏와 일반민들을 그들의 지배하에 수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향촌사회에서 사족들이 鄕權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鄕會로 대표되는 그들 중심의 합의체적 향촌권력기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향회를 통해 유향소와 座首·別監 등 鄕任을 선출하였고, 향규를 만들어 吏胥와 하층민들을 통제하고 위로는 官權과 일정하게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사족중심의 향촌 지배체제 속에서 서원의 역할도 점차 강화되어 鄕村士子의 講學所요, 동시에 그 향촌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서원의 초기 건립 과정에서 그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退溪는 서원의 교육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였을 뿐, 서원과 향약과의 관계를 직접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栗谷에 이르러서는 서원이 향약 실시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게 되었다.⁵⁴⁾ 물론 율곡이 서원으로 하여금 단순한 학교에만 머물지 않고 留鄕所나 鄕會所·公會堂과 같은 사림의 향촌자치기구로서의 역할도 하도록 제안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향촌사회에서 사림의 우세 속에 서원이 그 활동의 기반과 구심체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율곡의 海州鄕約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53) 이수환, 「서원의 정치·사회사적 고찰」, 『교남사학』 창간호, 1985, pp. 30~32 참조.

54) 『栗谷全書』 卷 16, 海州鄕約 入約凡例.

以參契約者若干人 會于書院 議定約法 選定都副約正 及直月司貨 衆推一人 齒德學術者 爲都約正 以有學者 爲副約正 二人副之 約中輪回爲直月司貨 直月必以有奴僕可使命者爲之 司貨必以書院儒生爲之 都副正 非有故則不遞 直月每會輪遞 司貨一年輪遞.

서원의 사회적인 역할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시기는 임란 이후 상당수의 토착세력이 새로이 터전을 마련하면서 그곳에 점차 족적기반을 구축하여 同姓村⁵⁵⁾을 형성하게 되는 17세기 전반기이다. 당시 서원의 대표적인 사회적 역할로는 陶山書院 院長 李有道(退溪의 형 李濼의 손자)의 杖斃로 인한 안동 유림들의 경상감사 배척운동을 들 수가 있다.⁵⁶⁾ 이는 경상감사 元鐸이 詞訟을 처리하는 도중 사건에 관련된 이유도를 심문하다가 이유도의 답변이 공손하지 못하고, 道主를 陵侮한다고 하여 刑訊을 가한 것이 바로 致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이유도의 자인 · 峇 등이 부친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族人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도산서원에서는 列邑에 통문을 발하여 道臣의 擅殺士族을 죄로 삼아 道臣排斥運動을 전개하였다. 이 사건의 처리에 있어 조정에서는 지방민이 道臣을 함부로 몰아내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여 통문 발송 주장자 李弘重 등을 체포하였다. 이에 鄭經世 등 재경 남인들은 집권 서인세력의 이러한 유생단압에 반대하며 그들을 옹호함으로써, 이 문제는 西·南人간의 정치 논쟁화 될 조짐까지 보였다. 결국 남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인조의 온건수습책으로 首唱儒生들은 용서되고 원탁은 파직되고 말았다.

이는 앞서 栗谷이 유향소를 중심으로 실시하려 했던 海州鄉約에서 鄉員의 冤抑에 대해서 향원들이 함께 救解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⁵⁷⁾이 실제로 행하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서원이 16세기 경까지 유향소가 수행하던 역할을 이 시기에 이르러 대신하고 있는 예를 보여준다.

서원의 사회적 역할이 보편화되는 것은 전란의 피해가 상당히 복구되고, 그에 따라 새로 정착한 사족이 동성촌락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되는 17세기말 내지 18세기 이후였다. 17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 士族 중심의 향촌운영이 국가와 新鄕 세력의 견제, 그리고 사족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⁵⁸⁾

국가의 견제는 향촌 지배 정책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국가는 재지사족을 매개로 한 이전의 간접적인 향촌지배 방식을 소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 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경제소가 혁파됨에 따라 유향소의 좌수에 대한 선임권도 일단 鄉會의 추천을 받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이 권한이 수령에게 귀속되었다. 그리하여 수령권은 서서히 강화되고, 좌수는 수령의 보좌역으로 격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향소

55) 同姓村은 조선초기의 가족 및 상속제도인 男歸女家婚·子女均分制·輪回奉祀 등이 17세기가 되면 『家禮』의 보급에 따라 親迎禮와 長子相續制·長子奉祀制로 바뀌면서 종래의 父·母·妻系の 異姓三族이 동거하던 同族村 형태로부터 父系親 중심의 친족이 한 마을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형성된다(이수건, 『영남학파의 향촌지배체제』,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56) 정만조, 「조선조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 『한국사학』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p.105~106 참조.

57) 『栗谷全書』 卷 16, 雜著 3, 海州一鄉約束.

58) 정만조,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한국사』 31, 국사편찬위원회, 1998, pp. 81~83참조.

마저 鄉廳으로 바뀌어 수령의 예하에 놓이게 되면서 사족의 권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향리를 장악한 수령의 직접적 농민 지배가 강화되었다. 더욱이 국가는 五家統事目과 里定法의 시행을 통해 부세 행정실무를 面里任과 향리의 연결 조직을 이용해 수령에게 귀속시키고, 사족에게는 교화의 책무만 맡게 하였다. 그럼으로써 종래 사족세력이 유향소를 통해 지녔던 부세 운영권을 무력화하여 小民에 대한 지배권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사족의 향촌지배에 대한 견제는 新鄕으로 불리는 새로이 성장한 향촌세력의 도전에서 비롯된다. 효종 5년 營將事目 반포로 향청의 鄕任職을 세습하는 鄕族層이 등장, 鄕案의 入錄을 요구하며, 향권을 놓고 기존의 사족세력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소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추구하는 국가의 향촌정책과 신향의 도전은 사족세력의 향촌운영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 결국 18세기 이후 향안의 작성이 중단되고 끝내 罷置되듯이 사족의 향촌지배력 감소를 초래하였던 것이다.⁵⁹⁾

사족 내부의 분열은 임란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동성촌에서 발생한다. 동성촌은 그 성립과정에서 山訟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수반하였다. 즉 촌락 내에 있어서는 家舍·家堡·田畝·墓山을 둘러싸고 재산 분쟁과 산송이 야기되는 한편 씨족·문중·촌민끼리 형세를 다투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一鄕 사족 전체의 공동 관심사보다는 동성촌을 단위로 한 족적 결속과 문중세력의 확산에 주력하게 된다.⁶⁰⁾

이렇게 수령권이나 향리들의 연결구조가 사족들의 향촌지배권을 위협하게 되자 재지사족들은 과거의 향안·향규·향약 등과 같은 일향의 지배보다는 혈연적인 族契를 만들어 문중의 결속력을 확보하기도 하고, 혹은 촌락기반을 매개로 하는 하층민과의 유대 속에 자기방어를 모색하고자 하는 上下合契 형태의 洞契를 발전시키게 된다. 한편 봉당정치의 명분논쟁이 격화됨에 따라 政爭 희생자에 대한 伸冤의 의미를 지닌 서원의 건립이 성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원의 주요 기능이 講學·藏修 중심에서 祭享 위주로 전환되게 된다. 그리하여 재지사족들은 자체 교육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선조를 봉사하여 문중의 결속력을 더욱 다질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서원의 건립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서원 형태가 바로 문중서원이다.⁶¹⁾

59) 박경하, 「조선중기 향촌지배조직에 관한 연구-향규·동계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59, 국사편찬위원회, 1994, pp. 197~199 참조.

60) 이수건, 「영남학과의 향촌지배체제」, 『영남학과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pp. 435~444 참조.

61) 이해준은 문중서원의 성격을 “특정 지역 기반 위에서 관련 문중세력의 이해를 반영하고 그 영향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구체적 활동을 전개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상 건립 과정에서 문중의 기반강화라는 단계적인 준비와 모색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건립의 주체도 일반 서원보다 문중세력이나 후손의 참여가 적극적이며, 특히 제향자의 성격에서 문중성향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일반서원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해준, 『조선후기 서원의 성격변화와 서원정책』, 『배종무총장퇴임기념 사학논총』, 1994).

문중서원은 동성촌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유지하게 하는데 기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 건립이 주로 문중 중추세력들의 발의와 주도에 의하여 진행된 만큼 그 주된 활동도 이들이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원을 발판으로 鄉中의 다른 문중 집단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촌의 사족이 주도하는 鄉權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향촌에서는 班格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양반 가문이라도 벼슬관계나 학적 기반·경제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그 사회적 지위에 차등이 있었다. 그리하여 향촌마다 그 향촌 나름대로의 각 문중 사이에 어느 정도의 반격의 질서가 있게 되는데, 이 질서가 동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鄉戰이었다. 향전의 계기나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17세기말에서 18세기초에는 서원의 建立·配享·追享 및 位次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씨족·문중·학과간의 대립과 선조의 學統과 師友淵源 문제·文字是非를 두고 후학·후손 사이에 생겨나는 분쟁이 중심이 되었다. 향전이 서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은 그만큼 서원이 향촌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역할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⁶²⁾

위와 같이 17세기 후반 이후 명분 위주의 봉당정치 전개에 따른 서원 건립의 필요성 증대, 그리고 족계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동성촌락에서의 서원 건립은 결과적으로 서원의 남설과 격증을 초래하였고, 당론을 격화시키고 군역의 폐단을 유발하며 각종 민폐를 야기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숙종말 이래 그 건립이 부분적으로 통제되다가 영조 17년에 이르러 서원이 당론의 淵藪요, 민폐의 온상이 된다는 거듭된 지적에 따라 상당수의 서원이 훼손되었다. 이에 서원에서 향촌민 전체를 교화하거나 통제하는 종래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어 문중 내부의 결속과 그 문중의 사회적 지위보존이라는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의 서원은 주로 족당기반으로서의 의의만을 갖게 되었을 뿐, 향촌사회에서의 긍정적 역할보다는 각종 민폐를 야기하는 대민착취 및 압제기구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4. 書院의 弊端과 毀撤

1) 書院의 弊端 論議

서원은 16세기 중엽에 성립한 이래 士林의 학문연구와 德性涵養을 위한 사설학교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 및 기타 제반사는 오로지 향촌사림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따라서 국가는 인재 양성과 右文政治라는 측면에서 혹은 賜額하여 사림을 격려하고, 때로는 약간의 물질적 지원을 하는 소극적 장려책

62) 정만조, 『조선조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 『한국사학』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116 참조.

이외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⁶³⁾

그러나 17세기 중반에 이르면 국가는 서원의 건립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 이는 서원이 점차 중앙의 정치문제에 대하여 향촌사림의 공론 수렴의 매개체이자 봉당정치의 실현기반으로 부각되고, 이러한 정치적 성향을 기반으로 각 지역에서 서원이 다투어 건립되면서 사회·경제적 폐단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서원에 대한 조정의 관여가 처음으로 논의되기는 인조 22년(1644) 慶尙監司 朴 의 書院弊 상소를 계기로 한다.⁶⁴⁾ 그는 서원 제향자의 자격 기준이 모호함에서 오는 濫享의 경향을 지적하고 良役弊의 유발을 거론, 서원 건립 시에 조정에 알려야 한다는 정책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남설이라 할 정도로 서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문제될 만큼 서원의 폐해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서원의 폐단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서원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폄하던 효종대에 들어와서이다.

효종 8년 忠淸監司 徐必遠은 서원 남설의 경향을 지적하고, 그 폐단을 鄉校衰退·良丁의 冒占·傷風敗俗·官給祭需라는 4가지 측면에서 비판, 서원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⁶⁵⁾ 그의 이러한 요청은 당시 행정관료였던 禮曹判書 蔡裕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한때 정책으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李正英과 閔鼎重 등 산림계 인물들은 도학의 진흥과 士子의 藏修處라는 서원 본연의 건립 목적을 강조하면서, 祀賢은 부차적이므로 疊設이 문제되지는 않고 칙설 자체가 오히려 제향인물에 대한 후학의 존경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원을 翫樂하라는 것은 斯文을 亡하게 하는 처사라고 공박하였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결국 당시 논리적인 면에서 우위를 보이던 산림계의 의지대로 처리되어, 서원의 창건시 반드시 조정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만을 결정짓는 것으로 낙착되었다.⁶⁶⁾

이러한 행정관료와 산림세력의 書院政策에 대한 논쟁은 오히려 서원의 보호와 장려라는 측면에서 서원 건립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효종대와 현종대에는 사액서원이 증설되고 사액 요청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현종은 스스로 疊設處에 대한 사액의 제한을 예조에 申飭하였다.⁶⁷⁾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서원에 대한 사액에 신중을 기하게는 하였으나, 사액은 오히려 증가하여 6개소에 그쳤던 효종대에 비해 33개소의 서원에 사액이 이루어졌다. 이는 효종 이후 진출한 서인계 산림의 서원 장려책으로 인하여 지방 사림선에서 머물러 있던 서원이 정치적 차원의 영역으로까지 올라온

63) 정만조, 『조선후기 대서원시책』, 『한국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252 참조.

64) 『仁祖實錄』 卷 45, 22年 8月 己未條.

65) 『孝宗實錄』 卷 18, 8年 6月 壬辰條.

66) 『孝宗實錄』 卷 19, 8年 7月 己酉條.

67) 『書院謄錄』 卷 1, 顯宗 元年 2月 19日條.

데서 기인한다. 그리하여 서원에 대한 인식 또한 특정인물에 대한 祭享處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17세기 후반인 숙종대에 이르면 서원문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숙종대에 서원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원년에 戶曹判書 吳挺緯가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서원의 사사로운 건립이 성행하고 있음과 院屬 및 保奴의 폐단을 들어 이에 대한 강구책을 요구한데서 비롯되었다.⁶⁸⁾ 그는 각 서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毀撤까지 바랬으나, 비변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효종대 서필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었던 창건시 조정에 보고한다는 것을 착실하게 시행하지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는 당시 집권세력인 남인으로서는 궤철에 따르는 사람의 반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이나, 남인 역시 이전 시기의 서인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李滉, 鄭逵 등 남인계 서원들에 사액을 부여하였다. 결국 당시의 서원 정책은 표면상 疊設不許와 건립 억제에 두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이후 庚申大黜陟과 己巳換局, 甲戌換局 등 계속되는 환국을 거치면서 정권이 자주 바뀌고 집권한 당인에 의한 서원 건립이 빈번해지자 더욱 심화되어 갔다.

경신대출척 이후 집권한 서인에게 太司成 金萬重은 서원이 너무 과다한데다 藏修의 실효는 없고, 오히려 守令權을 위협하며 유생들이 群居遊談하거나 酒食舖籩하여 폐단만 낳는 장소로 전락되었다는 상소를 하였다.⁶⁹⁾ 이를 계기로 서원의 신설금지과 일체의 사액을 불허한다는 정책이 수립되어 서인이 집권한 5~6년간은 宋浚吉과 같이 서인의 儒宗으로 추대되는 인물의 서원까지도 건립이 보류되었다.⁷⁰⁾ 그러나 이로 인하여 서원을 대신한 祠宇의 건립이 이루어지고, 疊設書院의 건립 대신 서원 제향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기사환국으로 남인계가 집권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특이한 점은 경술대출척 때에 서인의 공격으로 數多한 被禍者를 내었기 때문에 그들을 伸冤하고 表彰한다는 의미에서 서원 건립이 이루어지고, 또 서인에 의해 그 동안 거부되었던 남인계 서원에 대한 사액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갑술환국 이후에 집권한 서인들도 환국에 따른 집권명분 확립과 피화자의 신원이란 면에서 서원 장려책이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첩설과 남설, 그리고 서원폐에 대한 통제책이라는 상반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환국으로 인한 피화자의 신원을 위한 서원의 건립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첩설을 피하기 위하여 제향자의 범위를 확대시킴에 따라 道學者이어야 된다는 제향 기준이 해이해져 서원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일 서원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게

68) 『書院謄錄』 卷 1, 肅宗 元年 9月 28日條.

69) 『肅宗實錄』 卷 11, 7年 6月 癸未條.

70) 『書院謄錄』 卷 2, 肅宗 8年 3月 15日 · 13年 2月 6日條.

되었고, 祠宇와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⁷¹⁾

이렇게 서원이 비정상적으로 건립·사액되고, 앞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정치·사회적으로 오용되자 그 폐단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숙종 29년 閔箕遠이 서원폐를 들어 私建時의 지방관에 대한 논죄와 首倡儒生에 대한 停擧를 요청했고,⁷²⁾ 뒤이어 閔箕厚가 첩설폐를 극론하고 청액소를 勿捧할 것을 청하였다.⁷³⁾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숙종 39년 왕이 스스로 一切之法이 없기 때문에 첩설이 온다고 첩설금지를 하명함에 의해서이다.⁷⁴⁾ 이 때 서원 문제를 전담하게 된 禮曹判書 閔箕厚는 사사로이 건립한 서원의 논죄에 대해 이를 막지 못한 監司는 推考, 守令은 罷職, 首倡儒生은 3년간 停擧하게 하여, 앞서 민진원이 私建에 대한 통제를 요구했던 해를 기준으로 그 해 이후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창건한 서원에 대한 査啓를 각도 감사에게 下命할 것을 건의하였다.⁷⁵⁾ 그리하여 이듬해 평안도의 査狀이 올라왔을 때 箕子書院 등 3개소만 남기고 일체 毀撤하였다.⁷⁶⁾ 이는 조선조 서원에 있어 첫 韋철령의 시행이기도 하지만, 영조 17년 韋철시에도 '甲午定式'이라 하여 그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경종대에 들어와 처음으로 취하여진 서원시책은 당시 집권세력이던 노론에 의해 시도된 사액서원 位田의 면세에 관한 결정이었다.⁷⁷⁾ 그리하여 사액서원은 3결, 미사액서원은 그 반으로 하도록 하고, 만약 서원 자체에서 마련한 위전이 3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民結로써 충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⁷⁸⁾ 한편 辛丑獄으로 재집권한 소론은 숙종대의 갑술환국 때처럼 자신들의 집권 명분과 피화자의 신원을 위한 서원의 건립과 사액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는 소론계 서원의 장려보다는 숙종 때 시행된 서원 韋철이 아직 진행중이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리하여 경종 2년 대표적인 서원통계론자인 李明彦은 서원이 祀賢 위주로 성격이 변함에 따라 사우와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지

71) 정만조, 앞 글, pp. 256~261 참조.

72) 『書院勝錄』 卷 4, 肅宗 29年 4月 5日條.

73) 『書院勝錄』 卷 4, 肅宗 30年 6月 25日條.

74) 『肅宗實錄』 卷 54, 39年 7月 丙寅條.

75) 『承政院日記』 第479冊, 肅宗 39年 7月 30日條.

76) 『肅宗實錄』 卷 55, 40年 7月 庚戌·乙卯條.

77) 『書院勝錄』 卷 6, 景宗 1年 5月 25日條.

78) 陶山書院의 토지문서를 보면 寺社位田·顯入田·免役田·買得田·屬公田의 移給 등의 방식을 통하여 서원전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서원 田畠 총량이 6結 15卜 3束餘와 1斗落이 된다. 여기서 顯入田은 뜻있는 인사로부터 寄進된 토지, 免役田은 寺院을 배경으로 力役의 免除를 원하는 자가 상납하는 토지, 買得田은 서원의 재산으로 직접 매입한 토지, 屬公田은 官의 조치로 인하여 서원에 移屬된 公田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서원전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다른 서원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민병하, 「서원의 경제구조」, 『대동문화연구』 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68 참조).

적, 이런 결과를 초래한 요인으로 첩설과 남설의 폐단을 비난하였으며, 求請이 금지되어야만 이런 폐단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다.⁷⁹⁾ 이어 大司成 李眞儒는 노론 四大臣의 부자 형제가 제향된 서원의 毀撤·黜享을 요구하고,⁸⁰⁾ 이것이 정치적 보복의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이번에는 疊設·猥享者에 대한 查出澄汰를 요구하였다.⁸¹⁾ 이는 소론측의 주도로 제향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론측의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이 또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하여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비록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경종대의 이러한 논의는 서원문제에 대한 일대 시정책이 요망된다는 여론의 공감대를 조성하게 되었고, 이후 영조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서원훼철을 단행케 하는 명분을 제공하여 주었다.

2) 英祖代의 書院 毀撤

조선조 서원은 숙종 40년 서원에 대한 훼철이 이루어진 후, 경종대를 거치면서 서원 정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붕당간의 치열한 갈등구조로 인하여 훼철 자체가 정치적인 상관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영조대에는 숙종·경종대의 치열한 붕당간의 정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탕평이라는 정치 이념으로 해결하려는 시기이다. 그런데 탕평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붕당의 정치적 기반이 되며, 정쟁의 초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서원의 특성상, 이에 대한 정리를 필요로 하였다.

영조대 초기에는 국왕의 집권 기반이 아직 미약하였고, 탕평책이 추진되지도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원 정책에 있어서도 先代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리하여 乙巳換局으로 집권한 노론은 집권 명분의 확립과 피화자의 신원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경종대에 黜享된 노론계 인물이 모두 復享되며 顯官도 還擢되었고, 宋時烈·權尙夏 등의 서원에 사액이 내려지게 되었다. 서원훼철에 대한 영조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주어지는 계기는 영조 3년 修撰 趙龜禧가 서원이 藏修의 실효는 없으면서 良民을 冒入, 민폐만 끼치고 있다는 폐단을 지적, 첩설처에 대해 査啓를 청함에 의해서이다.⁸²⁾ 이에 영조는 文勝의 폐를 경계하면서 사계되는 대로 훼철하도록 명하였다. 한편 이러한 서원폐에 대한 지적은 주로 少論諸臣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이것은 영조 5년부터 經筵에 入侍하여 영조의 時務觀에 큰 영향을 주었던 梁得中의 書院虛僞說과 함께 영조의 서원관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조대의 정치는 당쟁의 격화를 막고 왕권의 안정과 강화를 목표로 한 탕평책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조진희의 건의에 따라 하명되었던 각도 서원의 첩설처에 대한 査啓가 영조 5년에 올라오자 일체 훼철론을

79) 『承政院日記』 第544冊, 景宗 2年 9月 5日條.

80) 『書院騰錄』 卷 6, 景宗 3年 3月 27日條.

81) 『書院騰錄』 卷 6, 景宗 3年 5月 12日條.

82) 『承政院日記』 第651冊, 英祖 3年 12月 11日 壬辰條.

퍼는 영조에게 분쟁의 우려를 들어 撤額이란 완화책을 건의하고, 또 노·소의 이해가 상충하는 서원은 철택에서도 제외시킨 것은 이러한 탕평의 의도에서였다.⁸³⁾

영조 14년 일부의 安東人이 노론계의 지원을 받아 김상헌서원을 세우려다 이를 방해하고 끝내 毀院하여 버린 남인과 충돌한 사건⁸⁴⁾은 서원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탕평과는 毀院에 가담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관련 노론계 관료도 파직시키는 兩治兩解의 방법을 건의하였고, 영조 또한 이를 계기로 자신의 치세 기간 동안 창건된 서원에 대한 査啓를 분부, 창건 당시의 지방관과 首倡儒生에 대한 처벌을 시도하였다.⁸⁵⁾ 이러한 과정에서 서원의 私建 통제에 대해서 탕평론자들은 사림과 黨人의 반발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지만, 왕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간다. 이는 영조 17년의 서원 훼손을 영조가 직접 주도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영조 17년에 단행된 私建書院에 대한 일체의 훼손책은 그 전년에 단행된 庚申大處分에서 비롯되어 辛酉大訓 반포로 일단락되는 소론탕평에서 노론탕평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의되고 집행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함경감사 朴文秀가 도내의 사정을 狀啓한데서 시작되었다. 그는 北靑에 소재하는 이항복 주향의 老德書院에 전년에 죽은 소론 영수 李光佐를 北道의 유생들이 사사로이 추배한 사실을 보고하고, 관찰사로서 이를 막지 못한 죄를 자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접수된 禮曹關文 내에 坡州書院追配의 일⁸⁶⁾로 先配享 後聞報하는 일이 금지되고 있으나, 이 일은 禮曹關文 이전의 일이므로 首倡儒生에 대한 처벌은 자신에 대한 논죄로 대신하도록 하고, 단 배향한 일은 조정에서 재량껏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⁸⁷⁾ 이에 왕은 파주에서의 예에 따라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이광좌는 소론의 영수로서 비록 그의 선조가 제향된 서원이라 할지라도 사액이 내려진 서원에 조정의 승인도 받지 않고 추배되었다는 사실은 노론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노론계 탕평론자인 金在魯가 이의를 제기하여 박문수가 거론한 先配享 後聞報에 대한 금령은 파주서원 추배의 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실은 숙종말에 祠院私建禁令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⁸⁸⁾ 이처럼 노·소론간에 이광좌의 추배 일을 놓고 분쟁이 크게 발생할 조짐을 보이자, 영조는 탕평과의 건의를 받아들여 숙종 40년 이후 그 때까지 私建된 모든 書院·祠宇에 대하여 일체 毀撤을 하명하였다.⁸⁹⁾

83) 정만조, 「영조 17년의 서원훼손」, 『한국학논총』 9, 국민대학교, 1986, pp. 92~97 참조.

84) 정만조, 「영조 14년의 안동김상헌서원 건립사비」, 『한국학연구』 1, 동덕여자대학교, 1982 참조.

85) 『書院謄錄』 卷 8, 英祖 14年 7月 20日條.

86) 이는 영조 16년 9월 파주유생들이 成守琛書院(坡山書院)에 그 아우인 守琮을 先追享後聞報한사실을 말한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성수종 추배는 기정사실로 인정하지만 首倡儒生은 3年 停擧에 처하고 앞으로 사액서원에 대한 사사로운 추배를 정식으로 금단한다고 결정하였다.

87) 『承政院日記』 第929冊, 英祖 17年 3月 26日 辛卯條.

88) 『承政院日記』 第929冊, 英祖 17年 3月 27日 壬辰條.

훼철은 禮曹關文이 발송된 17년 4월 8일부터 약 5개월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우선 관문에서 祠院이라 명명하였으므로 影堂·鄉賢祠·生祠堂·精舍·孝社·里社 등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도 감사들의 문의가 있었다.⁹⁰⁾ 이에 왕은 士子가 출입하며 聚會하느냐의 여부를 훼철의 기준으로 삼고 서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祠宇에 대해서도 일체 훼철을 하명하였다.⁹¹⁾ 그러나 이러한 시행 과정에서 훼철책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방 사람들과 중앙 관인들의 반발이었다. 지방 사람들은 지방관에게 호소하기도 하고, 연명으로 상소하여 자신들과 연결된 祠院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훼철책을 다소 지연시킬 수는 있었지만, 이를 구실로 훼철을 집행하지 않고 형세를 관망하는 지방관은 엄명한다는 방침이 申飭됨으로써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⁹²⁾ 한편, 당시 집권세력이던 노론은 남설의 폐단이나 금령을 어긴 私建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금령을 어긴 鄉儒의 잘못으로 주자를 포함한 儒賢의 사원까지도 함께 훼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훼철 대상을 분간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⁹³⁾ 이는 사원의 심사과정에서 노론측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발의된 것이었다. 이에 훼철 자체를 탕평의 차원에게 해결하고자 했던 영조는 인물시비에 따른 분쟁의 우려를 들어 이를 강경하게 거부하였다.⁹⁴⁾

그리하여 이 때 훼철된 祠院은 모두 170여 개소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표 2>에서와 같이 경상도가 52개소로 제일 많고, 전라도 25개소, 평안도 21개소, 황해도 20개소, 충청도 19개소, 강원도 17개소, 함경도 12개소, 경기도 7개소 순이다. 이렇듯 국왕의 강경한 방침으로 훼철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형벌을 강화하여 지방관에 대한 流配까지도 규정, 향후 私建의 여지를 남겨 놓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조치로 서원의 첩설과 남설이란 조선후기의 큰 폐단은 일단 가라앉게 되었으나, 서원이 장수치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였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국가 통치력이 흔들리게 되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폐단은 더욱 악화되었다.

89) 『承政院日記』 第930冊, 英祖 17年 4月8日 壬寅條.

凡法令之解弛 專由於撓 不可不行一切之法 甲午定式之後 不稟私建祠院及私追享者 勿論儒賢大臣 撤去已故者外 聞知道臣 罷職 守令拿處 首倡儒生限五年停舉 此後 不稟私建祠院及追享者 聞知道臣拿處 守令施以告身三等之律 儒生違配 其隱而不聞者 當以御史廉問之矣.

90) 『承政院日記』 第932冊, 英祖 17年 6月 1日 甲午條.

91) 『承政院日記』 第930冊, 英祖 17年 4月 20日 甲寅·第933冊, 英祖 17年 7月 1日 癸亥條.

92) 『承政院日記』 第933冊, 英祖 17年 7月 1日 癸亥·第935冊, 英祖 17年 9月 2日 甲子條.

93) 『承政院日記』 第931冊, 英祖 17年 5月 18日 辛巳條.

94) 『承政院日記』 第932冊, 英祖 17年 6月 10日 癸卯條.

〈표 2〉 甲午(숙종 40년) 이후 私建으로 毀撤된 祠院 수⁹⁵⁾

명칭 도	書院	影堂	祠	祠宇	鄉賢祠	精舍	世德祠	孝社	社祠	祠院	里社	別廟	生祠堂	遺愛祠	합계
경 기		5											2		7
충 청	2	4		3	4		3						3		19
전 라	4	3		9	1								4	4	25
경 상	7	4	4	2	4	6	1	1	1		2	2	17	1	52
강 원	2	3	4		2								6		17
황 해	1	5			2					1			11		20
함 경	2	3		2	1								4		12
평 안	1	1	2	5	2								10		21
합 계	19	28	10	21	16	6	4	1	1	1	2	2	57	5	173

3) 高宗代의 書院 撤廢

영조 17년 서원 철회 이후 서원의 첩설 및 남설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탕평정국 하에서는 의리논쟁이나 인물시비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가 없었고, 이와 직결되는 서원의 건립도 주춤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19세기에 들어 소수 별열가문에 의한 세도정치가 이루어지자 의리나 명분 자체가 그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원의 폐단이 일소된 것은 아니었다. 서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해질수록 講學과 教化라는 서원의 본래 기능은 더욱 변질되어 갔고, 봉당정치와 퇴행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19세기에 이르러 그 폐단은 극에 달하였다.

고종대 서원 철회 논의는 원년 4월 대왕대비의 傳敎로부터 시작되었다.⁹⁶⁾ 이는 표면적으로 서원의 免稅 결수와 원보의 정액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서원의 실상을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 사회적 폐단과 경제적 폐단을 들어 처음으로 금지조치를 적용한 것이 고종 2년에 실시된 萬東廟의 撤廢였다. 그 논지는 송시열의 遺命으로 만동묘를 세웠지만 숙종대에 이미 大報壇을 세웠으니 만동묘는 첩설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선왕의 유지와 어긋나는 것이었다. 즉, 만동묘는 첩설을 금지한 숙종대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정조도 만동묘는 첩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교를 내렸었던 것이다.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동묘를 첩설이라는 구실로 철회한다는 것은 앞으로 첩설된 서원과 사회적으로 폐해를 일으키는 서원들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철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처리과정은 그리 순탄하지가 않

95) 정만조, 「영조 17년의 서원철회」, 『한국학논총』 9, 국민대학교, 1986, p. 111 참조

96) 『日省錄』 高宗 元年 4月 22日條.

97) 『日省錄』 高宗 2年 5月 13日條.

아 유생들의 집단 상소와 개별 상소가 연달아 일어났다. 유생들은 만동묘가 명에 대한 의리의 표현으로 첩설이 아니라는 것, 그 때문에 조정에서도 영조대에는 관둔전 5결을 내려 祭需에 보태도록 하였고, 정조대에는 국왕이 친히 제문을 짓고 御筆題額을 하는 등 특별한 보호가 있었다는 것, 몇몇 유생들이 서원을 빙자하여 폐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므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를 빌미로 만동묘를 철폐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 등의 이유를 들어 만동묘의 철폐를 반대하였다.⁹⁸⁾ 그러나 대원군과 고종은 그들의 이러한 모든 반발을 거부하고 만동묘의 철폐를 단행하였다.

만동묘의 철폐는 서원을 철폐하여 민생의 회복과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대원군의 대내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서원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고종 5년 8월에 이르러서는 미사액서원의 철폐를 단행하였다.⁹⁹⁾ 이는 철폐 대상에 대한 착오와 시정이 거듭되는 가운데 다섯 차례나 걸쳐 진행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미사액서원은 모두 철폐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원의 철폐를 맡은 고을 수령은 유림들의 반발에 부딪치기도 하고, 고을 유림과 서원 후손들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이를 늦춰 보려 하였지만, 조정에서의 강경한 조치로 말미암아 서원 철폐에 직접 나서야만 했다. 이때 철폐된 서원의 材木은 건축 자재로 재활용되었고, 서원의 전답은 후손들에게 돌려준 것 외에는 대부분 향교나 양사재에 귀속시켰고, 또 일부는 지방 관아에 돌려 재정 충당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원생은 신분적 지위에 맞는 選武軍官에, 원보는 일반 군역에 충당시켰다.¹⁰⁰⁾

이러한 미사액서원의 철폐를 시행함과 동시에 사액서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즉 원생의 정원을 준수할 것, 제수를 지급하고 있으니 서원 면세전은 인정하는 않는다는 것, 서원의 신설을 금지하고 사액서원에 追配하는 것만을 허락한다는 것, 서원 원장은 수령이 맡도록 한다는 것 등을 정하였던 것이다.¹⁰¹⁾ 이 중에서 사액서원의 원장을 수령에게 맡긴다는 것은 서인·노론계 서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京院長制를 없애 서원과 정치세력 간의 연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서원의 사무를 本孫들이 주관하여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고종 8년의 대대적인 서원 철폐시에도 이 제도가 그 표면적 원인으로 대두되었다.

고종 8년 대원군은 1인 1院 이외에 첩설한 서원은 앞서의 만동묘의 예처럼 모두 철폐하라는 사액서원 철폐를 명하였다.¹⁰²⁾ 한편 철폐하지 않고 남기는 서원은 제향 인물의 성격이 道學과 忠節人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도학은 文廟從祀人을, 충절은 忠節大義가 높은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존속 서원의 선

98) 『日省錄』 高宗 2年 3月 29日·閏5月 2日·3年 10月 7日·10月 21日條.

99) 『日省錄』 高宗 5年 8月 3日條.

100) 윤희면, 「고종대의 서원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10, 1999, pp. 161~164 참조.

101) 『日省錄』 高宗 5年 9月 3日條.

102) 『日省錄』 高宗 8年 3月 9日條.

별을 예조에서 시행할 것을 명하였다.¹⁰³⁾ 이에 따라 禮曹判書 趙秉昌은 「實合百歲崇奉之四十七院」을 대원군에게 보고하여 47개 서원만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서원들은 모두 철폐하였다.¹⁰⁴⁾ 그리하여 이른바 辛未存置 47개 사액서원은 廟 1, 院 26, 祠 20으로 문묘 배향 인물이 주향인 서원 16개소와 종절대의료 파악되는 31개소의 묘·서원·사우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존속되는 47개 서원의 선정 방법이다. 선정의 기준은 물론 대원군이 제시하였던 도학과 종절인이 원칙이었지만 그 과정을 추정해보면, 예조에서는 우선 문묘배향인이 主享인 서원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주향이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御筆이 사액되거나 어필 偏額을 가지고 있고, 또는 御製를 보관하고 있는 특별한 서원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서원은 여러 군데이지만 어필이 없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나 국가의 보호를 특별히 받은 서원(송양·도산·옥산·필암서원)을, 또한 서원의 연고가 賜死나 流配地가 아닌 家鄉이나 卜居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존속 서원 중에서 주향인물이 문묘에 종사된 인물인 경우는 16개소인데 비하여 종절인인 서원·사우는 31개소로 거의 두 배나 된다. 그 이유는 전란에 순절하거나 큰 공을 세운 인물을 존중하게 하여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려는데 그의 의도가 있다고 추정된다.¹⁰⁵⁾ 지역별로는 <표 3>에서와 같이 경상도가 14개소로 제일 많고, 경기도 12개소, 충청도·평안도 5개소, 황해도 4개소, 전라도·강원도 3개소, 함경도 1개소 순이다.

한편, 고종 5년 미사액서원, 8년 사액서원 철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만동묘 철폐 때와 마찬가지로 유림들의 대대적인 반대가 일어났다. 유림들은 서원 철폐가 강행되자 斯文의 不運, 사문의 禍, 師生の 義絶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신미양요의 위기 속에서도 전례대로 儒會를 열어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집단 상소문을 작성·상소하였다. 이러한 양반 유림들의 유희와 상소 움직임에 대하여 대원군은 고종 2년 만동묘 철폐 때와 마찬가지로 단호히 대처하여 서원 철폐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서원에 대한 조정의 강경조치는 대원군이 하야한 고종 10년 이후에도 고종에 의하여 계속 유지되었다. 그리하여 유림들의 서원 복설 요청이 계속되었으나, 고종 12년 만동묘의 복설을 허용한 것 이외에는 단호하게 거부되었다. 이에 유림들은 서원의 복설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서원을 대신할 壇·書堂·亭子·影堂 등을 세워 제례를 이어 나가려고 하였다. 또한 齋室을 세워 문중서원의 기능을 이어 가려고도 하였고, 형편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遺墟碑를 세워 서원이 있었음을 기리기도 하였다.¹⁰⁶⁾

103) 『日省錄』 高宗 8年 3月 18日條.

104) 본래 書院·祠宇·廟 등은 그 명칭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본절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본래 이들을 '書院'으로 총칭하도록 하겠다.

105) 윤희면, 뒷 글, pp. 166~170 참조.

106) 윤희면, 뒷 글, pp. 175~180 참조.

〈표 3〉 대원군의 서원철폐 이후 존속한 47개 서원

소재지	서원명	주향인물	건립연도	사액연도
경기도(12개소)	崧陽書院	정몽주	1573	1575
	龍淵書院	이덕형	1691	1692
	江漢祠	송시열	1785	1785
	鷺江書院	박태보	1695	1697
	牛渚書院	조 헌	1648	1675
	坡山書院	성 혼	1568	1650
	德峰書院	오두인	1695	1700
	顯節祠	김상헌	1688	1693
	深谷書院	조광조	1650	1650
	四忠書院	김창집	1725	1726
	忠烈祠	김상용	1642	1658
紀功祠	권 율	1841	1841	
충청도(5개소)	遜巖書院	김장생	1634	1660
	彰烈祠	윤 집	1717	1721
	表忠祠	이봉상	1731	1736
	魯江書院	윤 환	1675	1682
	忠烈祠	임경업	1697	1727
전라도(3개소)	武城書院	최치원	1615	1696
	筆巖書院	김인후	1590	1662
	褒忠祠	고경명	1601	1603
경상도(14개소)	西岳書院	설 충	1561	1623
	紹修書院	안 향	1543	1550
	金鳥書院	길 재	1570	1575
	道東書院	김굉필	1605	1607
	藍溪書院	정여창	1552	1566
	玉山書院	이언직	1573	1574
	陶山書院	이 환	1574	1575
	興巖書院	송준길	1702	1705
	玉洞書院	황 회	1714	1789
	忠烈祠	송상현	1605	1624
	屏山書院	유성룡	1613	1863
	彰烈祠	김천익	(조선) 선조대	1607
	忠烈祠	이순신	1614	1723
褒忠祠	이슬원	1738	1738	
강원도(3개소)	彰節書院	박팽년	1685	1699
	忠烈書院	홍명구	1650	1652
	褒忠祠	김응하	1665	1668
황해도(4개소)	淸聖廟	백 이	1691	1701
	太師祠	신승겸	고려대	1796
	文會書院	이 이	미 상	
鳳陽書院	박세채	1695	1696	
함경도(1개소)	老德書院	이항복	1627	1687
평안도(5개소)	三忠祠	계갈량	1603	1668
	武烈祠	석 성	1593	1593
	忠愍祠	남이홍	1681	1682
	表節祠	정 시	(조선) 순조대	
	酬忠祠	휴 정	미 상	1784

5. 맺는말

조선시대 서원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철폐에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그 맥을 함께 한다. 서원의 발생은 관학의 쇠퇴라는 교학체제의 붕괴 속에서 조광조 계열의 사류에 의해 추진된 문묘중사 운동이 현실적으로 지방관에 의해 祠宇 건립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창건되었다. 즉, 당시 훈신계열로 파악되는 주세붕이 풍기군수를 역임하면서 풍기지역의 교화를 위하여 祠廟를 건립한 것이 그 시초가 된 것이다. 이 때의 서원은 講學보다는 尊賢을 통한 教化가 더욱 중시된 祠廟의 성격의 교육기관이었다. 서원제도가 정착되고 사설교육기관으로서의 성립을 보게 된 것은 그것이 출현한지 7·8년이 경과한 명종 초 퇴계 이황의 서원보급운동에 의해서였다. 그는 서원을 사림의 講學과 藏修를 위한 교학기구로 정의하고, 따라서 서원은 사묘에 부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원이 위주이며, 사묘는 유생의 본보기를 위한 서원의 부속기구로서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의 서원은 향촌의 교화보다는 강학적 성격이 보다 강한 교육기구로서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원에 대한 국가의 인정을 요구하는 청액활동과 보급활동을 통하여 서원의 존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서원의 건립이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선조대 이후 발생한 붕당이 성리학적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정치논리가 명분과 의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임진왜란 이후 형성된 족계에 의한 동족촌락의 발생이 이 시기 향촌 사회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원의 교육적 기능보다는 사림세력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향촌 교화의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게 된다. 서원은 향촌 士子들이 聚會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론 형성의 집회소가 되었고, 이에 그들의 여론이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중앙에서는 그들의 지지 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 향촌에서의 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서원의 정치·사회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사액이 남발, 서원남설이라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이에 그 서원의 폐단을 지적하는 상소가 연이어 일어났고, 서원의 창건 및 제향, 그리고 사액을 제재하는 각종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미 각 당파별로 자신들의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서원이 남설되어 있었고, 이것이 당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탕평책을 추구한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첩설 서원에 대한 철폐가 일부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원의 폐단이 일소된 것은 아니었다. 서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해질수록 강학과 교화라는 서원의 본래 기능이 더욱 변질되어 가고, 붕당 정치의 퇴행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19세기에 이르러 그 폐단은 극에 달하였다. 이에 고종대에 이르러 서원에 대한 대대적인 철폐를 단행, 47개소의 서원만을 남기고 모두 철폐되었다.

서원의 발생에서부터 철폐에 이르기까지의 제반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서원의 창건 자체가 안향의

제사적 기능이 강하였다는 점과, 韃靼시에도 제향인물이 그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서원의 폐단을 지적하는 논의과정에서도 그 교육 내용에 의한 것보다는 주로 제향 인물의 자격이나 첩설에 따른 폐단이 주요내용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의 서원은 講學을 통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尊賢을 통한 교화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書院儀禮

서원의 주요 기능은 講學과 先賢奉祀이다. 그 중 선현봉사를 가장 잘 표현하여 주는 것이 春秋享祀이다. 祀에는 大·中·小의 三祀가 있다. 大祀는 社稷과 宗廟祭이고, 中祀는 文廟釋奠, 小祀는 명산대천에 대한 蠡祭나 祭이다. 여기서 釋奠이 上丁日이므로 이보다 규모가 작은 서원은 中丁, 또는 下丁으로 날짜를 잡는다. 『月令』의 陳氏가 註한 바에 따르면, 丁日을 享祀日로 하는 까닭은 '先庚三日, 後甲三日' 이 되는 天干으로 '用丁爲文明世' 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서원의례에 관한 절차를 「陶山書院儀節」을 참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香謁·正謁禮

香謁은 매달 朔望(1·15일)에 謁廟하는 것이고, 正謁은 正月 初(5일)에 행하는 것이다.

- 香謁의 절차: 매달 삭망 전날에 齋有司는 入院하여 사망날 이른 아침에 儒巾을 쓰고 道袍를 입은 다음에 손을 씻고 奉爐·奉香를 앞세워 廟에 나아가 세번 향을 올리고(三上香) 두번 절한다. 그리고 사당에 들어가 神位를 奉審한다. 이같은 절차는 院長과 재유사가 부임할 때도 같다.
- 正謁의 절차: 정월 초 4일 三任(원장과 2인의 재유사) 및 鄉中의 諸員이 入院하고 5일 이른 아침에 원장은 堂上에서 남쪽을 향하여 서고, 재유사와 諸賢은 북쪽을 향하여 마당에 동서로 齒序로 나뉘어선 뒤 揖禮를 행한다. 曹司가 재유사 앞으로 나아가 읊하고 뵈면, 재유사가 執禮를 口薦한다. 조사가 다시 집례 앞으로 나아가 서로 읊하면, 집례는 謁者를 구천한다. 조사가 謁者 앞으로 나아가 서로 읊례를 행한 후 제자리에 다시 위치하면, 집례는 사당으로 가서 笏記를 唱한다. 笏에 의하여 序立하고 位次에 따라 예를 마치고 강당으로 돌아오면, 원장과 연로자들은 서쪽으로 향하고 집례 이하는 동쪽으로 향하여 앞 뒤로 선 뒤 읊례한다. 그리고 다시 사당에 나아가 위패를 奉審한 뒤 물러난다.

* 春秋享祀禮

- 仲月(2·8월) 中丁에 행하고, 國忌日과 겹치거나 다른 有故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下丁으로 연기하여 시행한다. 만약 下丁日이 없을 경우에는 亥日, 또는 丙日로도 행하였다.
- 享祀가 드는 달, 朔日에 公事員들이 강당에 開座하여 獻官(初·亞·終)과 祝官(大祝이라고도 한다)

1인에게 望報을 하고 모든 유생들에게는 出文하여 알린다. 원장과 축관, 執禮가 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入齋한 날 이전까지는 單子를 내어야 한다. 원장과 각 有司는 사흘 전에 入齋하여야 하며, 헌관과 축관, 집례 및 유생들은 이틀전에 입재하여야 한다. 한번 정문을 들어온 뒤에는 齋가 파할 때까지 다시 나가면 안된다. 그리고 각기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지 말아야 하고, 때때로 행사의 연습을 행한다. 만약 이때까지 헌관의 숫자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望報을 내도록 한다.

- 正齋날에는 正謁 때와 같은 절차로 謁廟禮를 행한다. 이 때 曹司는 먼저 執禮에게 나아가 뵈고 서로 읍한다. 이때 집례가 謁者를 薦한다.
- 아침에 有司들이 祭器庫에 나아가서 祭器의 숫자를 맞추어 보고 滌器가 되었는가를 살펴본다.
- 낮에 강당에 開座하여 相揖禮를 한 뒤, 헌관과 각 집사를 分定한다. 이어 분정된 집사록을 헌관에 쓰고 다음 향사 때까지 걸어둔다.
- 祝官이 사당에 들어가서 祝板을 가지고 온다. 祝文을 쓴 뒤 이를 사당에 가져다 둔다. 相揖禮를 행하고 罷座한 뒤 다시 기립하고 앉는다. 이때 堂中の 有司가 앞으로 나아가 큰 소리로 鄉約을 읽는다. 이어 식당이 開座되고 상 앞에서 서로 座揖하고 난 뒤 수저를 든다.
- 正齋날 오후에는 有司가 祭物을 갖추어 정문에 들어서면, 헌관은 남쪽을 향하고, 모든 유생들은 계단 아래에 동서로 序立하여 牲(양 또는 염소)을 맞이한다. 牲을 뜯 가운뎃 안치하고 稻를 받들어 典祀廳에 있는 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뜯로 나온다. 이때 헌관 이하 각 유사는 다시 북쪽을 향하여 序立한다. 曹司가 東·西·南·北 四方으로 돌면서 '充' 하고 물으면, 헌관 또한 조사와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膾' 이라고 4번 답한다. 이를 '牲看品' 이라고 한다. 이것이 끝나면 각자 처소인 東·西齋로 돌아간다.
- 유사는 다시 典祀廳으로 가서 時使로 하여금 祭米를 짓게 하여 정문을 나간다. 햇불을 밝히고 길을 쓸면서 江邊에 이르러 배를 타고 중류로 나아가 쌀을 9번 精洗한 뒤 돌아온다. 이를 滌米라고 한다. 이때에 헌관 이하 모든 유생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 차례로 서서 鞠躬하며 이를 맞이한다.
- 밤에 유사는 '陳設圖' 를 가지고 入廟하여 그림대로 제수가 진설되었는가를 감찰한다.(丑時前 五刻)
- 자정이 되면 모두 의관을 바르게 하고 꿇어 앉아 丑時가 되기를 기다린다. 축시가 되면 헌관들은 각기 의복을 갖추고 堂 위에 서고, 모든 집사들은 뜰에 북쪽에서 차례로 서서 상읍례를 행한다. 집례가 먼저 廟廷에 들어가서 就位하고 笏을 맏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흥기에 따라 행한다.
- 行祀가 끝나면 堂으로 가서 읍례를 행하고 파한다.
- 罷齋日, 大祝과 執禮가 동제의 서벽 아래에 나란히 앉고, 모든 집사들도 동서로 마주 앉는다. 奠酌

이 먼저 대축과 집례 앞에 절하여 뵈고, 曹司는 집례에게 行祀 때에 失行이 있었는지 살피달라고 절하며 아뢴다. 집례가 '退'라고 하면 물러서고, 다시 謁者에 이르러 그같이 하여 隨問隨答한다. 대축과 집례가 서로 마주보며 失禮 또는 不失禮하였음을 推責한 뒤에 과한다.

- 飲福禮를 행한다. 典敎堂에 開座하여 初獻官의 酌酒로 잔을 돌린뒤 亞獻官·終獻官 순으로 巡盞한다. 술잔을 입에 대기 전에 一座는 반드시 座揖을 하고 술잔을 든다. 음복으로 받은 다른 제수는 싸가지고 도포 소매 속에 넣고 罷座禮를 행한다. 이로써 3일간의 享祀는 모두 끝나고 모든 유생들은 上下有司에게 절하고 각각 귀가한다.

※ 出入·升降·開閉의 절차

- 享祀時 서원 正門의 출입은 반드시 服人이나 禮服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講堂 앞에는 東西 양 계단이 있는데 서쪽 계단은 尊賓(국왕의 사신)이나 至卑者(奴僕)이 오르고, 동쪽 계단은 儒士들이 사용한다. 이것은 廟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西階는 初獻官과 祝官이 祝文을 墜坎(땅에 묻음)할 때에만 위하여 내려올 수 있다. 獻官 및 執事가 사당 안을 돌아서 나올 때에도 반드시 동쪽 협문으로 나와 다시 東階로 내려온다.

IV. 문봉서원과 고양8현(高陽八賢)

1. 머리말

고양시에는 현재 杏洲書院과 龍江書院이 현존하고 있고, 文峯書院은 院字가 모두 유실된 채 터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행주서원은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權慄의 행주산성에서의 戰功을 기리기 위해 憲宗 7년(1841) 왕명에 의해 건립이 시작되어, 동왕 8년 4월 29일에 완공되면서 바로 賜額되었다. 이 서원은 당초 사당인 紀功祠와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기공사는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三門과 講堂으로 보이는 건물만이 남아 있었다. 현재는 기공사를 대신한 권을 장군의 사당을 복원하며 원래 소재지인 幸州外里에서 산성 안으로 이전하여 보존되고 있다. 용강서원은 그 건립 연대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1980년대에 중건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 서원에는 고려 高宗 때 무신으로 몽고군을 맞이하여 龜州大捷의 功을 세운 朴運와 조선 太宗 때 咸興差使로 갔다가 목숨을 잃은 朴淳을 제향하고 있다. 이 두 서원은 모두 전공이 높거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절을 제향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애국 충절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의해 건립된 서원이다. 이처럼 제향 인물이 충절인인 경우는 서원 전체 제향 인물의 성격 분포를 볼 때, 전체의 12.2%로 매우 드문 경우이다.¹⁾ 그런데 충절을 제향한 서원이 고양시에서 두 곳이 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서 충절인이 많이 배출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리적 여건상 도성을 방어하는 요충지에 속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다.

이 두 서원과 비교할 때 문봉서원은 건립의 주제나 목적, 그리고 그 기능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문봉서원은 숙종 14년(1688)에 건립되어 동왕 35년(1709)에 사액을 받은 고양시 최초의 서원이다. 문봉서원이 건립된 숙종대 서원 건립의 특징은 庚申大黜陟과 己巳換局, 甲戌換局 등 계속되는 환국을 거치면서 정권이 자주 바뀌고 집권 黨人에 의한 서원 건립과 사액 추진이 빈번해졌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서원의 濫設이 가장 심각하였고, 이에 따라 서원에 대한 폐단도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문봉서원은 그 건립 추진 세력이나 제향자의 성격으로 보아 숙종대 서원 건립의 특징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건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봉서원은 秋江 南孝溫, 思齋 金正國, 服齋 奇遵, 秋巒 鄭之雲, 杏村 閔純, 慕堂 洪履祥, 石灘 李愼儀, 晚晦 李有謙 등 소위 高陽 八賢이라는 先賢을 봉사함으로써 향촌 士子들의 교

1) 전용우, 「조선조 서원 - 사우에 대한 일고찰」, 『호서사학』 13, 호서사학회, 1985, p. 19~26 참조.

구 분	충절인	문신·학자	미 상	합 계
서원수	81	553	46	680

화를 주목적으로 건립된 서원이다. 따라서 서원의 기본적인 기능이 유생의 講學과 先賢奉祀라는 점에서 보면, 행주·용강서원은 선현봉사라는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건립되어 운영되었고, 문봉서원은 두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조선후기 漣川의 臨江書院과 더불어 서울 근역(洛下)의 인재를 많이 길러낸 서원으로 손꼽히던 곳이다.

본고에서는 문봉서원의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리하여 제 I 장에서는 문봉서원의 창건과 사액 과정, 그리고 제향 인물의 선정 등을 여러 문헌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고, 제 II 장에서는 제향 인물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그 창건의 의의와 서원의 성격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2. 文峯書院의 創建과 祭享

文峯書院은 숙종 14년(1688)에 건립되어 숙종 35년(1709)에 왕으로부터 賜額을 받은 고양시 최초의 서원으로, 현재 일산구 문봉동 병석촌 입구에 그 遺地가 남아있다. 이러한 건립과 사액시기는 『東儒書院叢錄』(乾)의 경기도편, 『書院可攷』, 『俎豆錄』, 『新增東國輿地勝覽』, 『四千年文獻通考』, 『典故大方』 등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²⁾

당시 대부분의 서원은 문중적 기반을 바탕으로 건립된다든가 중앙 黨人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봉서원의 경우는 고양의 유생들이 주체가 되어 그 지방에 연고가 있는 선현들을 제향하는 서원의 건립과 사액을 주도하고 있다.³⁾ 본장에서는 문봉서원의 건립과 사액, 그리고 8賢을 제향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⁴⁾

문봉서원의 건립은 숙종 14년에 이루어지지만, 그 이전부터 서원의 건립을 위한 고양 유생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숙종 7년 京畿 儒生 柳碩昌이 여러 士林들과 함께 陳疏한 바에 의하면, 민

2) 위의 서책 모두 문봉서원의 건립연대를 숙종 戊辰에 건립, 己丑에 사액하였다고 하고 있다.

3) 서원이 건립되는 과정을 이해준은 그의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한국사론』 21, 국사편찬위원회, 1991)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즉,

첫째, 학식이나 덕망·공적 등으로 사후 지방 인사들의 청원에 의해 건립되는 경우

둘째,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후학의 양성이나 학행으로 모범을 보였던 유적(書齋·講舍·幽宅·幽墟·影堂·祠堂 등)이 있어 후대에 이를 토대로 서원을 건립하는 경우

셋째, 지역적 연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약하지만 그 후손들이 번창하여 그들의 名賢先祖를 제향하는 祭閣 家廟로 건립되었다가 門中祠宇로 발전한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문봉서원은 이 중에서 첫 번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4) 문봉서원에 관한 자료로는 『書院臚錄』과 『豐洪世乘』, 『石灘集』 등이 있다. 이 중 『풍홍세승』은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洪儒浩(初名 儒漢, 영조2년(1726)~정조9년(1785))가 지은 것으로 그가 생존하던 영·정조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서울 宗孫家에 전해지는 것으로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홍유호가 저술한 『풍홍세승』에는 저자를 따로 밝히도록 하겠다.

순·남효은·김정국·기준 등 四賢을 祭享하는 祠宇를 건립하여 정지운과 홍이상을 配享할 것을 청하고 있다.⁵⁾ 또한 서원이 건립되던 숙종 14년 金錫胄가 작성한 「高陽多士通太學文」에도 고양의 人士들이 4賢의 신주를 모시는 곳을 건립하여 鄉中의 藏修하는 곳으로 삼고, 정지운과 홍이상을 배향할 것을 헤아리고 있다⁶⁾고 하여 문봉서원의 건립 추진운동이 4賢의 주향과 2賢의 배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서원이 건립된 이후 사액을 청하는 李健命의 疏를 보면,⁷⁾

본 군에는 六賢의 사우가 있으니 일찍이 신유년(숙종 7년)에 조정에 건립을 청하여 俎豆를 받들게 되었으나, 廟額(사액)이 아직 더해지지 않아 祀典에 결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여 숙종 7년 조정에 사우의 건립을 청한 것을 계기로 사우가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우가 건립된 시기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원이 건립되기 이전에 사우의 형태로 우선 건립된 이후 서원으로 발전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지칭하는 祠宇가 바로 書院을 가리켜서 숙종 14년에 이르러서야 건립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⁸⁾

앞서 여러 자료들에서 확인되듯이 문봉서원의 건립은 숙종 14년에 이루어진다. 당시 제향은 민순·남효은·김정국·기준 등 4賢을 享으로 하고, 정지운·홍이상 등 2賢을 배향한 것으로 보인다.⁹⁾ 그러나 건립과 동시에 사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액이 내려지는 숙종 35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사액을 요청하게 된다. 우선 서원이 건립된지 3년 후인 숙종 17년 10월 21일 晝講에서 特進官 俞夏益은 근래 고양의 유생들이 남효은·김정국·기준·민순 등의 사우에 정지운과 홍이상을 배향하고 사액을 내려줄 것을

5) 洪儒浩, 『豐洪世乘』, 卷 6. 請建六賢書院疏.

是以一邑章甫讓以此四信者 享於一堂 而且以故處士臣之雲及大司憲洪履祥配彦

6) 『豐洪世乘』, 卷 2, 高陽多士通太學文

即次今日 吾邑人士之所 以同辭合慮 擬建四先生妥靈之所於服齋舊宅之基 且以爲鄉中緘掖藏修之所 而以秋巒鄭公之雲慕堂洪公履祥爲配食

7) 『豐洪世乘』, 卷 2, 高陽儒生六賢書院請額疏.

本郡有六賢祠宇 曾在辛酉建請于朝 以奉俎豆 而廟額未加 祀典有缺

8) 書院은 士子의 講學과 藏修를 위한 곳이고, 祠宇는 祀賢과 風化만을 목적으로 한 곳이다. 그러나 17~18세기에는 서원이 남설되고 서원이 사현 위주로 전환되면서, 사우와는 명칭상의 차이만이 있을 뿐 실질적인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따라서 사우와 서원을 혼용하여 쓰기도 하였다.

9) 『豐洪世乘』, 卷 2, 洪履祥條.

十四年戊辰建院于高陽歸耳洞 持平杏村閔先生純 處士秋江南先生孝溫 參判思齋金先生正國 應教服齋奇先生蓮 主享 先生及處士秋巒鄭先生之雲 配享

洪儒浩, 『豐洪世乘』, 卷 6, 高陽文峯書院配享條.

肅宗十四年戊辰建院祀六賢 庚子追配二賢 三十五年己丑賜額

陳疏하고 있다고 깎을 올리고 있다. 이 계는 유하익이 남효온의 외손으로 사실 외선조인 남효온이 배향된 사우에 추향과 사액을 요청하였을 경우 嫌碍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소관을 次官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청한 것이었다. 이에 숙종은 차관으로 하여금 회답하는 것은 可하다고 하였다.¹⁰⁾ 그러나 이 깎을 통해서 사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로부터 2년 후인 숙종 19년에 高陽 進士 俞載重 등이 올린 賜額疏를 보면,¹¹⁾

고양군 사람인 선정신 민순은 학문을 함양한 공과 출처와 거취 바름이 뛰어나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남효온은 淸操峻節하여 진실로 백세의 스승이요, 김정국은 도덕의 연원이 己卯諸賢의 推重한 바가 되었으며, 기준은 충효와 절의가 대단하여 죽음에 임했을 때에도 변하지 않았다. 四賢의 덕이 사람들에게 퍼져 많은 선비들의 경모함이 그치지 않았습니니다. 일찍이 辛卯年間(효종 2년)에 사우를 건립함으로써 받들어 모시는 뜻이 우러러 펼쳐지고 간절함에 이르러니, 특별한 윤희를 입어 순리로 다스리고 재물을 보태어, 이에 신주를 섬기는 곳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사 정지운은 김정국의 문인이고, 대사헌 홍이상은 민순의 문인이니, 모두 講道의 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四賢과 아울러 二賢을 또한 배향하였습니다. 편액을 하사하는 것은 사람의 소망을 위로하고 위하는 것이옵니다. 上項인 남효온·김정국·기준·민순 등 4인은 모두 선대의 명신으로 도덕과 문장이 지금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니, 조정에서는 사우를 건립하는 것을 허락하여 많은 선비들이 존모하는 정성을 따랐으며, 정지운·홍이상의 추배에 이른 것 또한 一鄉의 공공의 의론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10) 『書院謄錄』 卷3, 肅宗 17年 10月 21日條.

頃者高陽儒生等 以先正臣南孝溫金正國奇遠閔純祠宇 故處士臣鄭之雲故大司憲臣洪履祥配享 賜額事陳疏. 啓下本曹今當回啓而其中南孝溫即臣之外先祖措語之間 不無嫌碍之事 今次官代行何如. 上曰, 今次官回啓可也. 한편, 윤경로는 「文峯書院의 創建과 發展」(『文峯書院과 高陽八賢』, 高陽文化院, 1991, p. 24)에서 이 계의 “以先正臣南孝溫金正國奇遠閔純祠宇 故處士臣鄭之雲故大司憲臣洪履祥配享 賜額事陳疏”를 배향과 사액을 청한 것으로 보아 정지운과 홍이상의 배향이 숙종 17년에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구절을 ‘配享’ 다음에서 끊어 보면 배향까지가 과거의 사실(서원 건립시)이 되고 사액의 일만을 陳疏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11) 『書院謄錄』 卷3, 肅宗 19年 10月 21日條.

郡人 先正臣閔純 學問涵養之功 出處去就之正卓卓 有人不可及者 南孝溫 淸操峻節 藏百世之師 金正國 道德淵源 爲己卯諸賢之所推重 奇遠 忠孝大節 不於臨死之際 四賢之德馨在人 多士之景慕靡已 曾在辛卯年間以建祠崇奉之意 仰伸至懇 特蒙允許 經紀材力 爰作妥靈之所 而故處士鄭之雲 乃正國之門人 故大憲洪履祥 乃純之門人 而俱有講道之功 故以四賢 享 而二臣亦配 願賜扁額 以慰士林之望 亦爲白有臥乎 所上項南孝溫金正國奇遠閔純等四人 俱是先代名臣其道德文章至今在人耳目 朝家許令建祠 棠循多士尊慕之誠是白乎 至於鄭之雲洪履祥之追配 亦出於一鄉共公之議是白乎矣

라고 하여 사액을 내려줄 것을 다시 요청하고 있다. 이 疏에서는 6賢의 대표적인 업적을 각각 소개하고 있어 6현에 대한 고양 유생들의 인식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疏에서는 일찍이 효종 2년(1651)인 辛卯年間에 사우를 건립함으로써 받들어 모시는 뜻이 우러러 펼쳐지고 간절함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다. 이 구절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신묘년에 이미 사우가 건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앞서 두 종류의 『豊洪世乘』에서는 숙종 7년(1681)에 사우의 건립을 청하는 상소가 있어 그 이전에 사우가 건립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그 사실 여부가 의심스럽다.¹²⁾

이상에서와 같이 고양의 유생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문봉서원의 사액을 요청하고 있다. 그 중에서 疏請을 올린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豊洪世乘』에 의하면 이건명의 請額疏를 통하여 사액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¹³⁾ 그리고 그 사액 시기는 앞서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숙종 35년이다. 이 때 '文峯'이라 사액하고 예관을 보내어 致祭하니, 知製教 丁思愼이 撰한 肅宗御製 致祭文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¹⁴⁾

致祭文(고양 문봉서원 사액시, 肅宗 己丑 8월 29일)

德性이 모인 곳 예로부터 고양이라, 아름다운 연못에 냇버들이 우거진 군자의 고을일세. 고요를 익히는 오두막집이 있어, 참됨을 감추고 性情을 길렀도다.

蘭香을 못 감추고 소명을 받들어 여러 번 나갔더니, 君喪에 白笠을 쓰기로 제정하여, 이 나라 상례를 바르게 잡았어라. (민순을 칭함-필자 주)

거룩하다! 그 처사 기절도 당당하네. 학문은 받아 온 연원이 뚜렷하고, 踪跡은 참말로 名場을 벗어났

12) 숙종 7년이 辛酉年임을 감안한다면 혹 『豊洪世乘』의 '辛酉年'과 『書院騰錄』의 '辛卯年' 중 하나가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이 부분을 의역하여 "일찍이 신묘연간에 사우를 건립하고자 하니, 받들어 모시는 뜻이 우러러 펼쳐지고 간절함에 이르렀다"고 해석한다면 전후 관계가 명확해지나 이 역시 시기적인 문제가 따른다. 그리하여 앞으로 문봉서원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의 발굴이 이루어져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3) 『豊洪世乘』에는 홍이상과 관련하여 문봉서원과 관련된 여러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이건명의 「高陽儒生六賢書院請額疏」는 숙종이 내린 「致祭文」의 바로 앞 편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비록 疏請을 올린 정확한 시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후관계로 볼 때 사액이 내려진 결정적인 請額疏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14) 洪儒浩, 『豊洪世乘』 卷 6, 致祭文(高陽 文峯書院 賜額時, 肅宗 己丑八月二十九日).
德性所聚 古稱高陽 珠淵杞藪 君子之鄉 習靜有虛 眞養性 蘭馨英秘 膺召命 白帽定制 邦禮克正 厥處士 氣節堂堂 學有淵源 跡脫名場 復陵一疏 凜若秋霜 侍郎明哲 晚就休亭 浮雲軒冕 芻遺經 卷舒隨時 士林儀形 侃侃侍講 爲世眞儒 揚清激濁 志回唐虞 馨潛吹 肅恨泉臺 曰鄭曰洪 早學金閤 功深義易 探無朕 天命有圖 大賢獎進 理窮精微 妙契師旨 講席陳謨 天褒備至 惟茲六賢 先後一邑 學旣衛道 行亦砥俗 遺風餘韻 洋洋餘昨 多士起慕 選地建宇 藏修得所 歲紀已久 今因疏 用宣華扁 辭替告 庶歆薄奠
知製校 鄭思愼 撰

네, 昭陵을 회복하지는 疏章은 능름하기가 가을 서리 같도다. (남효온을 칭함-필자 주)

侍郎은 明哲하여 休亭에 늦게 갔네, 공명을 뜬 구름 같이 헛되이 여기고, 聖賢이 끼쳐준 글 芻 같이 즐겼도다. 나아감과 물러남을 때에 따라 알맞게 했으니, 士林의 법도가 되었도다. (김정국을 칭함-필자 주)

강직한 侍講은 참다운 선비였네. 맑은 것 드날리고 탁한 것은 떨쳐서 唐虞를 다시 보자 뜻하였네. 短狐의 활시위를 가만히 당겨 쏘니, 품어 온 깊은 뜻을 泉臺에 쌓았도다. (기준을 뜻함-필자 주)

鄭秋巒, 洪慕堂은 일찍이 배웠기니, 金慕齋 閔杏村 두 스승 문하에서 주역의 깊은 뜻 골똘히 파고 헤쳐, 無朕이 묘한 이치 속 깊이 탐구하고, 천명을 圖式으로 밝히니, 大賢이 칭송하고 끌어올리네. 이치의 精微함을 속속들이 연구하여, 스승의 뜻대로 어김없이 맞았도다. 강론하는 자리에서, 謀策을 말하며 天恩의 포상함이 지극함을 갖추었네. (정지운과 홍이상을 칭함-필자 주)

여기에 여섯 분 어진 어른이, 먼저하고 뒤하여 한 골에 태어났네. 학문은 이미 바른 길을 호위하고, 행실은 또한 미풍을 만들었다.

남겨 준 풍운은 어제인양 출렁출렁 넘치고 있네. 수 많은 선비들, 思慕의 정 한테 모아, 이 자리를 가려서 사당을 세웠도다.

선비를 藏修할 자리를 얻어서, 세월이 흐른지 이미 오래였다. 이제사 상소한 뜻을 맞추어 빛나는 현관 걸어 이 같은 사연을 신하시켜 고하노니, 답지 못한 제물이나 기꺼이 흠향할지이다.

知製教 丁思愼이 撰하다.¹⁵⁾

여기서 6賢에 대한 전기를 각각 소개하고, 그들에 대한 思慕의 마음으로 사우가 건립되었으며, 이에 사액을 내린다고 하였다. 특히 高陽을 德性이 모인 곳이라고 하고, 6賢의 有德함을 칭송하여 조정에서 고양과 6賢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고양 출신 선비들의 德性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리하여 숙종 45년에는 문봉서원에 이신과의 이유점을 추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洪啓迪이 撰한 追享疏를 보면,¹⁶⁾

15) 이 치제문을 윤경로는 「文峯書院의 創建과 發展」(『文峯書院과 高陽八賢』, 高陽文化院, 1991)에서 『豐洪寶鑑』에 전해지는 것을 전제해서 실었다. 『풍홍보감』에는 서원의 사액 연대가 '乙丑'으로 되어 있고, 祭文 前頭에는 '享杏村閔純 秋江南孝溫 思齋金正國 服齋奇遠 秋巒鄭之雲 慕堂洪履祥 追享 石灘李愼儀 晚晦李有謙'라고 되어 있다. 그리하여 윤경로는 사액 연대에 대하여서는 정사신이 과거급제한 시기를 들어 誤記임이 분명하다고 하였고, 이신과의 이유점의 추향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숙종 45년이므로 제문 前頭의 내용으로 보아 본 치제문이 사액시에 내려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종류의 『豐洪世乘』에는 모두 己丑년에 사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 『풍홍보감』에 실린 제문 前頭의 내용도 실려 있지 않다. 더욱이 본 祭文을 「高陽 文峯書院 賜額時」라고 칭하고 있다. 따라서 『풍홍보감』에 실린 사액 연대와 제문 전두의 내용은 옮겨 적는 과정에서 誤記가 생긴 것으로 보이며, 본 치제문은 문봉서원 사액시에 내려진 것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16) 『石灘集』, 年譜, 高陽章甫追享文峯書院疏.

(전략) 臣 등이 엿드려 뵈옵건대 故 參判 李愼儀와 故 參議 李有謙은 그 학문의 純深과 節行의 탁월한 모양이 모두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서 지금 사람들의 耳目에 비치고 있으므로 신 등이 간략히 칭하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이신의는 곧 先正臣 閔純의 高弟입니다. 그 학문은 대개 心經과 近思錄으로 入德의 문을 삼았으므로, 恭으로써 處하고 敬으로써 일을 하여 항상 靜하였다. 즉 엄연하고 단정하여서, 움직임에 반드시 예절에 맞았으며, 평소에도 온화하여 聲色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고, 일에 임하여서도 확연히 의롭게 하여 그 지조를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宣祖朝에 일찍이 六行의 사람으로 뽑히어 힘써 응하였고, 光海가 덕에 어두어 母后를 유폐함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분연히 붓을 들어 400여 글을 獻議하였으니, 대략 天理와 人心 같은 것이라 밝히고 大舜의 효를 진심으로 開陳하였습니다. 이에 흉도들이 글을 번갈아 올리어 구석진 곳에 유배할 것을 청하니, 이에 곧 會寧에 轉되었던 것입니다. 仁祖의 반정으로 귀양이 풀리고,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며 품계를 높이어 관직을 받는 융숭한 예우를 입게 되었습니다. 先正臣 金長生이 그 師友淵源의 바름과 끝까지 一身을 綱常의 중함에 두는 것을 매년 칭찬하였습니다. 先正臣 宋時烈 또한 그 학문의 공이 큰 것과 熊魚를 取舍할 줄 알았음을 찬미하였으니, 이 모두 百世에 바꿀 수 없는 의론이 됩니다.

이유겸은 품성이 참으로 순하고, 총명하고 빼어남이 남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처음 先賢 趙守倫의 문하에 노닐었는데, 昏朝(光海朝)에 화를 입게 됨에 사람들은 모두 연류는 것이 두려워 감히 가까이 하지 않았으나, 이유겸은 홀로 친히 스승의 家事를 돌보았으니, 師友가 어려움에 처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돈독하기가 이와 같았습니다. 후에 김장생에게 나아가 究索踐履를 배우고, 兩造를 공부하니, 김장생이 後生들의 師法이 될만하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집에 기거하는 것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에도 큰 질병이 아니면 늦는 일이 없었고, 부모를 섬김과 선현에 봉사함에 있어서도 정성과 공경을 다하였습니다.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늙어가면서 孝悌를 더욱 돈독히 행하여 宗族에 있어서도 慇實하였고, 鄉里에도 성실하였으며, 일에 응하고 사물에 접할 때에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도 밖으로는 일찍이 나가본 일이 없었으니 관직에 있을 때는 힘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게으름을 피우거나 번거롭다 하여 마음대로 처결하는 일은 일찍이 없었고, 항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영남의 邑宰로 있을 때에도 고을 사람들의 자제를 모아서 家禮心經 鄉飲酒禮를 강의하는 등 오로지 학풍을 일으키고 백성을 교화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인조께서 剛明廉簡이라는 네 글자로 그를 칭찬하시었다. 시종 出處함에 크게 절의가 있어 광해 때에 布衣로써 동지들을 모아 상소하여 자식은 어머니의 원수가 될 수 없다는 의리를 극론하였습니다. 드디어 벼슬길이 막히어 이에 시골에 숨어 살며 밭을 갈고 고기를 낚으며 고요하고 아름다운 경지를 궁구하는 것을 즐기며 일체의 교제를 끊어, 도성 가까이 가지 않기를 근 10년간 하였

습니다. 癸亥의 반정으로 金集成文濬 등과 같이 遺逸로 천거되어 포의로써 縣宰에 바로 제수되었습니다. 丙子의 亂(병자호란)이 일어남에 師友들과 義旅(의병)를 일으켜 廣津을 지켰는데, 甲津이 무너져서 아들과 두 며느리가 적에게 잡혔으나 굶하지 않고 모두 죽은 것을 보면 그 집안이 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송시열이 撰한 비문에 潭翁이 統을 잇도록 허락하였으니, 즉 그 언행이 義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淵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답옹은 곧 先正臣 李珥입니다.

(중략) 이제 본군 문봉서원에서 장차 배향하여 崇奉함을 더하고자 합니다. 문봉서원은 곧 민순·남효온·김정국·기준·정지운·홍이상 등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제 두 賢臣은 도덕과 학문이 저 六臣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신되는 실제 민순의 연원을 이를 적제자이므로 배향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하략)

라고 하여 이신외와 이유겸의 學德을 상세히 밝히고, 光海君이 仁穆大妃를 폐하러 함에 大義로써 이를 獻議하고 극론한 것에 대하여 칭송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도덕과 학문이 문봉서원의 6賢에 비해 뒤 떨어지지 않으므로 문봉서원에 이들을 追享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追享疏는 숙종 45년 高陽 幼學 申泌 등의 상소에서 나타난다.¹⁷⁾ 이에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하여 다음해인 숙종 46년 2월에 문봉서원에 이신외와 이유겸의 位版을 봉안하게 된다. 그리고 左尹 尹植이 이들을 기리는 祭文을 撰하였다.¹⁸⁾

한편, 『京畿誌』(1842~1843)의 高陽郡 편을 보면, 문봉서원에는 8賢이 아니라, 西湖散人 혹은 西湖曉窓이라고 불리는 申曉가 추가되어 9賢이 배향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신표는 郡의 남쪽 30리 지경인 求知道面 江古山에 그의 묘가 있는데, 그는 조선 태종 2년(1402) 壬午榜에 문과 장원을 하였다. 그리고 右正言에 이르렀으나, 태종조에 王旨를 거스리고 행주로 퇴거하였다. 그 후 城門에 일체 자취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¹⁹⁾ 그러나 그의 추배에 관련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東儒書院叢錄』, 『典故大方』 등 군지가 작성된 이후에 편찬된 자료들에서도 문봉서원의 제향 인물로는 8賢만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군지의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후 8賢의 제향이 이루어진 이후 신표의 추배가 이루어졌다가 곧 黜享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상과 같은 문봉서원의 건립, 사액, 추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요청하는 상소문이나 제문 등을 분석해 보면 제향 인물의 성격과 건립 추진 세력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에 의하면, 민순은 仁順王

17) 『書院勝錄』 卷6, 肅宗 45年 9月 18日條.

18) 『石灘集』, 年譜, 文峯書院 追享祭文.

后的 상을 당하여 白帽 3年の 古制로 고쳐 준용할 것을 건의하는 등 喪禮를 바로 잡았고, 남효온은 昭陵을 복위할 것을 주장하여 절의를 나타내었고, 김정국은 도덕의 연원이 己卯諸賢의 推重한 바가 되었으며, 기준은 己卯名人의 하나로서 도학정치를 추구하였고, 정지운은 김정국의 문인으로 학문에 전념하여 그 업적이 뛰어났으며, 홍이상은 민순의 문인으로 講道에 공이 있고, 이신과의 이유겸은 광해군이 인목 대비를 폐하려 함에 大義로써 간하여 孝悌를 바로 세웠다. 이렇듯 문봉서원에 제향된 8賢들은 학문적 업적과 절의가 뛰어난 인물들이었다.

고양 8賢들의 정치적 성격을 보면, 남효온·김정국·기준·정지운 등은 봉당이 발생되기 이전의 인물들이었으며, 민순·홍이상·이신과의·이유겸 등도 당쟁에 휘말리지 않고 학문에 매진한 인물들이어서 특정 봉당의 정치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서원의 건립과 사액 및 제향과 관련된 대부분의 장소가 고양 유생들을 중심으로 陳疏되고 있고, 중앙에서 정치활동을 하여 黨色이 드러나는 인물의 경우에도 노론과 남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함께 등장한다. 즉 남인인 유하익이 사액을 요청하였고, 노론인 김석주는 「高陽多士通太學文」을 작성, 이진명은 사액을 요청, 홍계적은 이신과의·이유겸의 추향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당시 대부분의 서원 건립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반면에, 문봉서원은 고양의 유생들이 주체가 되어 先賢奉祀와 講學을 주목적으로 건립된 형태였다고 할 수가 있겠다.²⁰⁾

요컨대, 문봉서원은 숙종 7년부터 그 건립이 추진되어, 숙종 14년에 건립되었다. 건립 당시의 제향은 민순·남효온·김정국·기준 등 4賢을 享하고, 정지운·홍이상 등 2賢을 配享하였다. 이 때에는 아직 사액이 내려지지 않아 계속되는 사액 요청으로 숙종 35년에 '文峯'이라고 사액이 내려진다. 그리고 숙종 45년에 이신과의·이유겸의 추향을 요구하여 그 다음해에 이들의 位版이 봉안된다. 이로써 문봉서원은 고양의 8賢을 제향하는 고양시 최초의 서원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된다.

3. 高陽八賢의 生涯

문봉서원의 제향인물은 杏村 閔純, 秋江 南孝溫, 思齋 金正國, 服齋 奇遵, 秋巒 鄭之雲, 慕堂 洪履祥, 石灘 李愼儀, 晚晦 李有謙 등 모두 여덟 분이다. 이들 중 정지운은 己浦, 홍이상은 歸耳洞 出身으로서, 전대 대대로 고양에 생활 터전이었던 분들이다. 그리고 이신과의는 20대에, 남효온과 김정국은 30대에 고양의 산천과 민심을 좇아 옮겨 오신 분들이다. 한편, 서원에 제향된 인물은 그 지역과 연관된 인물이 선정

19) 윤경로, 「文峯書院의 創建과 發展」, 『文峯書院과 高陽八賢』, 高陽文化院, 1991, p. 27 참조.

20) 홍이상과 이유겸이 서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문봉서원의 건립과 사액, 추향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모두 노론의 집권기임을 감안할 때, 굳이 문봉서원의 黨色을 분류하자면 남인이나 소론보다는 노론측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된다는 성격으로 보았을 때, 이유겸 또한 고양 출신이거나 이곳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중에서 남효운의 묘소는 읍의 남쪽 20地號에 있고, 김정국은 읍의 서쪽 십리 芒洞에서 思休亭을 짓고 살았으며, 기준은 읍의 동쪽 10리 강변에서, 민순은 읍의 남쪽 5리 살구나무 마을에서 살았다고 전해진다.²¹⁾ 그리고 현재 민순의 묘소는 고양시 현천동에 있고, 정지운의 묘소는 일산동에, 홍이상의 묘소는 성석동에, 그리고 이신의의 묘소는 도내동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의 학적 연원을 살펴보면 이들 모두는 당시 士林의 주요 인물들과 사제나 교유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16세기 金宗直→金宏弼→趙光祖로 이어지는 사림의 사상적 계통에서 남효운은 김종직, 김정국은 김굉필, 기준은 조광조의 문인이었다. 그리고 정지운은 金安國·正國 형제, 민순은 徐敬德의 문인이었다. 한편 세대가 이들보다 훨씬 뒤지는 홍이상은 민순, 이신의는 서경덕의 문인인 민순·許曄, 그리고 이유겸은 趙守倫의 문인이었다. 이러한 학문적 연원을 통해 볼 때, 八賢의 스승들은 모두 당대의 儒賢으로서 여러 儒人들에게 추앙받던 인물들임을 알 수가 있다.²²⁾

그러면 이러한 사상적 계통을 바탕으로 八賢들의 생애와 정치·사상적 성향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순은²³⁾ 중종 14년(1519)에 태어나 선조 24년(1591)에卒하였다. 本貫은 驪興, 字는 景初, 號는 杏村·翫靜이다. 將仕郎 鶴壽의 아들이다. 어려서는 申光漢의 문하에서, 장성한 뒤에는 徐敬德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서경덕에게서 爲己의 修養說을 배워 벼슬보다는 수양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가 선조 때 효행으로 孝陵 參奉으로 천거된 사실만으로도 그의 수양의 성격과 수준을 가늠할 만 하다고 하겠다. 이에 곧 학행이 널리 알려져 典牲署 主簿로 승진되고, 이어 공조·형조의 좌랑을 거쳐 兪山縣監으로 나갔다가 곧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고양으로 돌아와 학문에 전심하였다. 선조 8년(1575) 사헌부 지평으로 다시 조정에 들었으나, 마침 仁順王后의 상을 당하여 禮官들이 단순히 國朝五禮儀에 의거하여 烏紗帽·黑角帶로 상복을 정하자, 그는 송나라 효종의 白帽 3年の 古制로 고쳐 준용할 것을 건의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물의를 빚어 그 해 6월에 다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초야에 묻혔다. 이러한 그의 학덕으로 崔永慶은 그를 재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인물로 보았고, 栗谷 李耳 또한 그의 退官을 매우 아쉬워했다. 그 뒤 龍岡縣令·淸風郡守를 지내고 사헌부 장령을 거쳐 遂安郡守에 이르렀으나, 모두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어 사직하곤 하였다. 그 뒤로는 延安·成川府使, 공조 정랑 등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퇴하고 향리에서 후진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대표적인 학자는 洪可臣, 韓百謙, 洪履祥 등이 있다. 문봉서원 외에 開城의 花谷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杏村集』이 있다.

21) 『豐洪世乘』, 卷 2, 高陽多士通太學文.

22) 윤사순, 「조선조 선비와 文峯書院 八賢」, 『文峯書院과 高陽 八賢』, 고양문화원, 1991, p. 40 참조.

23) 김성규, 「杏村 閔純의 山林學者的 性格」, 『文峯書院과 高陽 八賢』, 고양문화원, 1991 참조.

남효온은²⁴⁾ 단종 2년(1454)에 태어나 성종 23년(1492)에卒하였다. 本貫은 宜寧, 字는 伯恭, 號는 秋江·杏雨·最樂堂·碧沙이다. 영의정 在의 5대손이고, 생원 의 아들이다. 그는 기질이 활달하고 술과 거문고를 좋아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찍이 小學의 교육에 남보다 뛰어난 김종직에게 金宏弼, 鄭汝昌 등과 함께 수학한 관계로 소학의 철저한 실천에 참여하였다. 성종 9년(1478) 성종이 雨土의 재난으로 群臣들의 직언을 구하자, 25세의 나이로 장문의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은 첫째, 남녀의 혼인을 때에 치르도록 할 것, 둘째, 지방 수령을 신중히 선택·임명하여 민폐의 제거에 힘쓸 것, 셋째, 국가의 인재 등용을 신중히 하고, 山林의 遺逸도 등용할 것, 넷째 궁중의 謀利機關인 內需司를 혁파할 것, 다섯째, 불교와 무당을 배척하여 사회를 정화할 것, 여섯째, 학교 교육을 진작할 것, 일곱째, 왕이 몸소 孝悌에 돈독하고 節儉하여 풍속을 바로잡을 것, 여덟째 문종의 비 顯德王后의 능인 昭陵을 복위할 것 등이었다. 소릉 복위는 세조 즉위 사실 자체와 그로 인하여 배출된 공신의 명분을 직접 부정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모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훈구파의 심한 반발을 사서 도승지 任士洪, 영의정 鄭昌孫 등은 국문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정부 當路者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그를 미친 선비로 지목하였다. 일찍이 벼슬에는 관심이 없던 그는 성종 9년(1480)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마지 못하여 생원시에 응시, 합격하였으나 그 뒤 다시는 과거에 나가지 않았다. 金時習이 세상의 도의를 위해 계획을 세우도록 권하였으나, 소릉이 복위된 뒤에 과거를 보러 나갈 것임을 말하였다. 소릉 복위 주장은 세조를 옹립한 靖難功臣들이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았고, 다른 명목으로 박해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벼슬을 단념하고 세상을 즐겨보면서 가끔 바른말과 과격한 의론으로써 당시의 忌諱에 저촉되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 때로는 毋岳에 올라가 통곡하기도 하고, 南浦에서 낚시질을 하기도 하며 辛永禧·洪裕孫 등과 竹林居士로 맺어 술과 시로써 마음 속의 울분을 달래었다. 산수를 좋아하여 국내의 명승지에 그의 발자취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편으로 “해와 달은 머리 위에 환하게 비치고, 귀신은 내 옆에 내려다본다”는 敬心齋銘을 지어 스스로 깨우치기도 하였다. 그는 일찍이 세조의 찬탈에 저항한 死六臣을 흠모하여 당시 기휘에 속하였던 朴彭年·成三問·河緯地·李壇·柳誠源·兪應孚 등 6인이 단종을 위하여 死節한 사실을 『六臣傳』이라는 이름으로 저술하였다. 그의 문인들이 장차 큰 화를 당할까 두려워 말렸지만 죽는 것이 두려워 충신의 명성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하여 『六臣傳』을 세상에 퍼낸 것이다. 죽은 뒤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문인으로 高談詭說로써 시국을 비방하였다고 그 아들을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이듬해에는 尹弼商 등이 김종직을 미워한 나머지 그 문인이라는 이유로 미워하여 시문을 인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504년 갑자사화 때에는 소릉복위를 상소한 것

24) 정후수, 「秋江 南孝溫의 生涯와 思想」, 『文峯書院과 高陽八賢』, 고양문화원, 1991 참조.

을 亂臣의 예로 규정하여 剖棺斬屍를 당하였다. 중종 6년(1511) 參贊官 李世仁의 건의에 의하여 成侃·俞孝仁·김시습 등의 문집과 함께 비로소 간행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중종 8년(1513) 소릉이 복위되면서 그도 伸寃되어 좌승지로 추증되었고, 정조 6년(1782) 다시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세상에서는 그의 이러한 업적으로 인해서 元昊·李孟專·金時習·趙旅·成聃壽 등과 함께 生六臣으로 불렸다. 문봉서원의 외에 長興의 洸陽書院, 咸陽의 西山書院, 寧越의 彰節祠, 宜寧의 鄉祠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秋江集』, 『秋江冷話』, 『師友名行錄』, 『鬼神論』 등이 있다. 諡號는 文貞이다.

김정국은²⁵⁾ 성종 16년(1485)에 태어나 중종 36년(1541)에卒하였다. 本貫은 義城, 字는 國弼, 號는 思齋이다. 아버지는 禮賓寺參奉 璉이며, 어머니는 陽川 許氏로 軍守 芝의 딸이며, 형은 安國이다. 10세와 20세에 부모를 다 여의고, 이모부인 趙有享에게서 양육되었다. 중종 4년(1509)에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중종 9년(1514)에 賜暇讀書하였으며, 이조정랑·사간·승지 등을 역임하고, 중종 13년(1518)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다. 다음해 비록 己卯名人的 중추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그들과 연루되어 己卯士禍로 삭탈관직되어 高陽 茫洞에 내려가 八餘居士라 칭하고, 학문을 닦으며 저술과 후진양성에 전심, 많은 선비들이 문하에 모여들었다. 황해도 관찰사를 지내면서 「警民編」을 간포하고 「學畧」 24조를 지었으며, 그후 「村家救急方」을 편찬하여, 백성의 교육과 의료에 관심을 기울였다. 중종 32년(1537)에 복직, 다음해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 수십조에 달하는 便民去弊의 정책을 건의, 국정에 반영하게 하였으며, 그 뒤 병조참의·공조참의를 역임하고,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중종 35년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였다가 뒤에 예조·병조·형조의 참관을 지냈다. 성리학과 역사·의학 등에 밝았다. 문인으로는 鄭之雲 등이 있다. 이렇듯 그는 기묘사화 때 절의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로서 爲民政策에 힘 쏟아 사림으로서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문봉서원 외에 長湍의 臨江書院, 龍岡의 鰲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思齋集』을 비롯하여, 『性理大全節要』·『歷代授受承統立圖』·『村家救急方』·『己卯黨籍』·『思齋言』·『警民篇』 등이 있다. 諡號는 文穆이다.

기준은²⁶⁾ 성종 23년(1492)에 태어나 중종 16년(1521)에卒하였다. 本貫은 幸州, 字는 子敬, 號는 服齋·陽德이다. 應教 弘의 아들이다. 趙光祖의 문인이다. 중종 8년(1513)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史官을 거쳐 홍문관 정자로 抄啓文臣이 되었으며, 박사를 역임한 뒤 賜暇讀書 하였다. 스승 조광조의 노선을 건지하였으며, 司經으로 있을 때에는 임금에게 孝悌의 도리를 다할 것을 건의하였다. 중종 11년(1516) 著作으로 天文肄習官을 겸하였으며, 檢討官·修撰·檢詳·掌令·侍講官 등을 두루 역임하였고, 李誠彦이 임금을 속이고 부정을 저질렀다 하여 이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는 한편, 당

25) 유권중, 「思齋 金正國의 生涯와 思想」, 『文峯書院과 高陽八賢』, 고양문화원, 1991 참조.

26) 김기현, 「服齋 奇達의 道學思想」, 『文峯書院과 高陽八賢』, 고양문화원, 1991 참조.

시 臺閣이 이를 묵인하였음을 논박하여 動舊派인 南袞, 沈貞 등으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되었다. 1519년 응교가 되어 마침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스승인 조광조를 위시하여 金湜·金淨 등과 함께 하옥되고, 이어 아산으로 定配되었다가 이듬해 죄가 가중되어 다시 온성으로 移配되었다.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고향에 돌아갔다가 중종 16년(1521) 宋祀連의 무고로 辛巳誣獄이 터져 다시 유배지에 가서 교살되었다. 그가 己卯名人的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그가 당시 士禍의 핵심인물로서 도학정치 추구에 헌신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에도 능하여 『해동시선』·『大東韻府群玉』 등에 시가 수록되어 있다. 문봉서원 외에 穩城의 忠谷書院, 鍾城의 鍾山書院, 牙山의 牙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服齋集』·『戊寅紀聞』·『德陽日記』 등이 있다. 己卯名賢의 한 사람으로 인종 1년(1545) 신원되어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諡號는 文愍이다.

정지운은²⁷⁾ 중종 4년(1509)에 태어나 명종 16년(1561)에卒하였다. 本貫은 慶州, 字는 靜而, 號는 秋蠻이다. 寅弼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였으며, 金正國·安國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나중에 李湜에게 『심경』·『역학계몽』 등을 배웠다. 20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23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지극한 효심으로 예를 다하였으며, 스승 金正국이 죽은 뒤 心喪 3년을 지냈다. 집이 너무 가난하여 끼니를 걸러도 개의치 않았으며, 마음이 바르고 악을 매우 미워하는 성격이었다. 일찍이 벼슬에 천거하는 이가 있었어도 나가지 않고 사양하였으며, 일생을 修養과 求道에만 힘썼다. 그는 당시 호남의 대표적 학자인 金麟厚 등과 교류하면서 「天命圖」와 그 해설서인 「天命圖說」을 지어 造化의 理를 구명하고, 그 뒤 명종 8년(1553) 이황의 의견을 따라 몇 차례의 수정과 개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지었던 것을 「天命舊圖」라 하고, 뒤에 정정한 것을 「天命新圖」라 하여 현재까지 전하여져 온다. 우리나라에서 「천명도설」을 시도한 것은 그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權近의 『入學圖說』과 같은 圖象學이 있기는 하였으나, 「천명도설」은 그의 독창이라 할 수 있다. 당시 金麟厚가 지은 「천명도」가 있다 하여 그 선후를 논하기도 하나, 정지운의 「천명도설」의 舊圖는 그의 독창이자 최초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것이 뒤에 四七論爭의 발단이 되었다. 명종 16년(1561) 제자인 풍덕군수 安鴻의 주선으로 天磨山에 유람갔다가 병이 들어 돌아오는 도중에 昇天府의 江口에서 죽었다. 대표적인 제자로는 鄭之霖·鄭軾·金殷輝 등이 있고, 저서로는 인조 18년(164.0)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天命圖說』이 있다. 선조대에 이조판서로 追贈되었고, 諡號는 貞肅이다.

홍이상은²⁸⁾ 명종 4년(1549)에 태어나서 광해군 7년(1615)에卒하였다. 本貫은 豐山, 初名은 麟祥, 字는 君瑞·元禮, 號는 慕堂이다. 副司直 脩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겨우 4세부터 글자를 알아

27) 정대환, 「추만 정지운의 생애와 사상」, 『文峯書院과 高陽八賢』, 고양문화원, 1991 참조.

28) 임민혁, 「慕堂 洪履祥의 生涯와 經世觀」, 『文峯書院과 高陽八賢』, 고양문화원, 1991 참조.

史略을 읽기 시작하였고, 7세 때에 이미 경전과 역사에 통달했다고 하며, 15세가 되어 여러 차례 성균관에서 장원을 하였다. 그러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민순의 문하에서 義理를 공부하여 홀로 妙悟한 경지를 터득하니, 스승인 민순 또한 본인이 미처 따라갈 수 없다고 칭송하였다. 선조 6년(1573) 사마시를 거쳐 선조 10년(1579) 식년문과에 갑과로 장원급제하였다. 그 뒤 예조와 호조의 좌랑을 거쳐, 정언·수찬·지제교·병조정랑 등을 두루 지낸 뒤 賜暇讀書 하였다. 선조 18년(1585) 선조가三公에게 명령하여 堂下의 문관 중에서 學行과 德望이 있는 자를 뽑아서 각기 아는 대로 천거하라 하니 정승 鄭惟吉이 그를 으뜸이라 천거하여 鴻文館 교리가 되었다. 하루는 經筵에서 鄭汝立이 李珣를 비방하였는데 그가 出班奏하여 정여립이 일찍이 이이를 스승으로 섬기었는데 마침내 배반하여 오만불손하니 이러한 무리는 마땅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선조는 그의 말이 옳다 여겨 정여립은 邢愆라 이름만 하다고 하고하였다. 뒤이어 이조정랑을 거쳐 湖堂에 있을 때, 왕이 儒臣들을 선발하여 經書를 校正할 때는 꼭 참석시켰다. 그 뒤 집의·응교를 역임하고, 太僕寺正이 되었다가 사간과 사인 등을 거쳐 黃海道 按撫使가 되었다. 선조 24년(1591) 직제학을 거쳐 동부승지가 되고, 다시 이조참의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예조참의로 옮겨 왕을 扈駕하여 西行하였고, 곧 부제학이 되었다가 성천에 도착하여 병조참의에 전임하였다. 1593년 정주에서 대사간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다시 좌승지가 되었다가 곧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다음 경상도가 관리하기에 너무 크다고 판단, 左·右道로 분리하여 관장케 하였다. 또한 전란 중에 비변사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일본의 장군 고니시(小西行長)와 가토(加藤清正) 사이의 이간을 계획, 추진하기도 하였다. 1596년 형조참관을 거쳐 경기감사,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으나, 선조 35년(1602) 영남의 文景虎 등이 올린 成渾을 배척하는 상소를 반박하고 성혼을 두둔하다가 안동부사로 좌천되었다. 안동부사로 재직하면서도는 청렴하고 자상하게 정사를 베풀며 지성으로 撫恤하여 민심의 사모함이 지극하였다고 한다. 이어 선조 37년(1604) 호조참관을 거쳐 대사성 등에 제수되고, 선조 40년(1607) 청주목사로 출수하였다. 광해군 1년(1609) 대사헌, 대사성이 되었다가, 4년(1612) 사간원 대사간이 되는 등 三司를 고루 역임하였다. 그러나 당시 집권하였던 북인 李爾瞻·鄭仁弘 일파가 날로 정사를 그르치자 외직을 청하여 開城留守로 나아갔다. 조정에 하직하던 날 광해군이引見하니, 洪範의 建極의 학설로써 봉당의 화를 진언하였다. 이후 광해군 7년(1615)에 병으로卒하였다. 문봉서원 외에 忠州의 荷江書院에 제향되어 있다. 저서로 『慕堂遺稿』가 있고, 諡號는 文敬이다.

이신익은²⁹⁾ 명종 6년(1551)에 태어나 인조 5년(1627)에卒하였다. 本貫은 全義, 字는 景則, 號는 石灘이다. 刑曹判書 元孫의 아들이다. 閔純의 문인이며, 洪履祥, 金長生과도 친교가 있었다. 일찍이 아버지

29) 임민혁, 『石灘 李愼儀의 生涯와 思想』, 『文峯書院과 高陽八賢』, 고양문화원, 1991 참조.

를 여의고 형으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선조 15년(1582) 학행으로 천거되어 禮賓寺奉事가 되었고, 이어 參事·宗廟耨奉事 등을 지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군 300명을 거느리고 적과 싸워 공을 세우고 사옹원 직장에 올랐으며, 이어 사재감주부·공조좌랑·고부군수 등을 지냈다. 선조 29년(1596) 李夢鶴의 亂 때에는 직산현감으로 천안군수 鄭好仁과 함께 8,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兵使에게 달려갔다. 선조 37년(1604) 괴산군수를 거쳐 광주목사·남원부사·홍주목사·해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9년(1617) 광해군의 폭정으로 永昌大君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하려는 데 대하여 李恒福·鄭弘翼·金德 등이 극간하여 유배되자 그도 분연히 항소를 올렸다가 이듬해 회령으로 유배, 위리안치 되었다. 그해 가을 北虜의 警報가 있어 변경일대가 불안하여지자 홍양으로 유배지를 옮겼다. 인조 1년(1623) 인조반정으로 풀려나와 형조참의·광주목사를 역임하고, 1626년 판결사를 거쳐 이듬해 형조참판에 올랐다. 이해 정묘호란으로 왕을 호종하여 강화로 가던 도중 발병하여 인천에 체류하다가 수원 마정리에서 죽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문봉서원 외에 槐山의 花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石灘集』이 있다. 諡號는 文貞이다.

이유겸은³⁰⁾ 선조 19년(1586)에 태어나 현종 4년(1663)에卒하였다. 本貫은 牛峯, 字는 受益, 號는 晚悔이다. 참관 承健의 玄孫이며, 관찰사 信의 손자이다. 어려서 곤궁한 가정 형편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처음에는 서리에게서 글을 익혔다. 이후 소년기에 들어서야 趙守倫의 문하에 들어가 본격적인 학업을 닦았고, 成渾과 金長生에게서도 수학하였다. 재능이 많고 성격은 강직하며, 우애가 깊었다. 광해군 4년(1612) 조수륜이 金直哉의 誣獄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여 버려졌을 때 아무도 모른 채 하는데 그가 시체를 거두어 禮로써 장사지내어 제자의 義理를 실천에 옮겼다. 그리고 仁穆大妃를 폐비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不義임을 극론하는 抗訴를 올려 유배를 당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뒤 광해군 때에 직언으로 被罪된 사실이 인정되어 6품직인 遺逸로서 新寧縣監을 제수받았다. 신령현감 재임시 모략을 반자 백성들이 자진해서 布를 상납하여 죄를 풀고자 할 정도로 정사를 잘 처리하였다. 그 뒤 공조좌랑·함흥판관 등을 지냈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당시에는 의병을 일으켰으나, 남한산성에 도착하기 전에 함락되고 말았다. 이후 형조좌랑과 순창군수를 역임하고 네 번 太僕寺에 들어가 判官이 되었다. 다시 僉正이 되고, 뒤이어 大邱府使에 취임하였다. 대구는 워낙 사무가 많은 고을이었는데, 한가할 때마다 고을의 자제들을 이끌고 家禮心經을 강독하거나 鄉飲酒儀를 행하면서 耆老宴을 베풀기도 하였다. 直指使가 그의 治行을 제일이라고 올리니, 특별히 通政으로 品階가 올랐다. 아울러 入侍하여 判決사가 되었고, 이후 외직으로 나가 錦城縣監과 金堤郡守, 星州牧使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후 공조와 호조참의

30) 임종욱, 『晚悔 李有謙의 生涯와 思想』, 『文峯書院과 高陽八賢』, 고양문화원, 1991 참조.

를 역임하였고, 은퇴하여서는 耆英會를 조직하여 유연히 洛社의 勝景에서 自適하였다. 문봉서원에 제향되어 있다.

이상에서 문봉서원에 제향된 팔현의 고양과의 관계, 학적연원, 그리고 그들의 정치·사상적 경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 모두가 학문적으로는 조선 성리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고, 정치적으로는 爲民과 義理의 실천에 앞장서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던 대학자이자 관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4. 맺는말

문봉서원은 秋江 南孝溫, 思齋 金正國, 服齋 奇遵, 秋巒 鄭之雲, 杏村 閔純, 慕堂 洪履祥, 石灘 李愼儀, 晚晦 李有謙 등 소위 高陽 八賢이라는 先賢을 봉사함으로써 향촌 士子들의 교화를 주목적으로 건립된 고양시 최초의 서원이다. 그 건립의 추진은 숙종 7년부터 시작되어 숙종 14년에 건립, 민순·남효온·김정국·기준 등 4賢을 享하고, 정지운과 홍이상을 配享하였다. 이 때 아직 賜額이 내려지지 않아 이후 사액을 계속 요청하여 숙종 35년에 '文峯'이라 사액이 내려진다. 그리고 숙종 45년 이신외와 이유겸의 追享을 요구하여 그 다음해에 이들의 位版을 봉안하게 된다.

이들 8賢 중 정지운은 己浦, 홍이상은 歸耳洞 出身으로서, 선대 대대로 고양에 생활 터전이었던 분들이다. 그리고 이신외는 20대에, 남효온과 김정국은 30대에 고양의 산천과 민심을 좇아 옮겨 오신 분들이다. 한편, 서원의 제향은 그 지역과 연관된 인물로서 한다는 성격으로 보았을 때, 이유겸 또한 고양 출신이거나 이곳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들은 그 학적 연원을 따져 볼 때, 모두 당시 사림의 주요 인물들과 사제나 교유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남효온은 金宗直, 김정국은 金玄弼, 기준은 趙光祖의 문인으로서 당시 사림들의 정통을 잇고 있다. 이 중에서 김정국은 그의 문하에 정지운을 두었고, 徐敬德의 문인인 민순은 그의 문하에 홍이상과 이신외를 두었다. 그리고 이유겸은 趙守倫의 문인이었다.

한편, 문봉서원이 건립되고 사액이 이루어지는 숙종대는 봉당정치가 과열되어 중앙 정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서원의 건립과 사액이 좌우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문봉서원은 제향 인물들이 모두 학적 연원이 뚜렷하고 절의를 갖추고 있는 有德者인데다가, 고양의 유생들이 건립의 주체로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봉서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서원이라기 보다는 先賢奉祀와 講學을 위한 형태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봉서원은 현재 유실되어 터만 남아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서원 院規 등과 같은 古文書類가 남아 있지 않아 그 교육적 기능이라든지 향촌사회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자세히 알기가 어렵다. 더욱이 祠宇의 형태에서 서원으로의 발전을 이루게 되어 창건되었는지, 아니면 건립 당시부터 서원으로 건립된 것인지도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를 발굴, 분석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고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文峯書院 祭享 笏記

○ 陳設有司帥陳設執事入奠祝板於神位之右

- 진설유사는 진설집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을 신위의 오른쪽 축상 위에 놓고,

○ 陳幣於所

- 폐비는 준소에 진설하며,

○ 設香爐香盒并燭於神位前

- 향로와 향합과 함께 초를 신위 앞에 진설하고,

○ 次設祭器如式

- 다음은 제기를 격식대로 진설한다.

○ 陳設有司帥陳設執事出

- 진설유사는 진설집사를 거느리고 나간다.

○ 謁者引獻官詣神位前 點親陳設訖還出

-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와서 진설을 점검한 뒤 되돌아 나간다.

○ 獻官及諸執事各服其服

- 헌관과 여러 집사가 각기 정해진 제복을 갖추어 입는다.

○ 執禮及謁者先就階間拜位 北向西上 再拜訖 手就位

- 집례와 알자는 먼저 배위로 나아가 서쪽을 상위로 하여 복을 바라보고 재배하고 마치면 손을 씻은 다음 각기 위치로 나아가간다.

◎ 唱笏(홀기를 부르시오)

○ 贊人引大祝及諸執事入就階間拜位 北向西上位

- 찬인은 대축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가 서쪽을 상위로 북향하여 서시오.

○ 再拜 大祝以下皆再拜

- 재배하시오. 대축 이하 모두 재배하시오.

「鞠躬拜興拜興平身」

- 국궁 재배하고 일어나시오.

○ 大祝及諸執事詣 洗位 手 各就位

- 대축과 여러 집사는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각기 위치로 나아가시오.

- 司尊詣爵洗位 洗爵拭爵訖 置於 捧詣 所
 - 사준은 작세위에 나아가 작을 씻고 작을 닦아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 받들어 준소에 놓으시오.
- 謁者引獻官入就位
 -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위치에 나아가시오.
- 謁者請行事「謁者進初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
 - 알자는 행사하기를 청하시오.
- 再拜 獻官以下參祀者皆再拜「一般鞠躬」
 - 재배하시오. 헌관 이하 참사자 전원은 재배하시오.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
 - 국궁 재배하고 일어나시오.

◎ 行奠幣禮(전폐례를 행하시오)

- 謁者引初獻官詣 洗位 北向入 手 洗手
 -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손을 씻고 손을 닦으시오.
- 引詣禮賓正杏村岡先生神位前 北向入
 - 행촌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大祝及奉香奉爐升
 - 대축과 봉향 봉로는 오르시오.
- 奉香捧香盒 奉爐捧香爐 進
 -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봉로는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시오.
(봉향은 헌관의 오른쪽, 봉로는 헌관의 왼쪽에 앉는다)
- 三上香
 - 향을 세 번 사르시오.
- 奉爐奠爐于神位前
 - 봉로는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리시오.
- 大祝以幣 授初獻官
 - 대축은 폐비를 가져다 초헌관에게 주시오.
(초헌관의 오른쪽에 앉아 폐비를 드린다)
-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하고 대축에게 주시오.

(대축은 초헌관의 왼쪽에 앉아 폐비를 받는다)

○ 大祝奠于神位前

-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에 드리시오.

○ 初獻官俯伏興平身

-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貞公秋江南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추강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香捧香盒 奉爐捧香爐 進~ 初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穆公思齋金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사재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香捧香盒 奉爐捧香爐 進~ 初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愍公服齋奇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복재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香捧香盒 奉爐捧香爐 進~ 初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貞肅公秋巒鄭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추만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香捧香盒 奉爐捧香爐 進~ 初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敬公慕堂洪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모당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香捧香盒 奉爐捧香爐 進~ 初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貞公石灘李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석탄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香捧香盒 奉爐捧香爐 進~ 初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戶曹參議晚晦李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만회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香捧香盒 奉爐捧香爐 進~ 初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謁者引初獻官以下降復位

- 알자는 초헌관 이하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行初獻禮(초헌례를 행하시오)

- 謁者引初獻官詣所 西向入
-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해 서시오.
- 奉爵奠爵升
- 봉작과 전작은 올라 준소로 나아가시오.
- 司尊舉酌酒
- 사준은 먹을 들고 술을 떠내시오.
- 奉爵以爵授酒
- 봉작은 작을 가지고 술을 받으시오.
- 謁者引初獻官詣杏村先生神位前 北向立
-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로 행촌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서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奉爵以爵授初獻官
- 봉작은 작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초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드리시오.
- 初獻官俯伏興平身
-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貞公秋江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추강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初獻官~初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穆公思齋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사재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初獻官~初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愨公服齋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복재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初獻官~初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貞肅公秋樹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추만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初獻官~初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敬公慕堂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모당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初獻官~初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貞公石灘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석단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初獻官~初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戶曹參議晚晦李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만회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奉爵以爵授初獻官

- 봉작은 작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초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드리시오.

- 初獻官俯伏興當中少退 北向

-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가운데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 大祝升

- 대축은 오르시오.

- 大祝詣獻官之左東向 讀祝文

- 대축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동향해 무릎 꿇고 앉아 축문을 읽으시오.

- 讀祝畢 初獻官俯伏興平身

- 축문을 다 읽었으면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謁者引初獻官大祝降復位

- 알자는 초헌관과 대축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行亞獻禮(아헌례를 행하시오)

- 謁者引亞獻官詣 洗位 北向立 水洗水

- 아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손을 씻고 손을 닦으시오.
- 引詣 所 西向入
-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해 서시오.
- 司尊舉 酌酒
- 사준은 먹을 들고 술을 떠내시오.
- 奉爵以爵授酒
- 봉작은 작을 가지고 술을 받으시오.
- 謁者引亞獻官詣杏村先生神位前 北向立
- 아헌관은 알자의 인도로 행촌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서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奉爵以爵授亞獻官
- 봉작은 작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드리시오.
- 亞獻官俯伏興平身
- 아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貞公秋江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추강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亞獻官~亞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穆公思齋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사재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亞獻官~亞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愨公服齋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복재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亞獻官~亞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貞肅公秋巒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추만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亞獻官~亞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敬公墓堂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모당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亞獻官~亞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貞公石灘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석탄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亞獻官~亞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戶曹參議晚晦李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만회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奉爵以爵授亞獻官
 - 봉작은 작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드리시오.
- 亞獻官俯伏興當中少退 北向
 - 아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가운데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 大祝升
 - 대축은 오르시오.
- 大祝詣獻官之左東向 讀祝文
 - 대축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동향해 무릎 꿇고 앉아 축문을 읽으시오.
- 讀祝畢 亞獻官俯伏興平身
 - 축문을 다 읽었으면 아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謁者引亞獻官大祝降復位
 - 알자는 아헌관과 대축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行終獻禮(종헌례를 행하시오)

- 謁者引終獻官詣 洗位 北向立 水 洗水
 - 종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손을 씻고 손을 닦으시오.
- 引詣所 西向入

-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해 서시오.
- 司尊舉酌酒
- 시준은 맥을 들고 술을 떠내시오.
- 奉爵以爵授酒
- 봉작은 작을 가지고 술을 받으시오.
- 謁者引終獻官詣杏村先生神位前 北向立
- 종헌관은 알자의 인도로 행촌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서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終獻官
- 봉작은 작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종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드리시오.
- 終獻官俯伏興平身
- 종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貞公秋江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추강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終獻官~終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穆公思齋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사재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終獻官~終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愨公服齋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복재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終獻官~終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貞肅公秋巒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추만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終獻官~終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敬公慕堂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모당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終獻官~終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文貞公石灘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석탄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이하 奉爵以爵授終獻官~終獻官俯伏興平身까지는 위와 동일 - 필자 주
- 次詣戶曹參議晚晦李先生神位前 北向入
- 다음은 만회 선생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선 다음 꿇어 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終獻官
- 봉작은 작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종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드리시오.
- 終獻官俯伏興平身
- 종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謁者引終獻官以下降復位
- 알자는 종헌관 이하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行飲福禮(음복례를 행하시오)

-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 西向
-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에 꿇어 앉으시오.
- 奠爵詣 所以爵酌 福酒
- 전작은 준소로 나아가 산퇴에서 작에다 복주를 떠내시오.
- 大祝持俎進滅神位前 肉
- 대축은 조를 가지고 나아가 신위 앞의 조육을 덜어내시오.
- 奠爵進初獻官之左北向 以爵授初獻官
- 전작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아 작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 初獻官受爵飲卒爵
- 초헌관은 작을 받아 다 마시시오.
- 奠爵受虛爵復於

- 전작은 빈 작을 받아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 大祝北向以俎授初獻官

- 대축은 북향하여 조를 초헌관에게 주시오.

○ 初獻官受俎以授奠爵

- 초헌관은 조를 받아서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受俎降自東階出

- 전작은 조를 받아가지고 동계로 내려 가시오.

○ 初獻官俯伏興平身

-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

- 제 자리로 돌아가시오.

○ 再拜 獻官再拜

- 재배하시오. 헌관은 재배하시오.

「鞠躬 拜興 拜興 平身」

- 국궁 재배하고 일어나시오.

○ 徹邊豆

- 변과 두를 거두시오.

○ 大祝徹邊豆

- 대축은 변과 두를 거두시오.

○ 再拜 獻官以下參祀者皆再拜「一般鞠躬」

- 재배하시오. 헌관 이하 참사자 전원은 재배하시오.

「鞠躬 拜興 拜興 平身」

- 국궁 재배하고 일어나시오.

◎ 行望禮(망예례를 행하시오)

○ 謁者引初獻官詣望位 北向立

-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에 나아가 북향해 서시오.

○ 大祝以取祝板及幣降自西階置於坎

- 대축이 대마구니를 가지고 축판과 폐백을 취하여 서계로 내려와 구덩이에 넣으시오.

- 可 置上半坎
 - 흙을 반 구덩이쯤 묻으시오.
- 謁者引初獻官復位「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
 -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大祝復位
 - 대축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謁者引獻官出
 -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 贊引引大祝及諸執事俱復階間復位
 - 찬인은 대축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가 서쪽을 상위로 북향해 서시오.
- 再拜 大祝以下皆再拜
 - 재배하시오. 대축 이하 모두 재배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
 - 국궁 사배하고 일어나시오.
- 贊引引大祝及諸執事出
 - 찬인은 대축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나가시오.
- 執禮及謁者就階間拜位 再拜而出
 - 집례와 알자는 배위에 나아가 재배하고 나간다.
- 陳設有司帥陳設執事入徹禮饌閉扉以降乃退
 - 진설유사는 진설집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예찬을 거두고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난다.

文峯書院 祭享 祝文(여시)

維

檀君紀元 ○千○百○十○年 歲次 ○○ ○月 ○○ ○日 ○○ 某官 某敢昭告于

禮賓正杏村 閔先生

文貞公秋江 南先生

文穆公思齋 金先生

文愍公服齋 奇先生

貞肅公秋巒 鄭先生

文敬公墓堂 洪先生

文貞公石灘 李先生

戶曹參議晚晦 李先生

八賢神位 享祀于此 文峯書院 不幸毀撤
闕祀多年 地域儒林 罪責之感 今茲決意
奉祀實行 書院復元 茲今以後 誠實致祭
謹以牲幣醴齋 盛庶品 式陳明薦 休惟
尊靈 嘉尚此行 尤加蔭助 所願成就 是歆是饗

V. 지표 및 시굴조사

1. 조사내용

1) 조사 전 상황(사진 1~7, 도면 1~4)

조사대상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산 73-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는 현재 대동관 델기업이 임대한 개인 소유의 사유지로 농선을 삭토한 후 건축자재의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대략적으로 동서 10m, 남북 30m의 크기로 서쪽으로는 배수로가 있었다. 지표 상에는 건설용 시멘트의 폐자재가 깔려 있고 건축자재가 어지럽게 놓여져 있어 조사를 진행하기 곤란한 상태였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주 및 임대주와 협의를 하여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건축자재를 조사대상지역 바깥으로 모두 옮기고, 장비를 이용하여 시멘트 폐자재를 걷어낸 후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지표상으로 초석 1기의 상면이 노출되어 있었고 야적장에는 상면 형태가 원형인 초석 1기(사진 30, 도면 -16)와 기단열로 보이는 장방형의 석재가 원위치를 벗어나 뒤집혀져 있었다. 지표 상면에 노출되어 있는 초석을 중심으로 하여 4개의 시굴 트렌치를 설정·구획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시굴조사(사진 8~10, 31~32, 도면 5)

시굴조사는 장비를 이용하여 정지된 대지 내에 4개의 시굴 트렌치를 설정하였다. 초석의 상면이 노출된 곳을 중심으로 시굴 1 트렌치를 구획한 후 트렌치의 동쪽으로 1m의 간격을 두고 트렌치를 구획하여 시굴 2 트렌치로 명명하였고 남쪽으로 50cm의 간격으로 두고 트렌치를 구획하여 시굴 3 트렌치로 명명하였다. 또한 시굴 1 트렌치의 북벽과 50cm 떨어진 곳에 트렌치를 설정하여 시굴 4 트렌치로 명명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각각의 시굴 트렌치 별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굴 1 트렌치(사진 11~20, 도면 6~10)

시굴 1 트렌치는 동서 2m, 남북 10m의 크기로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에 노출되어 있던 초석의 하부까지 약 50cm~70cm정도를 제토하였다. 토층은 크게 부식토층 및 콘크리트층(15cm~25cm), 암회색 점토층(15cm~20cm), 암갈색 점토+모래층(15cm~40cm)으로 나누어진다.

트렌치의 남벽에 인접하여 초석(초석 ①)과 함께 기단열이 확인되었을 뿐 그 밖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표상에 상면이 노출되어 있던 초석의 주향은 북서 20°이다. 형태는 정방형이고 크기는 60cm×

60cm×45cm이며 적심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상면과 측면을 모두 편평하게 다듬어 면을 고르게 하였고 하면은 면을 다듬지 않고 둥글게 처리하였다.

초석의 남쪽으로 약 25cm 떨어져 기단열 3개가 확인되었다. 장방형 석재의 바깥 면을 정연하게 다듬고 안쪽 면은 둥글게 처리하고 안쪽 면이 바깥 면보다 작게 다듬었다. 석재의 크기는 90cm×32cm×25cm, 90cm×29cm×18cm이다.

이상과 같이 시굴-1 트렌치의 서벽으로 기단열이 이어지고, 시굴 2 트렌치와의 독 사이에서 기단열이 노출되어 트렌치를 남벽으로 30cm, 서벽으로 동서 150cm, 남북 270cm를 확장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남북방향으로는 배수로나 나 있어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였다.

트렌치 독에서 노출된 석재의 크기는 75cm×23cm으로 트렌치 내에서 확인된 석재의 크기보다 다소 작지만 바깥 면을 정연히 다듬은 점과 안쪽 면의 처리 방법 등은 트렌치 내에서 확인된 기단열과 동일하였다.

트렌치의 서벽 쪽으로 확장하여 초석 1기(초석 ②)와 기단열 2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2기의 초석이 상하로 포개어져 놓인 채로 노출되었다. 초석의 형태와 적심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1m×1m의 크기로 탐색피트를 구획하고 깊이 약 60cm 정도 제토를 하였다. 2개의 초석 모두 정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상부 초석의 크기는 50cm×50cm×20cm이고 하부 초석의 크기는 50cm×50cm×30cm이다. 상면과 측면뿐만 아니라 하면까지 다듬어 편평하게 마무리하였고 적심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또한 상부 초석과 하부 초석 사이에 점토층이 존재하지 않고 직접 맞닿아 있는 점, 약 10cm 정도 밀려나 있고 석재가 서로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초석 2기 모두가 원위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초석의 주향은 노출된 초석과 동일한 북서 20°이며 초석의 주간거리는 약 280cm이다.

트렌치의 서벽에 접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었던 석재의 크기는 확장 트렌치 조사결과 90cm×31cm×28cm로 확인이 되었고 서쪽으로 확장하여 노출된 석재 2개의 크기는 105cm×33cm×19cm, 75cm×29cm×27cm이다. 기단열은 전체적으로 6개가 1단만 확인이 되었고 초석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상태였다.

기단열을 동→서 방향으로 임의로 1번~6번으로 명명하여 각각의 현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굴 1 트렌치 기단열 현황(단위 cm, 아래숫자는 기단열 상면의 레벨값을 0으로 할 때)

	기단열 ①	기단열 ②	기단열 ③	기단열 ④	기단열 ⑤	기단열 ⑥
현황 (평균레벨값)	75×23 +2	90×32×25 +1	90×29×18 +1	90×31×28 0	105×33×19 -1	90×31×28 -2

출토유물은 크게 백자와 기와로 나누어진다. 백자는 서벽 약 5m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모두 편으로 출토되어 정확한 기형을 알 수는 없지만 모두 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와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 초석 ②의 서쪽 면에서 완형의 수키와 4점이 포개어진 상태로 출토되었고 기단열 ⑥의 바깥 면 제토 중에 완형의 수키와 1점이 출토되었다. 기와의 문양은 대체로 기하문과 파도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시굴 2 트렌치(사진 21~23, 도면 11~13)

시굴 2 트렌치는 동서 2m, 남북 4m의 크기로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하 50cm~60cm 정도 제토하였다. 토층은 크게 콘크리트층(25cm~30cm)과 암갈색 점토층(20cm~40cm)으로 나누어진다.

조사결과 초석은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트렌치의 서쪽면으로 시굴 1 트렌치 사이 벽의 기단열과 연결되는 석재열 1개가 확인되었고 트렌치의 중앙에서 회절부분의 정방형 석재 1개와 장방형 석재 2개가 직각으로 회절하여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시굴 1 트렌치의 남벽과 마찬가지로 기단열의 바깥 면이 모두 남벽에 접해 있어 정확한 석재의 형태와 길이를 파악할 수 없어 남벽을 30cm 확장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회절하는 부분의 석재는 40cm×40cm×45cm 크기의 정방형 석재로 확인되었다. 바깥 면을 직각으로 다듬고 안쪽 면은 사다리꼴의 형태로 다듬어 안쪽 면의 전체적인 기단열 회절양상은 직각이 아닌 원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동서방향의 기단열 1개는 탈락된 것으로 보이며 남아있는 석재의 크기는 87cm×30cm×20cm이다. 시굴 1 트렌치와의 벽 사이에서 노출된 기단열과는 약 60c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조사 전 평탄지 밖의 경사면에 기단열로 추정되었던 석재의 길이와 약 60cm 정도로 거의 일치하였으며 기단열이 탈락된 곳이 토층의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남북방향의 기단열 2개중 1개는 트렌치의 북벽에 접하여 전체적인 길이를 알 수 없었으나 다른 1개의 기단열 크기는 78cm×37cm×26cm이며 석재의 하부에 10cm 남짓의 활석재 2매를 기저부에 박아 놓고 축조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단열은 안쪽 면으로 조금 기울어진 상태였으나 대체로 열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굴 2 트렌치내 기단열의 레벨값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시굴 1 트렌치와의 레벨값의 차이는 약 30cm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양 트렌치의 기단열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중복 및 중창관계가 있어 본래의 건물지에서 축소 또는 확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굴 1 트렌치내 초석 ②의 현황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초석이 포개어 놓여져 있는 점도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기단열을 서→북 방향으로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여 각각의 현상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기단열④의 경우는 트렌치의 북벽에 접하여 전체형태를 파악할 수 없어 트렌치내에서 노출된 수

치만을 기록하였다.

트렌치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표 2〉 시굴 2 트렌치 기단열 현황(단위 cm, 아래숫자는 상면 레벨값을 0으로 할 때)

	기단열 ①	기단열 ②	기단열 ③	기단열 ④
현황 (평균레벨값)	87×30×20 +33	40×40×45 +34	78×37×26 +35	55×40×33 +36

(3) 시굴 3 트렌치(사진 24~27, 도면 14)

시굴 3 트렌치는 동서 1.5m, 남북 7m의 크기로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하 약 50cm~60cm 정도 제토하였다. 토층은 크게 콘크리트층(8cm~16cm), 암회색 점토층(20cm~50cm), 암갈색 점토+모래층(20cm~60cm)로 나누어진다.

트렌치의 북벽에 접하여 2.5m×1.5m의 범위로 토층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피트를 구획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암갈색 점토+모래층이 계속 이어질 뿐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의 기단열이 시굴 1 트렌치와 시굴 2 트렌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건물지의 외곽으로 보인다.

출토유물로는 소량의 기와편이 출토되었는데 파도문과 무문양의 평기와의 주를 이루고 있다.

(4) 시굴 4 트렌치(사진 28~30, 도면 15)

시굴 4 트렌치는 동서 3.5m, 남북 1m의 크기로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 1 트렌치의 북벽에서 50cm정도 떨어져서 남벽 쪽에서 노출된 기단열에 대응하는 기단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하 10cm~20cm 정도 제토하였다.

표토의 콘크리트층을 제거하자 바로 4개의 기단열이 확인되었다. 서벽에 접하여 석재 1개가 노출되었지만 건설자재를 옮기기 용이하지 못하여 전체의 형태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동→서 방향으로 임의로 번호를 정한 석재의 크기는 115cm×30cm, 88cm×20cm, 80cm×35cm이다. 이 중에서 기단열②의 석재 밑으로는 약 10cm~15cm 크기의 할석재 4개가 하부에 놓여져 있어 기단열을 하부에서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단열의 레벨값은 대체적으로 시굴 1 트렌치에서 나타난 기단열과 유사하였다. 기단열③과 기단열④의 석재는 안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기단열①의 동쪽으로 시굴 2 트렌치의 회절하는 부분의 정방형의 석재가 탈락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방향으로 전체적인 기단열의 길이를 대략 10m 정도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동서방향으로는 서쪽에 배수로나 있어 전체적인 길이를 추정할 수 없었지만 잔존길이는 대략 9m 정도이다.

트렌치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를 볼 때 조사대상 지역은 문봉서원지임이 분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북동 20도의 주향을 지닌 남·북 10m, 동·서 약 9m(추정) 규모의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 정도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성격은 출토된 유물중 백자가 모두 제기로 추정되는 점으로 보아 사당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제실, 강당등을 비롯한 기타 부속 건물은 주변의 지형이 모두 삭토되었고, 주택가로 변모한 점으로 보아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출토유물

1) 기와류

이번 문봉서원지의 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석2기와 기단열 등의 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굴 1 트렌치와 시굴 3 트렌치에서는 조선시대의 각종 기와류가 출토되었다. 이 장에서는 출토된 기와를 23점 선별하여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상술하기로 하겠다.

(1) 파도문 평기와(사진 1, 답본 1)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완형에 가까운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파도문과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대부분의 범위는 파도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하단의 약 8cm 범위에는 기하문이 표현되어 있다. 하단에서 약 4cm 범위는 무문으로 처리되어 있다. 와구는 무문으로 정면하였다. 상단에서 약 2cm의 범위는 무문으로 처리하였으며 약간 경사지게 표현되었다. 배면에는 포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범위에는 가로방향의 굵은 찰과흔이 나타난다. 양쪽 측면에 모두에서 와도흔이 확인된다. 양 측면 모두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3 정도 범위이며 아래로 내려올수록 와도흔의 범위가 넓어진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모래질이 약간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31.4cm, 폭 14.3cm, 두께 2.5cm)

(2) 파도문 평기와(사진 2, 답본 2)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완형에 가까운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파도문과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대부분의 범위에는 파도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하단의 약 6.5cm의 범위는 기하문이 표현되어 있다. 하단의 약 5cm 부분은 무문으로 처리되어 있다. 언강이 일부 남아 있으나 미구는 결실되어 있다. 배면에는 1cm²의 범위에 緯絲 10올 × 經絲 12올 크기의 포흔이 좌측 일부분에 확인된다. 대부분의 구간은 포흔이 확인되지 않고 굵어내린 흔적이 있다. 중앙에는 세로방향으로 길게 패인 자국이 굵게 나타난다. 하단에서 약 7cm 부분에는 지두흔이 넓게 나타나며 등면쪽으로 경사지게 처리하였다. 양쪽 측면 모두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4 정도의 와도흔이 나타나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와도흔의 범위가 넓어진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모래질이 약간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33.2cm, 폭 14.4cm, 두께 2.2cm)

(3) 파도문 평기와(사진 3, 답본 3)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완형에 가까운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파도문이 시문되어 있다. 상단에서

약 12cm를 경계로 하여 시문된 문양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시문구를 거꾸로 하여 시문한 것으로 보인다. 시문구의 길이는 약 10cm이며 폭은 약 6.5cm이다. 상단에서 약 2cm의 범위에는 문양을 가로로 쓸어내린 흔적이 있다. 하단에는 지두흔이 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손으로 누르면서 하단부분을 얇게 하여 약간 들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배면에는 포흔이 나타나지 않으며 상단에서 9cm에는 가로방향으로 태토를 덧댄 흔적이 있다. 상단에는 마포가 겹쳐진 흔적이 있으며 하단에는 가로방향으로 찰과흔이 있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2정도의 와도흔이 나타나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얇아져서 나타나지 않는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석립이 약간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30.3cm, 폭 14.3cm, 두께 2.6cm)

(4) 과도문 평기와(사진 4, 탑본 4)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과도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잔존부의 하단부의 일부에는 종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하는 편이 작아 정확한 시문구의 길이는 알 수 없지만 폭은 약 5cm이다. 잔존부의 우측에는 문양이 희미하다. 배면에는 1cm²의 범위에 緯絲 9올×經絲 9올 크기의 포흔이 나타난다. 상단에는 지두흔이 나타나고 있는데 손으로 분리한 이후 쓸어내리면서 정면한 것으로 보인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2 정도의 와도흔이 나타난다. 적갈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석립이 약간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13cm, 폭 13.4cm, 두께 2cm)

(5) 과도문 평기와(사진 5, 탑본 5)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과도문이 시문되어 있다. 시문은 총 4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등면에서 약 4cm의 범위에는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다. 배면에는 1cm²의 범위에 緯絲 9올×經絲 10올 크기의 포흔이 나타난다. 잔존부의 좌측에는 세로방향으로 연결끈의 흔적으로 나타난다. 하단에서 약 3.5cm의 범위에는 포흔이 나타나지 않는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4 정도의 와도흔이 있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석립이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16.8cm, 폭 11.6cm, 두께 2.2cm)

(6) 과도문 평기와(사진 6, 탑본 6)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과도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하는 편으로 보아 정확한 시문구의 길이는 알 수 없으나 폭은 약 6cm 정도이다. 상단에서 약 3cm의 구간에서는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것은 시문이 이루어진 후에 가로방향으로 쓸어내리면서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 상단에는

언강과 미구가 모두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언강의 길이는 약 1.5cm이고 등면과는 약 1.5cm가량 틈이 저 있다. 미구에는 정면한 흔적이 있다. 배면에는 1cm²의 범위에 緯絲 8올×經絲 8올 크기의 포흔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좌측 일부분의 범위에만 포흔이 확인되며 그 외 구간에는 포흔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상단의 약 5.5cm의 범위에는 언강을 만들기 위해 점도를 덧붙인 흔적이 있다. 이 곳은 배면의 다른 곳보다 약간 눌러 있으며 마포가 겹쳐진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3 정도의 와도흔이 측면 양쪽 모두에서 확인된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모래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16.3cm, 폭 14.2cm, 두께 2.3cm)

(7) 파도문 평기와(사진 7, 답본 7)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파도문이 시문되어 있다. 상단에서 약 8cm의 범위에는 종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와구쪽으로 갈수록 문양이 희미해져 나타나지 않는다. 파도문이 시문된 부분의 정확한 시문구의 폭이나 길이는 알 수 없다. 등면의 상단에는 자연유가 흘러내린 흔적이 확인된다. 배면에는 우측 하단부에만 포흔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대부분의 범위에는 포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상단에서 약 3cm의 범위는 두께가 얇아지면서 휘어져 내려가고 있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4 정도의 와도흔이 나타난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석립이 약간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16.9cm, 폭 11.3cm, 두께 2.2cm)

(8) 파도문 평기와(사진 8, 답본 8)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파도문이 시문되어 있다. 시문된 문양은 위쪽과 아래쪽이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위쪽은 파도문이 서로 겹쳐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래쪽은 서로 겹쳐진 형태가 기하문과 같이 마름모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잔존부의 우측에는 좌측에 비해 문양이 희미하게 나타나며 세로방향으로 약 1.3cm의 폭으로 쓸어내린 흔적이 나타난다. 하단에서 약 4cm의 범위에는 문양이 나타나지 않는다. 배면에는 포흔이 나타나지 않는다. 잔존부의 중앙에는 가로방향으로 지두흔이 남아 있으며 태토를 덧댄 흔적이 있다. 하단에서 약 6cm의 범위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쓸어내린 흔적이 있다. 미구의 두께는 약 1cm로 얇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4 정도의 와도흔이 나타나는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와도흔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고운 점토질이다. (길이 24.7cm, 폭 13.9cm, 두께 2.2cm)

(9) 파도문 평기와(사진 9, 답본 9)

시굴 3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파도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문양의 상태는 그리 양호하지 못하고 어지럽게 중복되어 있다. 하단에서 약 4cm의 구간은 가로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있어 문양이 남아 있지 않다. 잔존부의 우측에는 세로방향으로 길게 찰과흔이 5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와도를 이용하여 기와를 분리하기 위한 흔적으로 보인다. 배면에는 포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상단에서 약 3.5cm의 범위에는 점토를 덧대고 정면한 흔적이 있다. 좌측에는 세로방향으로 연결끈의 흔적이 나타난다. 등면에서 배면으로 두께의 약 1/8 정도의 와도흔이 있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석립이 약간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16.5cm, 폭 13.8cm, 두께 2.5cm)

(10) 기하문 평기와(사진 10, 답본 10)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완형에 가까운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부의 중앙에서 우측 하단으로는 문양이 지워져 있다. 시문구의 길이는 약 22cm이며 폭은 약 4.5cm이다. 상단에서 약 5.5cm 범위는 무문으로 처리되어 있다. 언강과 미구가 남아 있으며 언강의 길이와 높이 모두 약 1.5cm이다. 배면에는 포흔이 확인되지 않으며 가로방향의 지두흔이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다. 세로방향으로 굵은 찰과흔이 있으며 균대균대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하단에서 약 6.5cm의 범위에는 지두흔이 넓게 나타나며 등면쪽으로 휘어지게 처리하였다. 양쪽 측면 모두에서 와도흔이 나타나는데,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4~1/3 정도 크기의 와도흔이 있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석립이 약간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32.8cm, 폭 13.8cm, 두께 2.5cm)

(11) 기하문 평기와(사진 11, 답본 11)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하단에서 약 8cm의 범위에는 문양이 나타나지 않는다. 잔존부의 상단과 문양이 지워진 흔적이 있으며 중앙에는 세로방향으로 길게 문양을 지운 흔적이 있다. 배면에는 1cm²의 범위에 緯絲 11올×經絲 10올 크기의 포흔이 나타난다. 잔존부의 좌측에는 세로방향으로 길게 도구를 이용하여 정면한 흔적이 있다. 하단에서 약 5.5cm의 범위에는 곡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곳보다 두께가 얇게 처리되어 있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3 정도의 와도흔이 나타난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석립이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27.3cm, 폭 11.2cm, 두께 2.4cm)

(12) 기하문 평기와(사진 12, 답본 12)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한 시문구는 종선문, 횡선문, 사선문이 각 방향으로 나타난 형태이다. 정확한 시문구의 길이는 알 수 없으나 폭은 약 6cm이다. 잔존부의 좌측과 하단에는 문양이 희미하다. 배면에는 포흔이 거의 남이 있지 않으며 태토를 덧댄 흔적이 넓은 범위에서 나타난다. 양쪽 측면에서 모두 포흔이 나타나는데 모두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1/2 정도의 와도흔이 나타난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석립이 약간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16.3cm, 폭 14.8cm, 두께 2cm)

(13) 기하문 평기와(사진 13, 답본 13)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하단에서 약 5cm의 범위에는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문양은 희미하며 4회에 걸쳐 시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배면에는 1cm²의 범위에 緯絲 9울 × 經絲 9울 크기의 포흔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잔존부의 좌측에는 세로 방향으로 길게 연결결의 흔적이 나타난다. 곳곳에 점토가 모자라 덧댄 흔적이 있다. 하단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진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3 정도의 와도흔이 있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석립이 약간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15.1cm, 폭; 11.4cm, 두께; 2cm)

(14) 기하문 평기와(사진 14, 답본 14)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상단에서 약 10.5cm부분을 경계로 하여 문양이 달리 배치되어 있다. 상단에는 문양이 상대적으로 희미하며 종선문이 확인되며 그 아래로는 호형태의 사선문이 확인된다. 잔존부의 좌측에는 문양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잔존하는 편이 작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단에 약간 보이는 횡선문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횡선문과 사선문이 주문양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면에는 희미하게 포흔이 확인되나 정확한 울의 개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상단에서 약 5cm 정도의 범위는 이 부분은 급격하게 두께가 얇아지고 있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4 정도의 와도흔이 있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모래가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길이 13.3cm, 폭 15.8cm, 두께 2.4cm)

(15) 기하문 평기와(사진 15, 답본 15)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시문은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6회에 걸쳐 중복되어 시문을 하였다. 시문구의 길이는 알 수 없으나 시문구의

폭은 약 5cm이다. 상면에서 약 5cm구간은 문양을 표현하지 않고 무문으로 처리하였다. 잔존부의 양 측면으로 문양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측에는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쓸어내린 흔적이 있다. 배면에는 포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상단에서 약 4cm의 범위에는 손으로 눌러 약간 경사지게 처리한 흔적이 있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6 정도의 와도흔이 관찰된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모래질이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길이 20.7cm, 폭 15.8cm, 두께 2.4cm)

(16) 기하문 평기와(사진 16, 답본 16)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와구에서 약 8.5cm를 경계로 하여 문양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상단에는 전체적으로 문양이 희미하며 종선문과 호형태의 문양이 나타나며, 하단에는 횡선문과 사선문이 문양을 구성하고 있다. 시문구의 길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폭은 약 5cm 정도이다. 잔존부의 좌측이 우측에 비하여 문양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와구는 점토를 덧대 약간 들려 있으며 별다른 문양의 표현은 없다. 배면에는 희미하게 포흔이 나타나는데 건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눌린 흔적이 있다. 상단에서 약 3cm의 범위에는 와통에서 분리한 이후 손으로 눌러 외부곡률을 맞춘 흔적이 있다. 이곳에는 세로방향으로 지두흔이 나타난다. 우측에는 세로방향으로 도구에 의하여 긁어내린 흔적이 있다. 폭은 약 1.1cm이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3 정도의 와도흔이 나타난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모래질이 약간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25.9cm, 폭 10.7cm, 두께 2.4cm)

(17) 기하문 평기와(사진 17, 답본 17)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문양의 구성은 양쪽 방향의 사선문과 횡선문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형태이다. 하단에서 약 2.5cm의 범위에는 종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지운 흔적이 있다. 언강의 흔적이 확인되나 대부분 결실되어 있다. 배면에는 포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3 정도의 와도흔이 확인된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모래질이 섞인 점토질이다. (길이 20.3cm, 폭 10.8cm, 두께 2.2cm)

(18) 기하문 평기와(사진 18, 답본 18)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문양의 구성은 양쪽 방향의 사선문이 중복하여 교차된 형태이다. 잔존부의 하단에는 횡선문의 시문형태가 약간 보이고 있다. 시문구의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으나 폭은 약 5.5cm이다. 잔존부의 좌측 하단과 상단 중앙에는 문양이 희

미하다. 배면에는 포흔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선방향의 가는 빗질 흔적이 있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5 정도의 와도흔이 있다. 와도흔이 나타나지 않은 범위에는 분리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모래질이 섞인 점토질이다.

(길이 19.2cm, 폭 10.9cm, 두께 2.4cm)

(19) 기하문 평기와(사진 19, 탑본 19)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문양의 구성은 양쪽 방향의 사선문이 교차되어 있는 형태이다. 시문구의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으나 폭은 약 5.5cm이다. 상단에서 약 2cm 구간에는 문양을 지운 흔적이 있으며 약간 들러 있다. 언강이 부착된 흔적이 남아 있으나 대부분은 결실되어 있다. 배면에는 1cm²의 범위에 緯絲 11울×經絲 11울 크기의 포흔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잔존부의 중앙에는 마포를 덧붙인 흔적이 있어 포흔이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하단 중앙에는 굵게 찰과흔이 남아 있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3 정도의 와도흔이 남아 있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모래질이 약간 섞인 점토질이다. (길이 17.3cm, 폭 10.5cm, 두께 2cm)

(20) 기하문 평기와(사진 20, 탑본 20)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된 수키와이다. 등면에는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문양의 구성은 횡선문과 양쪽 방향의 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하는 편이 작아 정확한 시문구의 길이와 폭은 알 수 없다. 잔존부의 중앙에는 세로방향으로 길게 시문구의 경계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측에는 시문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시문구를 방향을 달리하여 시문한 것으로 보인다. 배면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나타나는데 정확한 울의 개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기와의 건조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 와통에서 분리하여 생긴 결과로 보인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6 정도의 와도흔이 나타난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약간의 석립이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14.9cm, 폭 11.8cm, 두께 2.4cm)

(21) 무문 평기와(사진 21, 탑본 21)

시굴 3 트렌치에서 출토된 암키와이다. 등면에는 무문이다. 상단에서 약 2cm~7cm의 범위에는 손을 이용하여 가로방향으로 쓸어내린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잔존부의 우측과 하단에는 패인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상단에서 약 2cm의 범위에는 등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하여 단이 지도록 처리하였다. 와구는 정면하여 무문으로 처리하였다. 배면에는 1cm²의 범위에 緯絲 8울×經絲 13울 크기의 포흔이 나타난다. 좌측에는 사선방향으로 가는 빗질흔적으로 포흔이 희미하나 우측에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 하단에서 약 5.5cm 위로 가로방향의 연결끈 흔적이 있다. 상단에서 약 2cm 범위는 등면과 마찬가지로 약간 들어가게 처리하였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굵은 석립이 다수 포함된 점토질이다. (길이 20.2cm, 폭 18.1cm, 두께 1.7cm)

(22) 무문 평기와(사진 22, 답본 22)

시굴 3 트렌치에서 출토된 암키와이다. 등면에는 무문이다. 잔존부의 좌측에는 세로방향으로 가는 슬질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부의 우측에는 불 먹은 흔적이 남아 있다. 배면에는 포흔이 남아 있지 않고 가로방향으로 굵은 빗질 흔적이 남아 있다. 기와의 상단은 다른 곳의 두께보다 매우 얇게 처리되어 있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약 1/4 정도의 와도흔이 관찰된다. 회청색의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태토는 정선된 고운 점토질이다. (길이; 13.7cm, 폭; 16.7cm, 두께; 2cm)

(23) 무문 평기와(사진 -23, 답본 23)

시굴 3 트렌치에서 출토된 암키와이다. 등면에는 무문이다. 잔존부의 좌측에는 세로방향으로 쓸어내린 흔적이 있으며 가로방향의 찰과흔도 약간 나타나고 있다. 하단에서 약 8.5cm를 경계로 하여 두께가 현격하게 얇아지고 있다. 즉, 상·하단으로 갈수록 얇아지며, 좌우측면으로도 얇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앙부의 두께는 약 2.5cm인데 비하여 미구의 두께는 약 1.2cm로 매우 얇다. 배면에는 포흔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가로방향으로 굵은 찰과흔이 나타나고 있다. 배면에서 등면으로 두께의 4/5 정도의 와도흔이 나타난다. 회백색의 소성도가 낮은 연질이며 태토는 모래가 약간 포함된 고운 점토질이다. (길이 14.2cm, 폭 18.5cm, 두께 2.5cm)

2) 자기류

이번 시굴조사에서는 시굴1트렌치에서 다수의 백자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제기편이다. 이 제기들은 조선시대 후기 양식으로 모두 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자기의 조형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백자 제기(사진 24, 도면 1)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되었다. 백자 제기이다. 구연과 동체의 일부만이 남아 있다. 동체는 구연부로 갈수록 점점 넓게 외반되고 있다. 구순은 편평하게 도구로 깎아내었다. 동체 외벽에는 세로방향으로 6.7cm 길이의 점토띠 장식이 붙어있다. 점토띠에는 가로방향의 짧은 홈을 내었다. 푸르스름한 백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다. 특히 저부로 꺾어지는 외벽에는 세로로 긴 빙열흔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원구경 20cm, 잔존높이 8cm, 두께 0.3~1.2cm)

(2) 백자 제기 4점(사진 25~28, 도면 2~5)

시굴 1 트렌치에서 출토되었다. 굽이 달린 백자 제기편이다. 4점으로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으나, 모두 같은 기형을 갖고 있다. 구연과 동체의 일부에 결실이 있어 완형은 없지만, 전체적인 기형 파악은 가능하다. 구연은 동체에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 45°각도로 외반되었다. 구연의 끝은 둥글게 처리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여 깎아 각을 내었다. 구순은 편평하며, 구연의 모양은 5개의 각이 잡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굽은 4부분에 걸쳐 삼각형모양으로 홈을 파내었다. 굽의 안쪽으로 모래비짐의 흔적이 있다. 제기의 안쪽 바닥에는 소성과정 중에 부분적으로 재가 내려앉은 흔적이 있다. 푸르스름한 백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다. 세밀한 빙열이 있는데, 꺾이는 면에는 빙열이 크고 길게 나타나 있다. 각각의 크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높이	굽높이	복원구경	복원저경	두께
①	8.6cm	1.7cm	13.6cm	7.8cm	0.4~1.2cm
②	7.9cm	1.4cm	15.4cm	8.6cm	0.5~1.2cm
③	7.7cm	1.4cm	16cm	8.2cm	0.3~1.2cm
④	7.5cm	1.5cm	13.4cm	7.5cm	0.5~1.2cm



사진 1. 문봉서원지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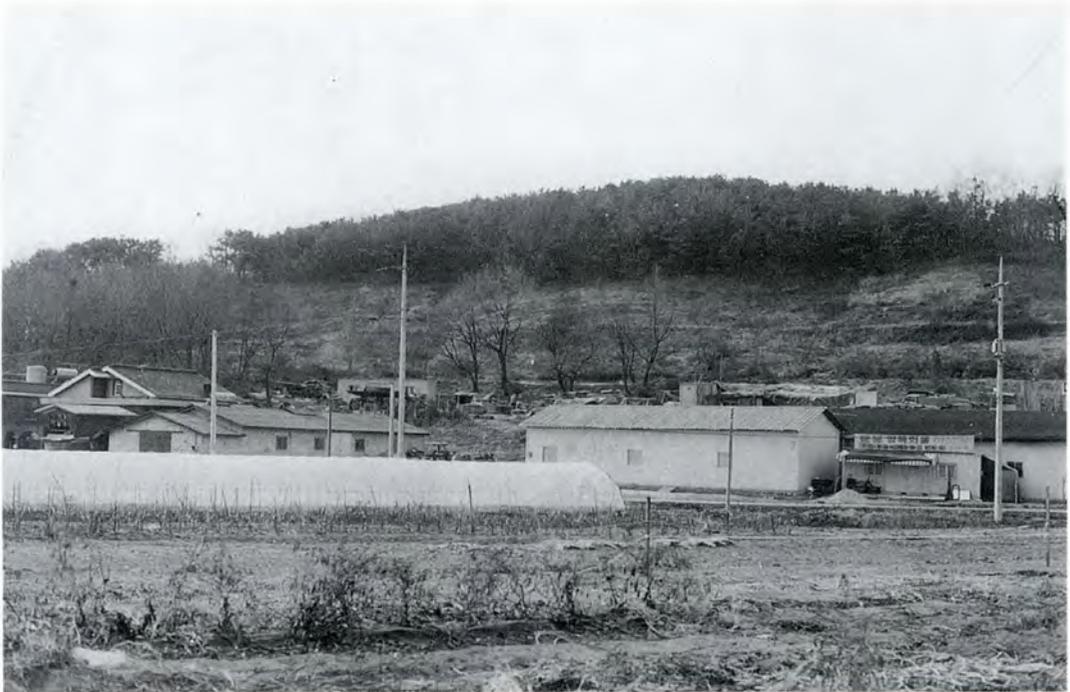


사진 2. 문봉서원지 근경



사진 3. 문봉서원지 동쪽 경작지 및 참고



사진 4. 문봉서원지 동쪽 주택가



사진 5. 문봉서원지 동쪽 경작지



사진 6. 문봉서원지 서쪽 경사면



사진 7. 문봉서원지 서쪽 경사면 배수로



사진 8. 개토제



사진 9. 시골조사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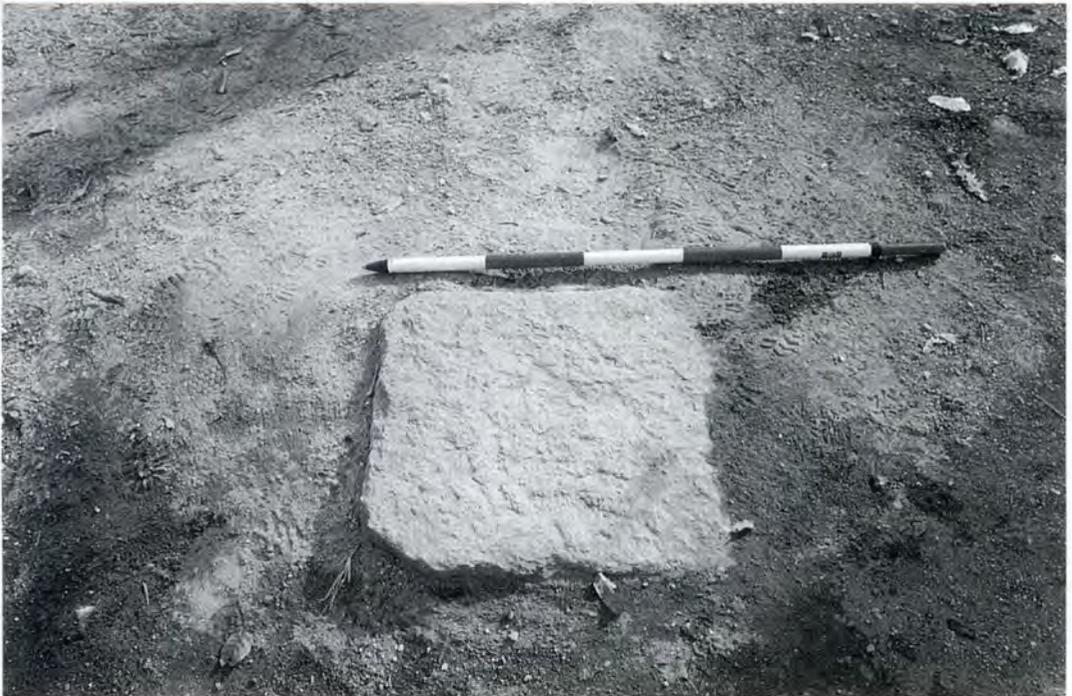


사진 10. 지표에 드러나 있던 방형초석



사진 11. 시굴 1트렌치 전경(남동쪽에서)



사진 12. 시굴 1트렌치 전경(북서쪽에서)



사진 14. 시굴 1트렌치 초석 및 기단 노출상황(북서쪽에서)



사진 13. 시굴 1트렌치 초석 및 기단 노출상황(남쪽에서)



사진 15. 시굴 1트렌치 초석 및 기단 노출상황(근경)



사진 16. 시굴 1트렌치 초석1 노출상황



사진 17. 시굴 1트렌치 초석2 노출상황



사진 18. 시굴 1트렌치 기단면석 축조상태



사진 19. 시굴 1트렌치 서벽 토층상태



사진 20. 시굴 1트렌치 백자제기 출토상태



사진 21. 시굴 2트렌치 전경(북동쪽에서)



사진 22. 시굴 2트렌치 전경(남쪽에서)



사진 23. 시굴 2트렌치 기반면석 축조상태



사진 24. 시굴 3트렌치 전경(동남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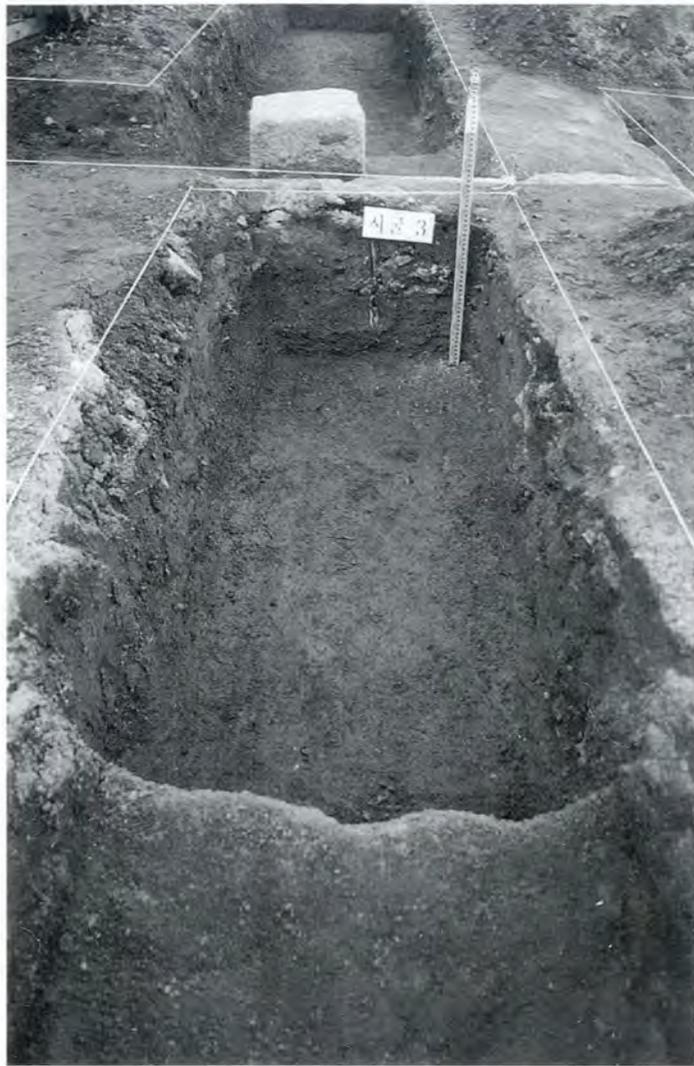


사진 26. 시굴 3트렌치 피트(동남쪽에서)



사진 25. 시굴 3트렌치 전경(북서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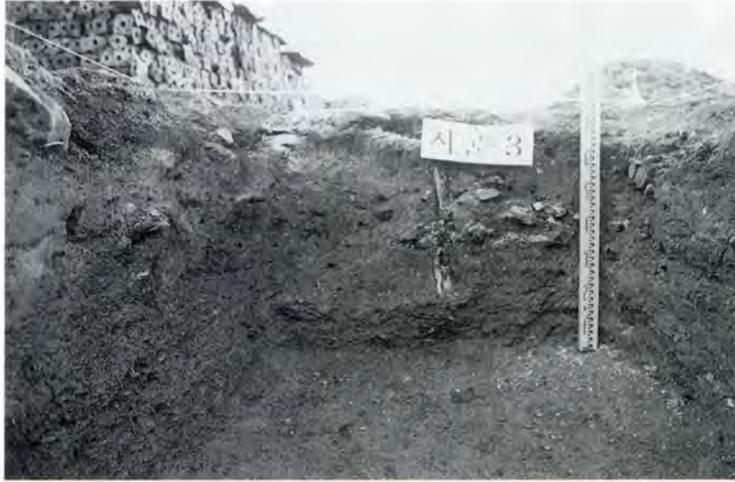


사진 27. 시굴 3트렌치 북벽 토층상태



사진 28. 시굴 4트렌치 기단면석 노출상태(동쪽에서)



사진 29. 시굴 4트렌치 기반면석 노출상태(서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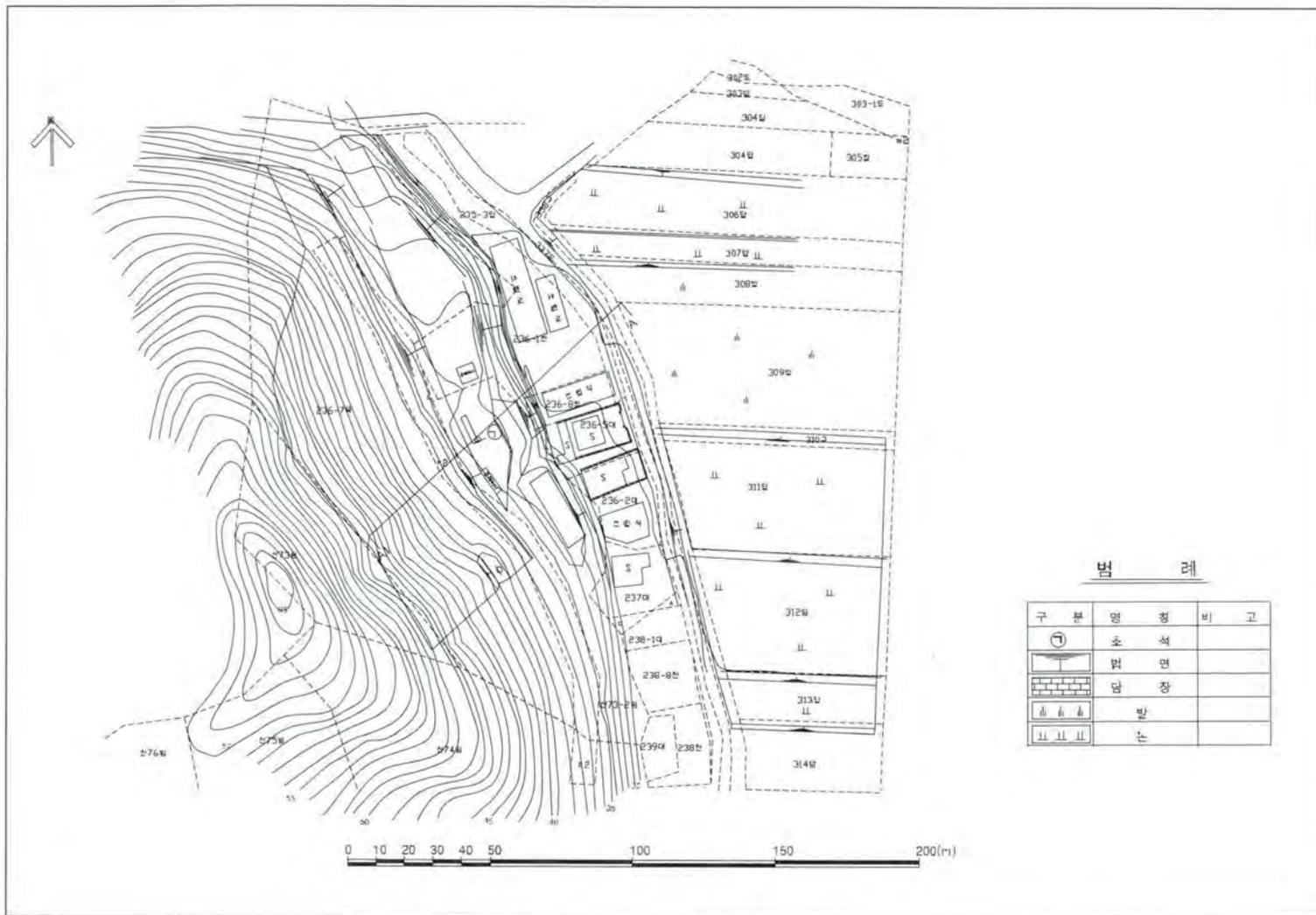
사진 30. 방치되어 있는 원형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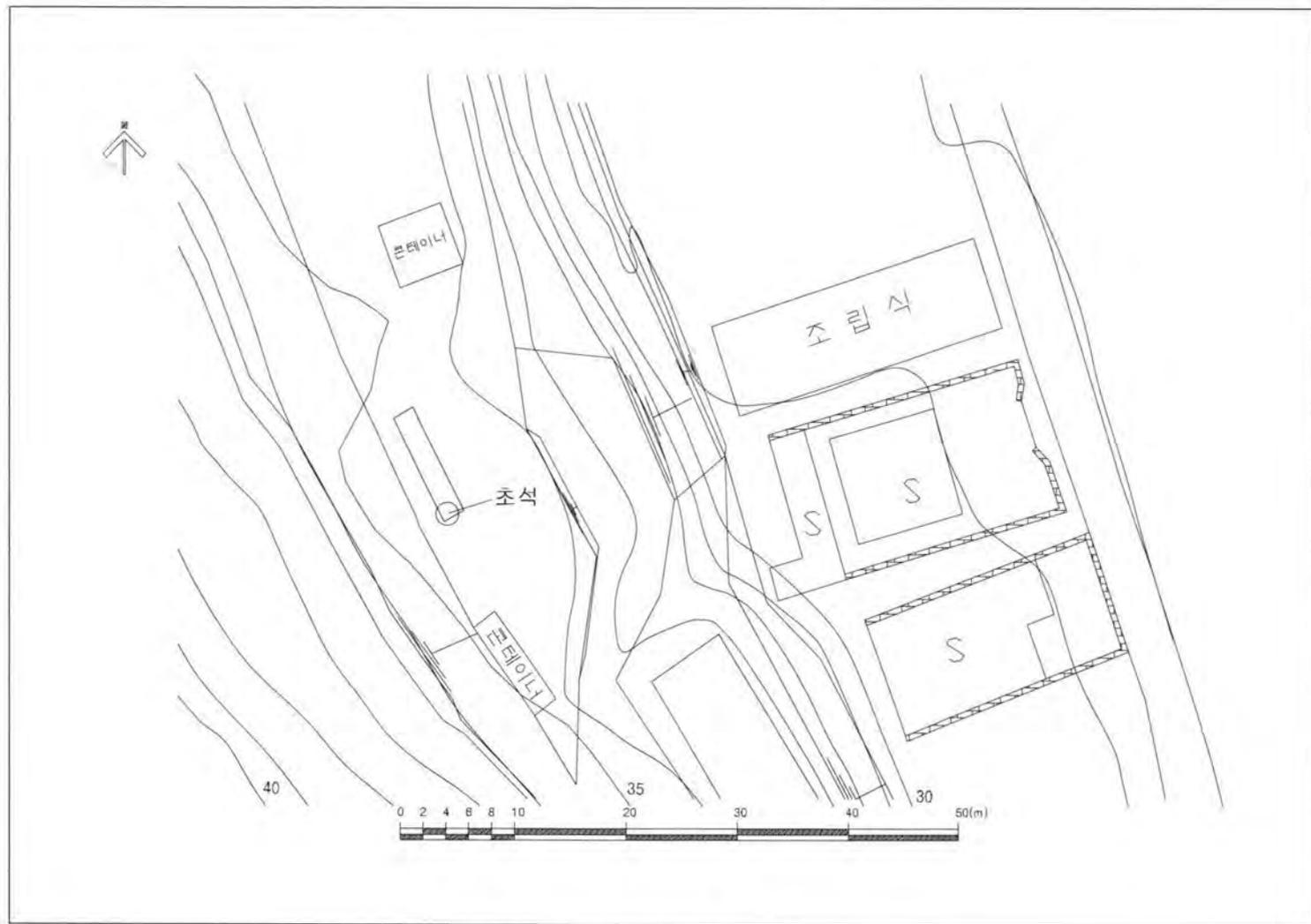
사진 31. 작업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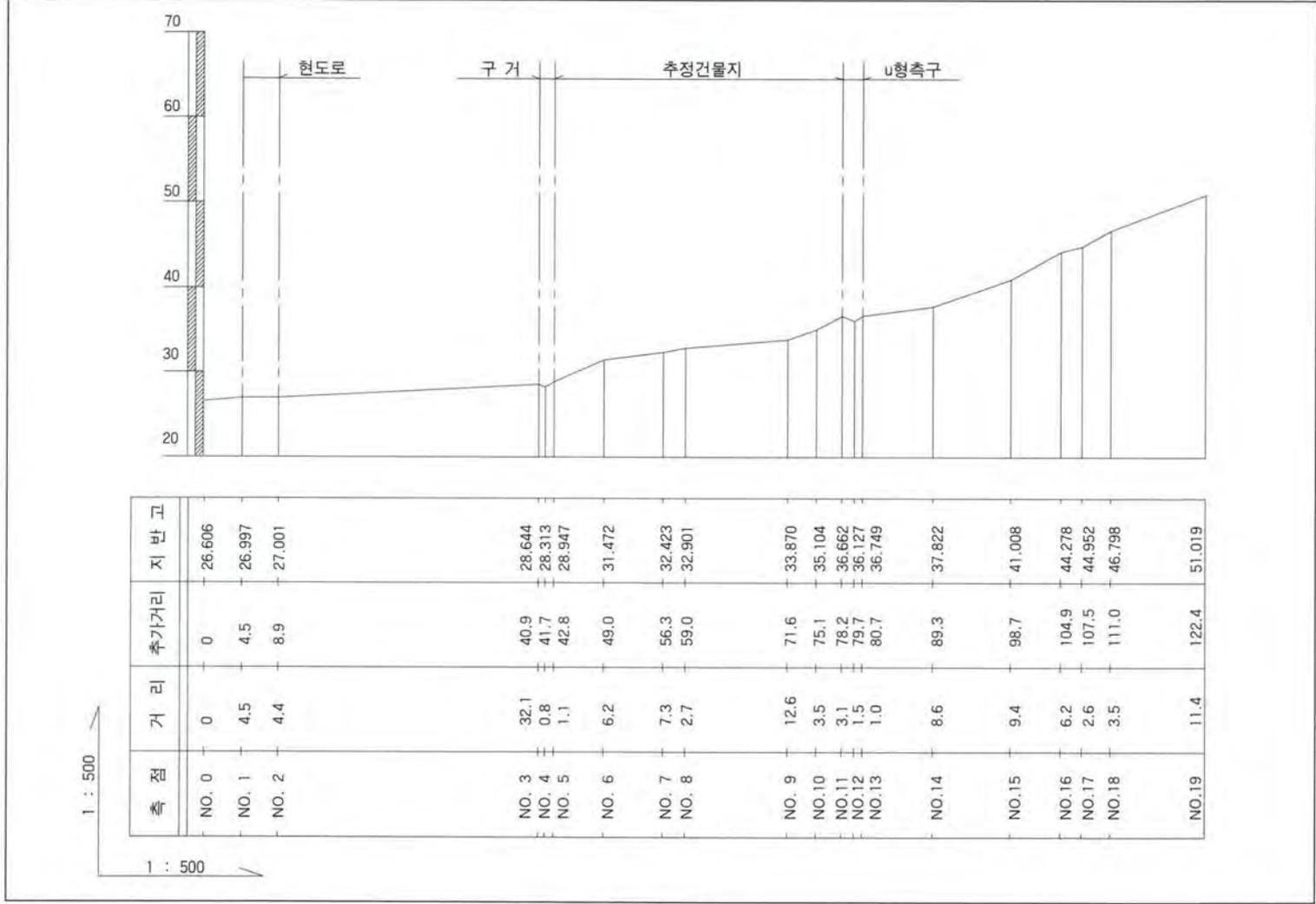
사진 32. 매몰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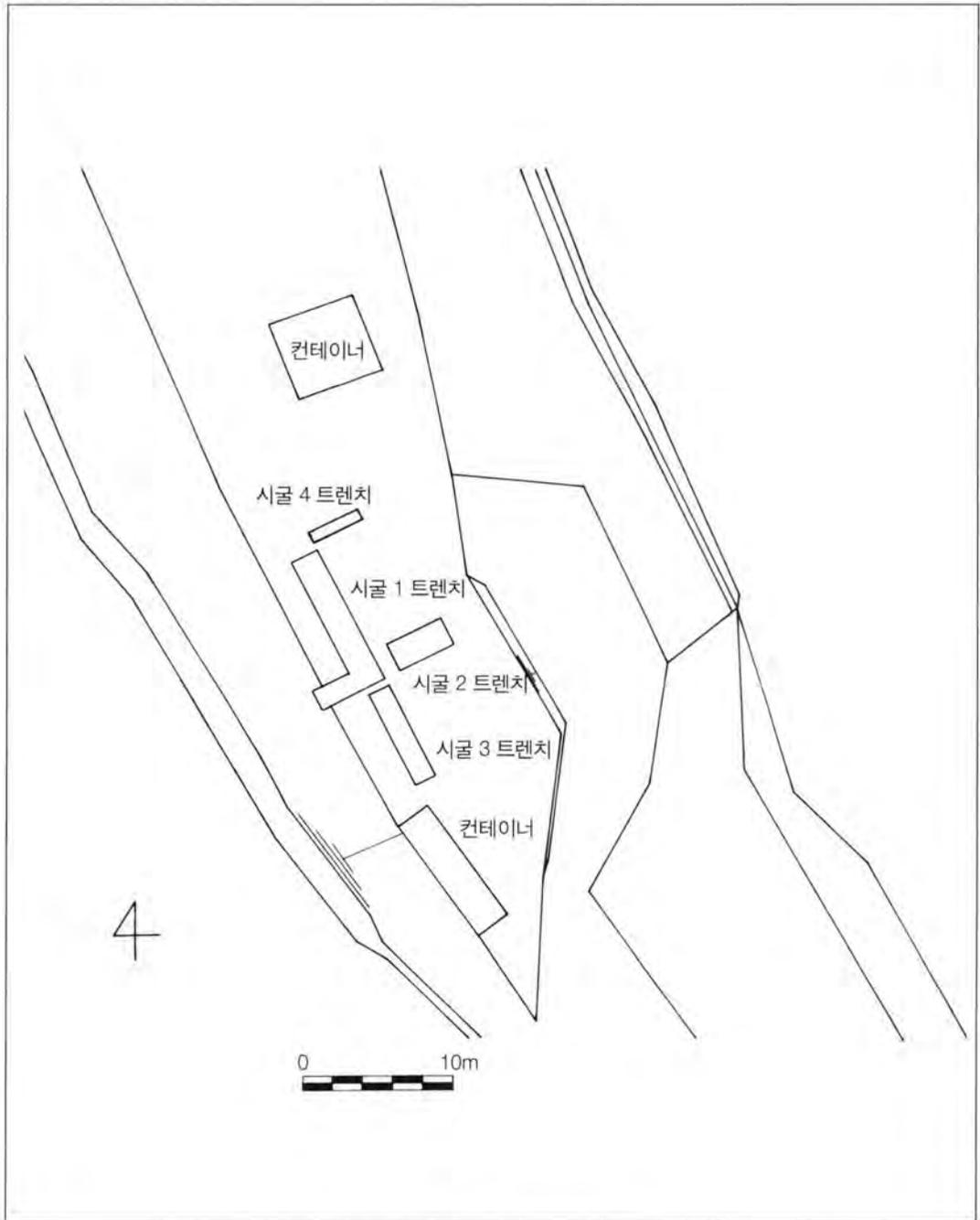
도면 1. 문봉서원지 현황 실측 평면도 ①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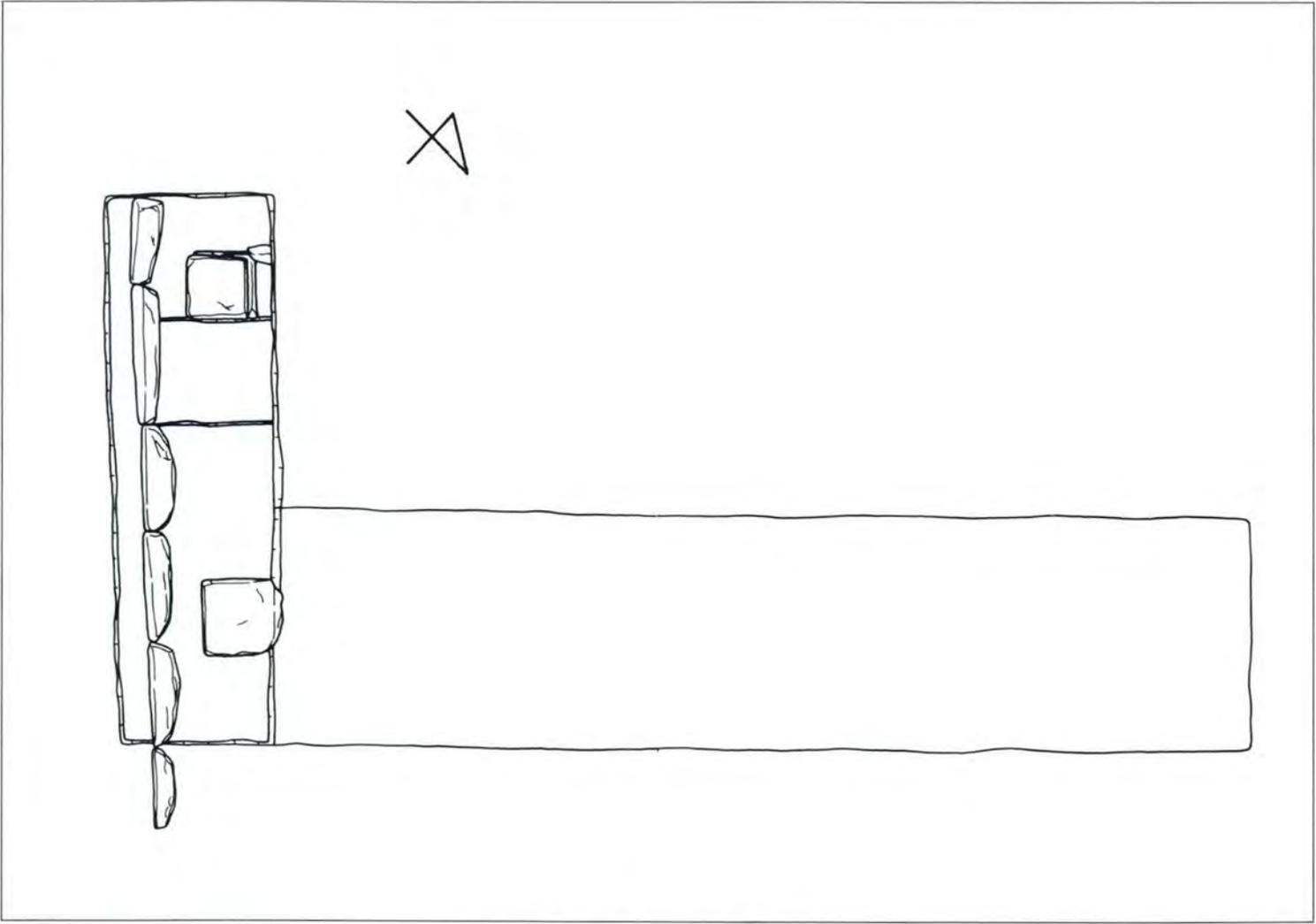
도면 2. 문봉서원지 현황 실측 평면도 ②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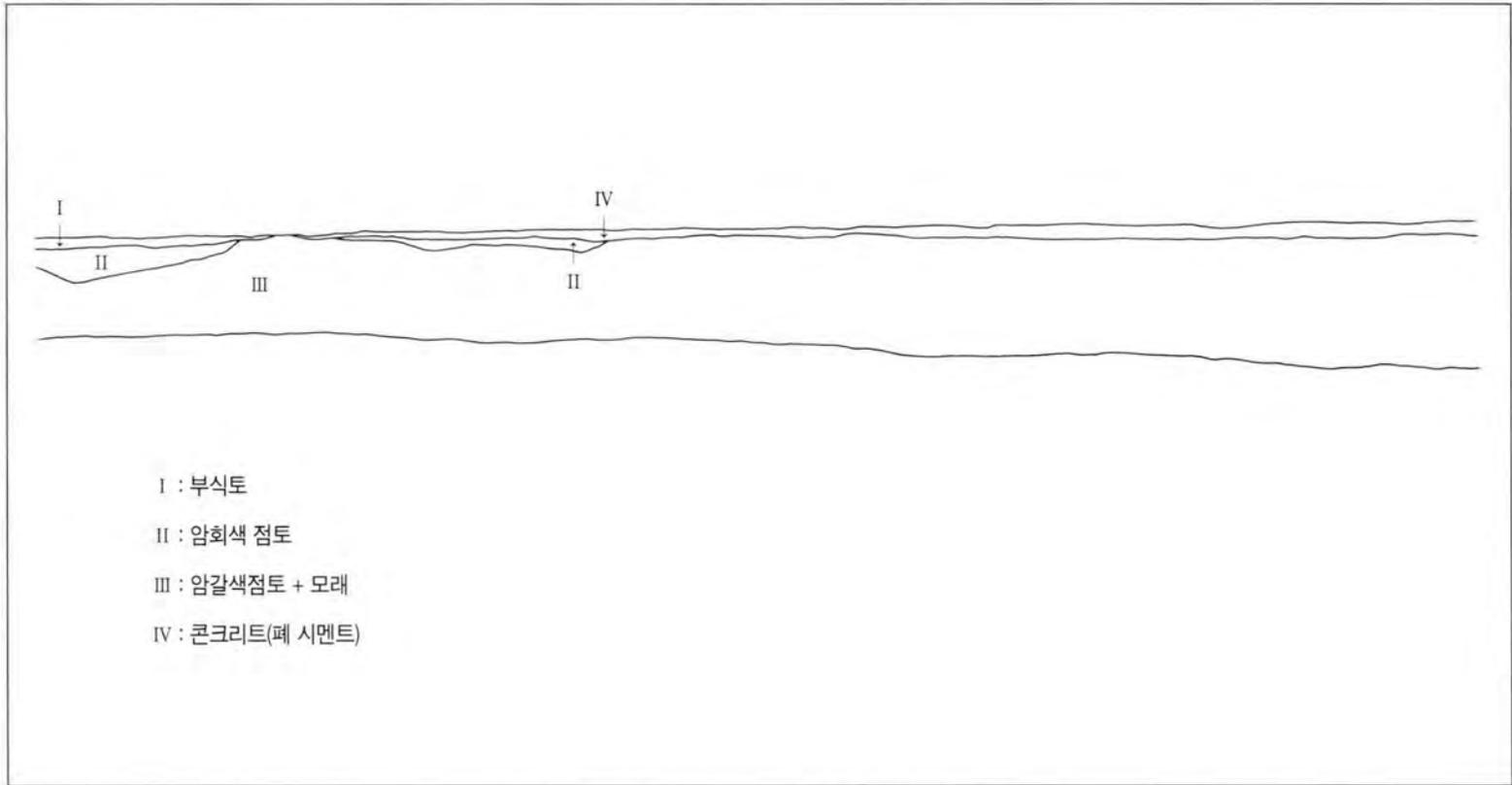
도면 3. 문봉서원지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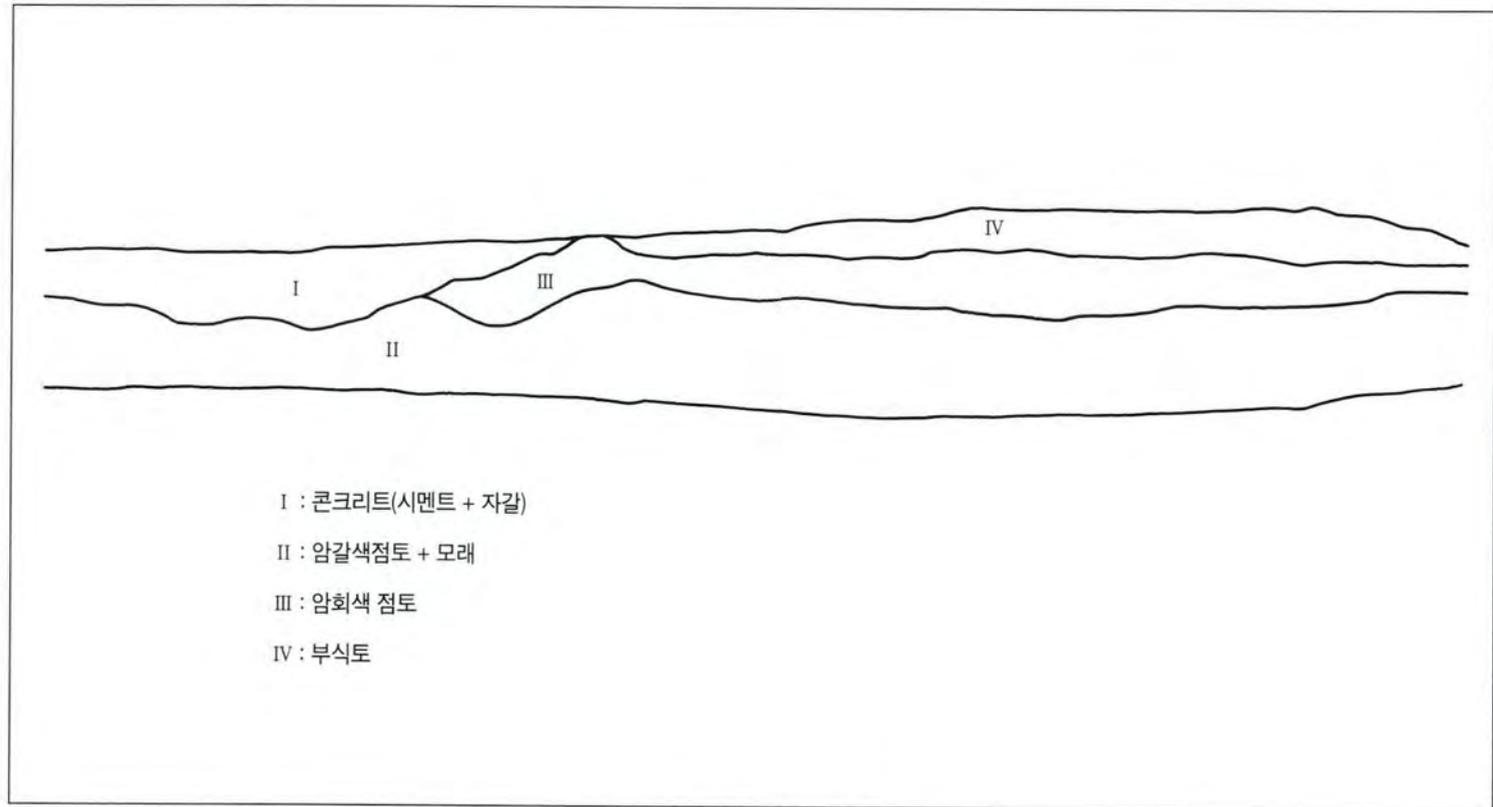
도면 4. 시굴조사 지역 전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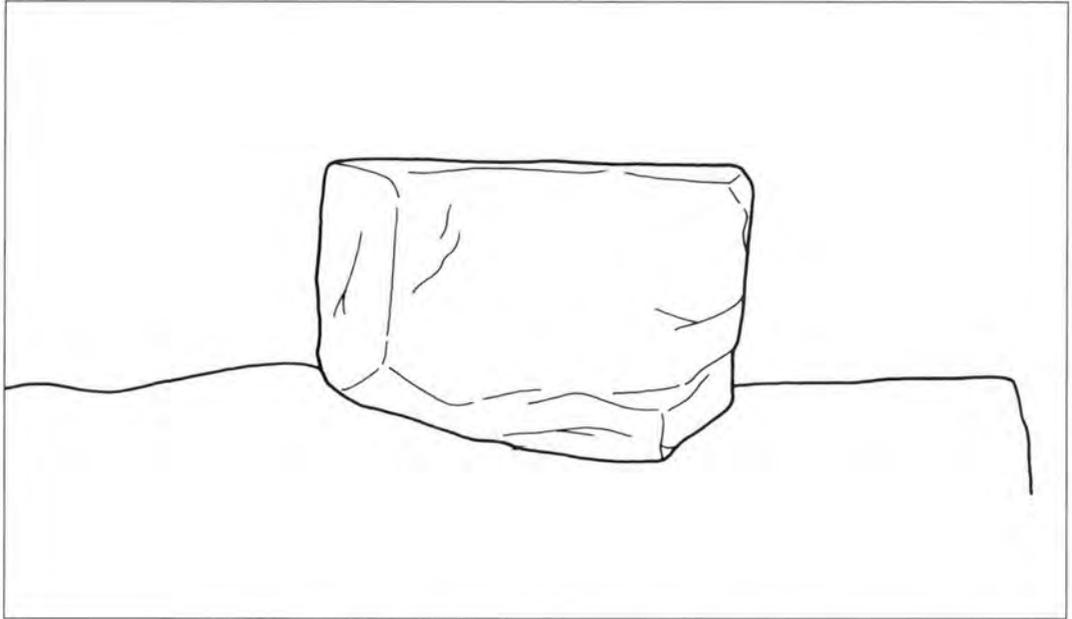
도면 5. 시굴 1 확장트렌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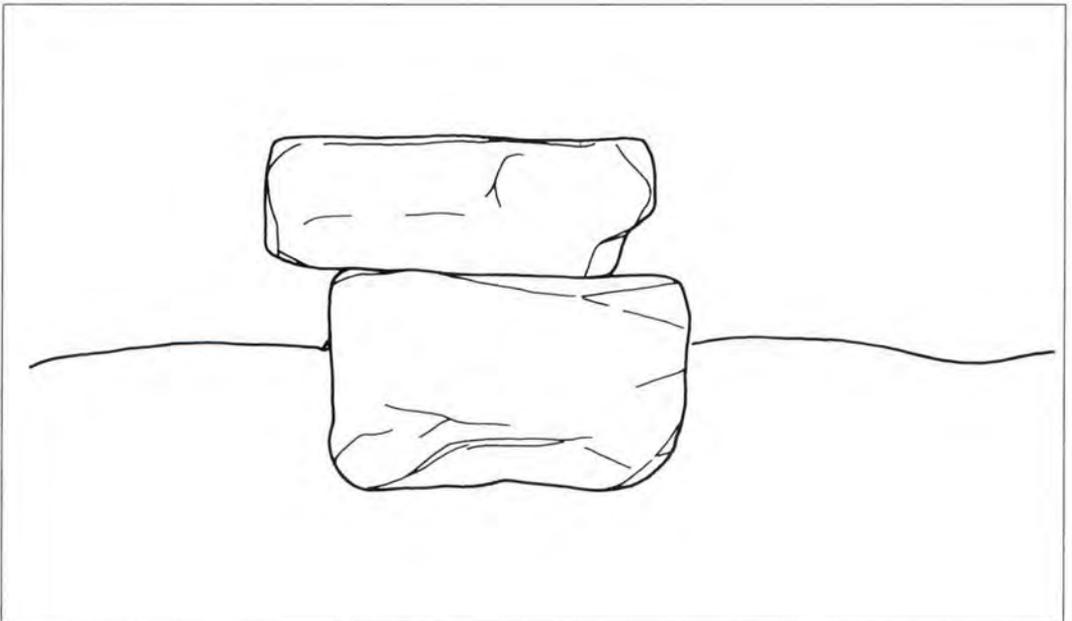
도면 6. 시굴 1 트렌치 서벽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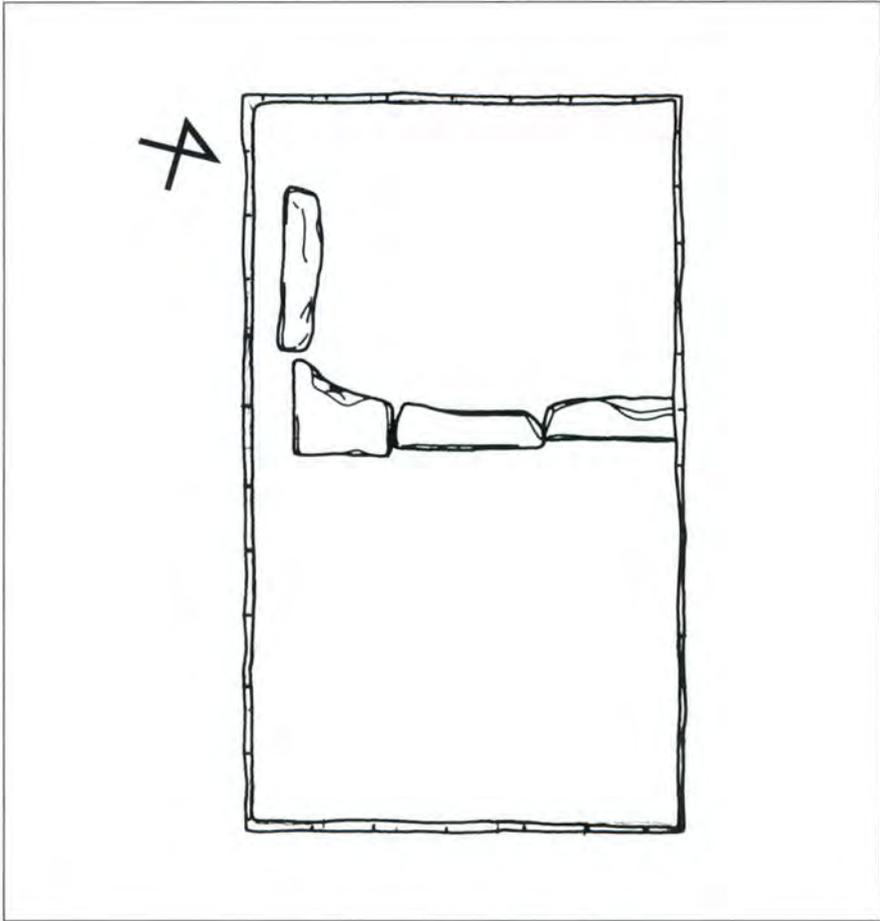
도면 7. 시굴 1 트렌치 남벽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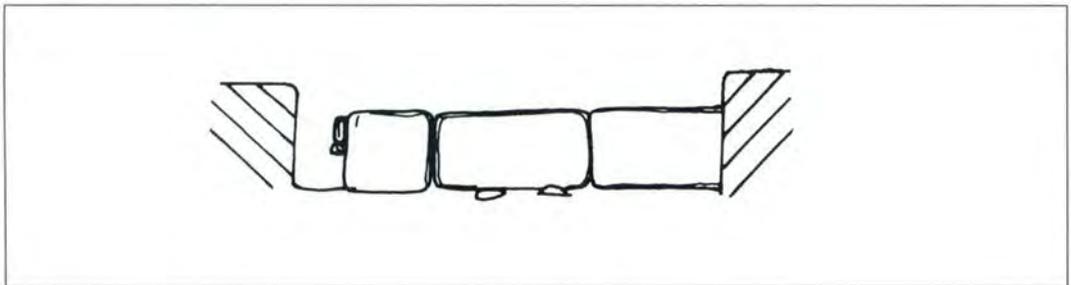
도면 8. 시굴 1 확장트렌치 초석①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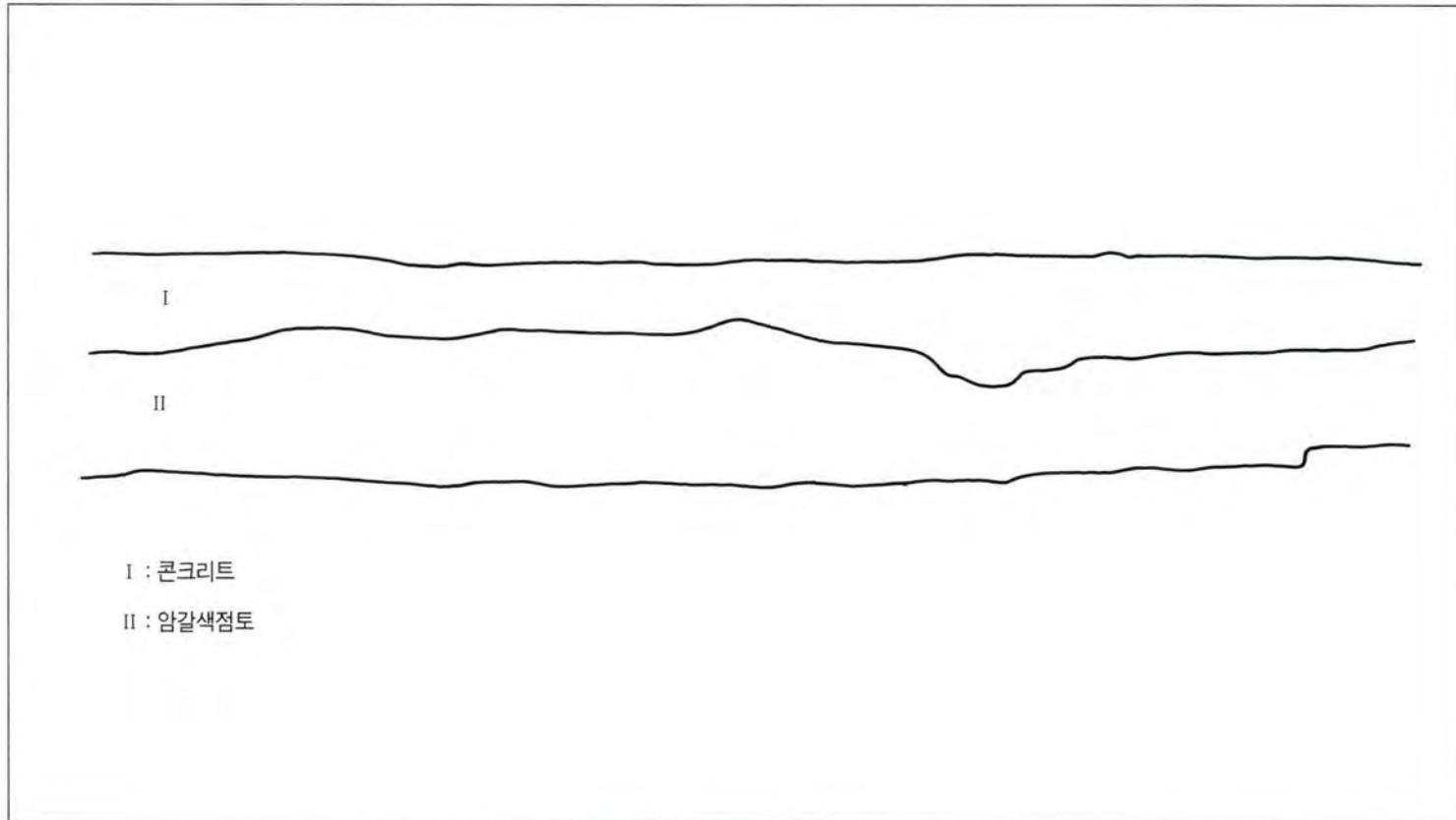
도면 9. 시굴 1 확장트렌치 초석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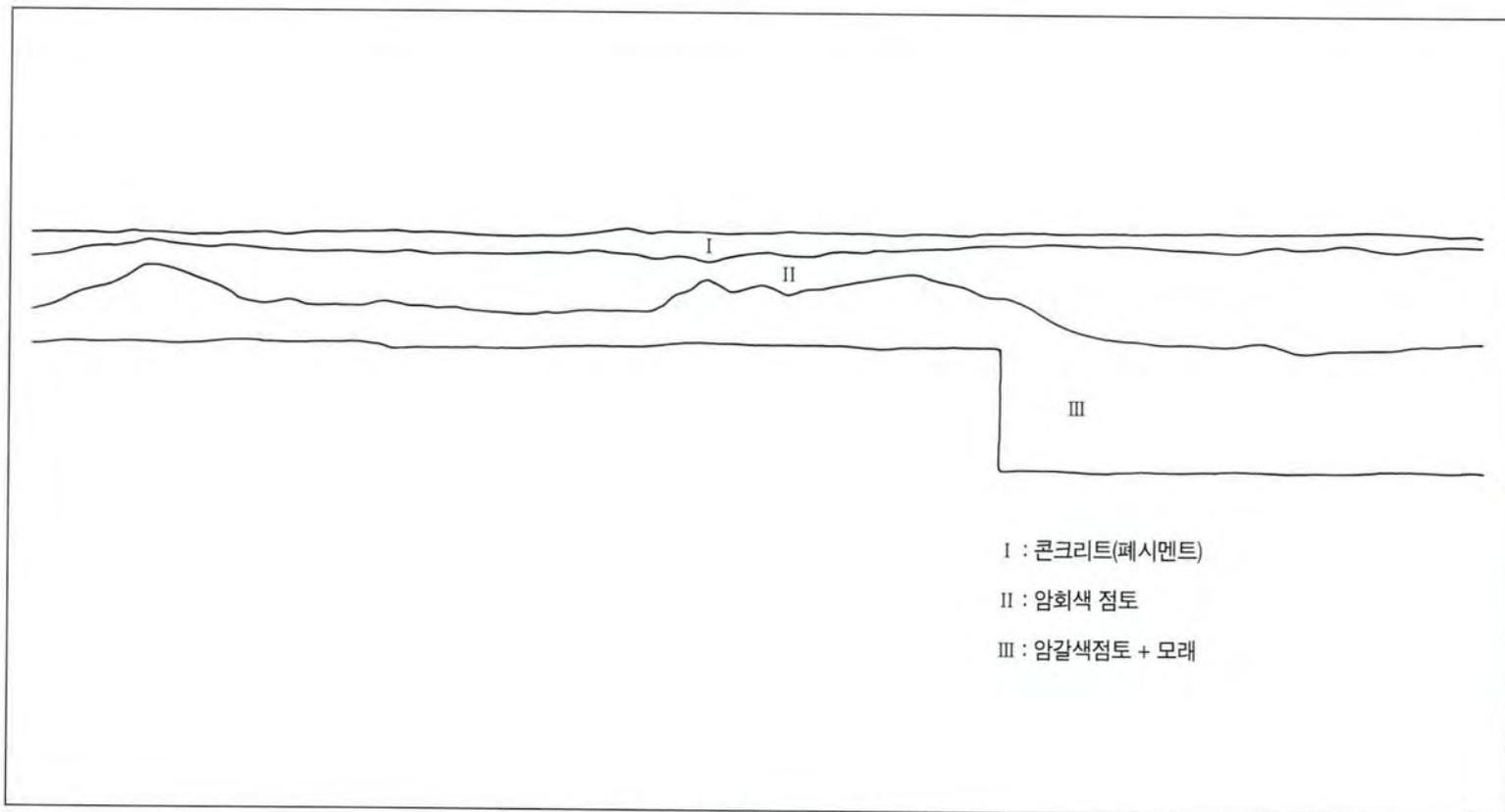
도면 10. 시굴 2 확장트렌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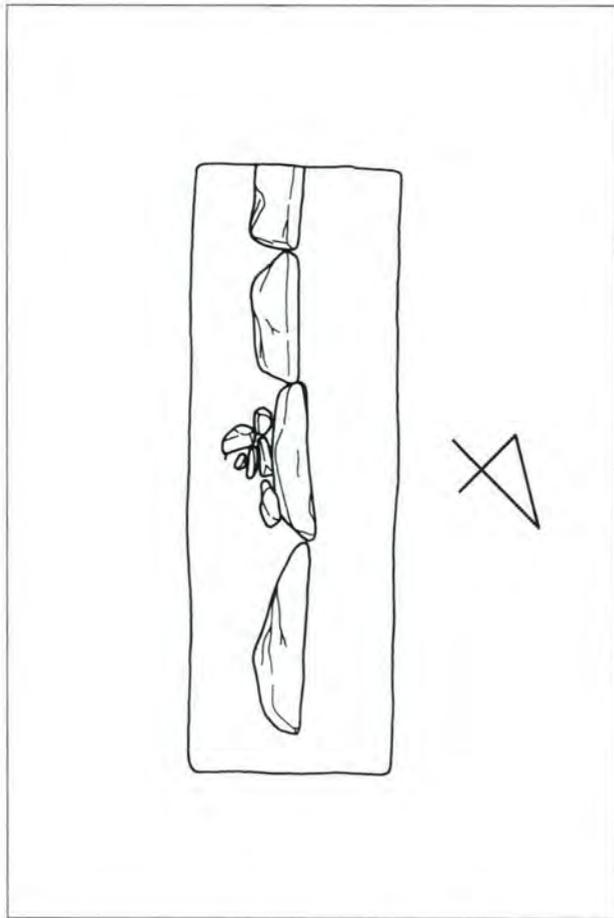
도면 11. 시굴 2 확장트렌치 서편 기단열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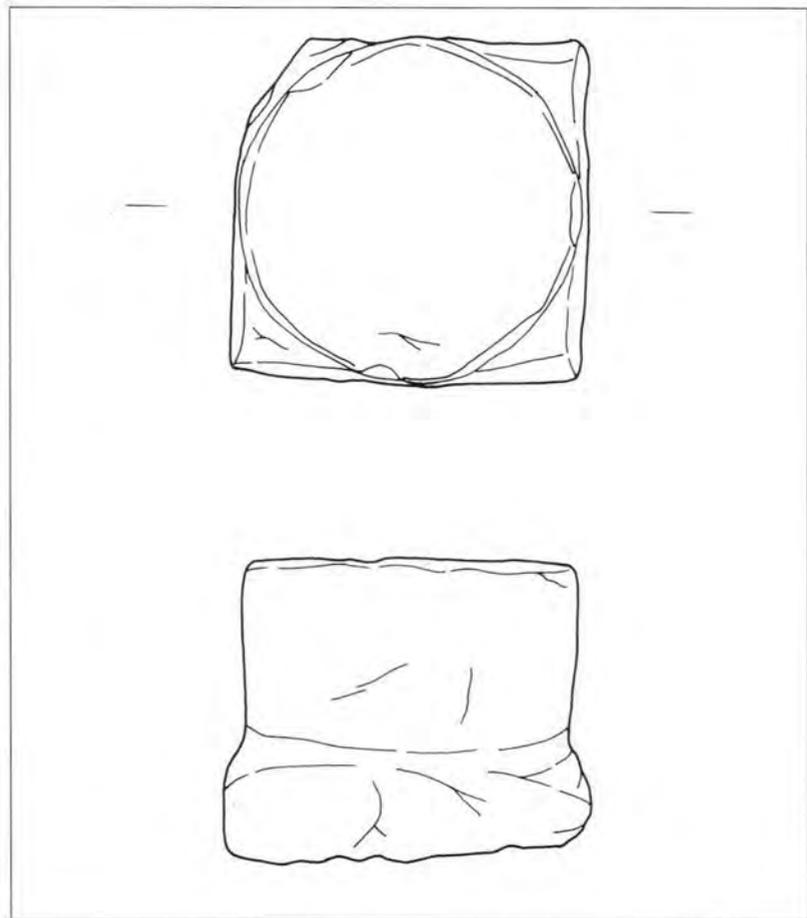
도면 12. 시굴 2 트렌치 남벽 토층도



도면 13. 시굴 3 트렌치 서벽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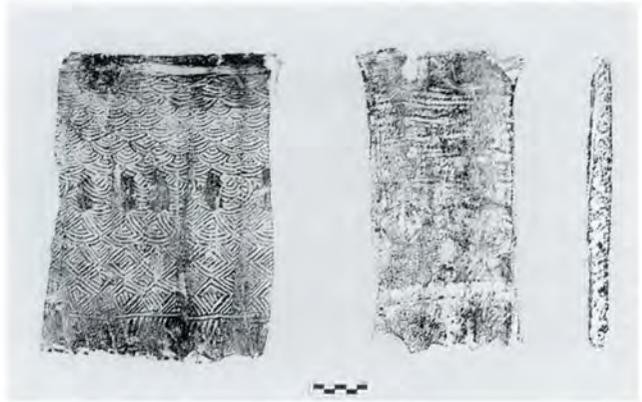
도면 14. 시굴 4 트렌치 평면도



도면 15. 원형 초석 평면도 및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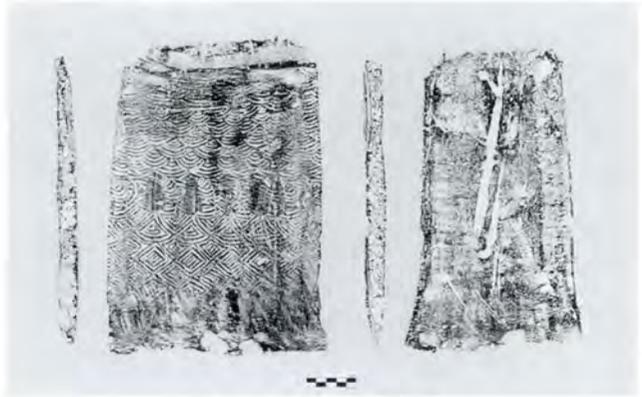
사진 1. 파도문 평기와



탑본-1. 파도문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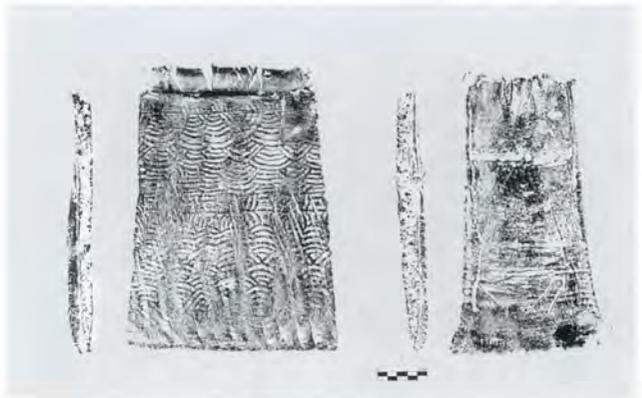
사진 2. 파도문 평기와



탑본-2. 파도문 평기와



사진 3. 파도문 평기와



탑본-3. 파도문 평기와



사진 4. 파도문 평기와



탑본 4. 파도문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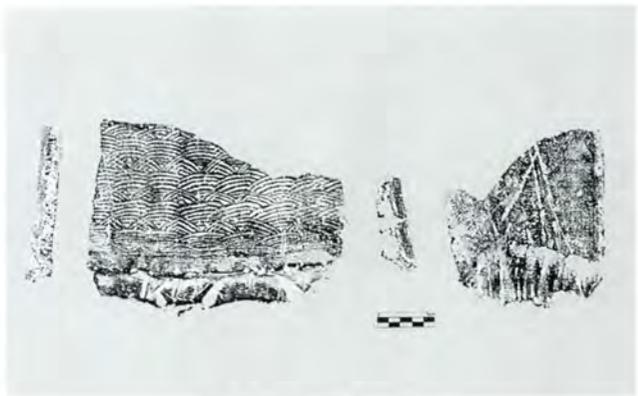
사진 5. 파도문 평기와



탑본 5. 파도문 평기와



사진 6. 파도문 평기와



탑본 6. 파도문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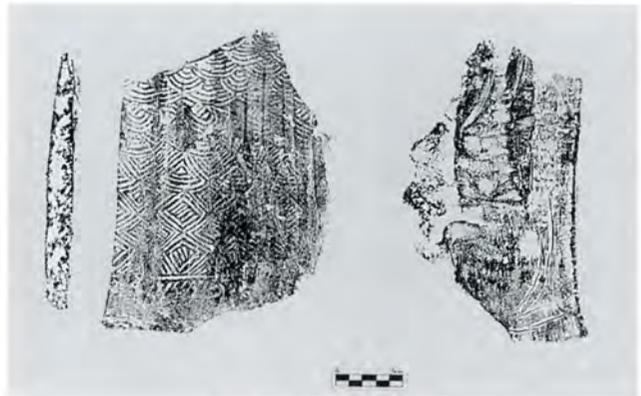
사진 7. 파도문 평기와



탑본 7. 파도문 평기와



사진 8. 파도문 평기와



탑본 8. 파도문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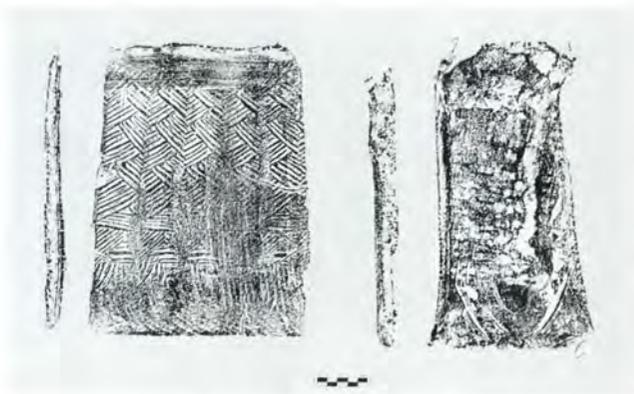
사진 9. 파도문 평기와



탑본 9. 파도문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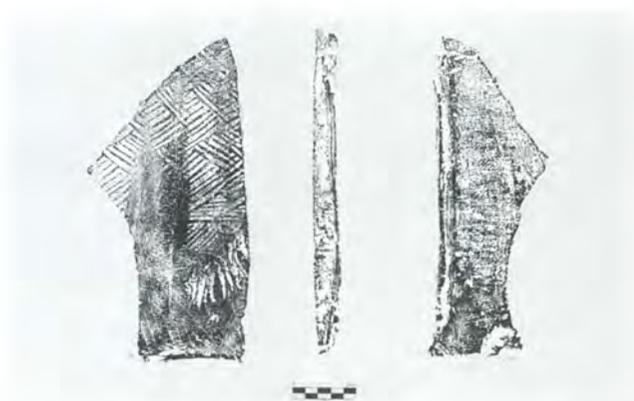
사진 10. 기하문 평기와



탑본 10. 기하문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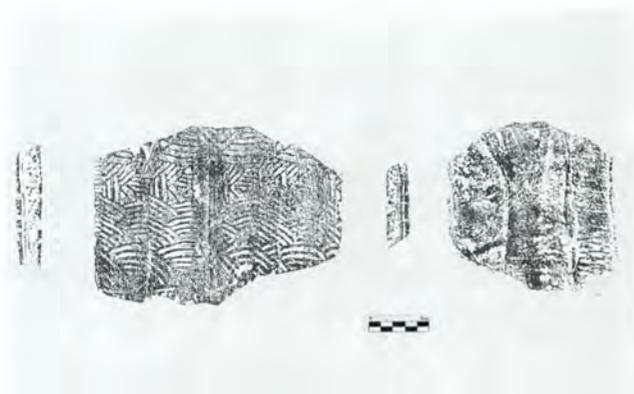
사진 11. 기하문 평기와



탑본 11. 기하문 평기와



사진 12. 기하문 평기와



탑본 12. 기하문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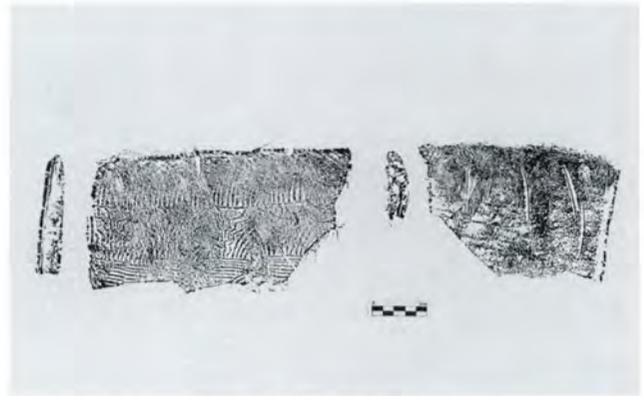
사진 13. 기하문 평기와



탑본 13. 기하문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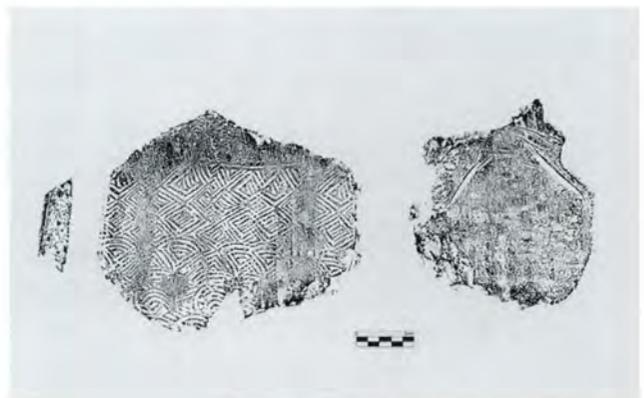
사진 14. 기하문 평기와



탑본 14. 기하문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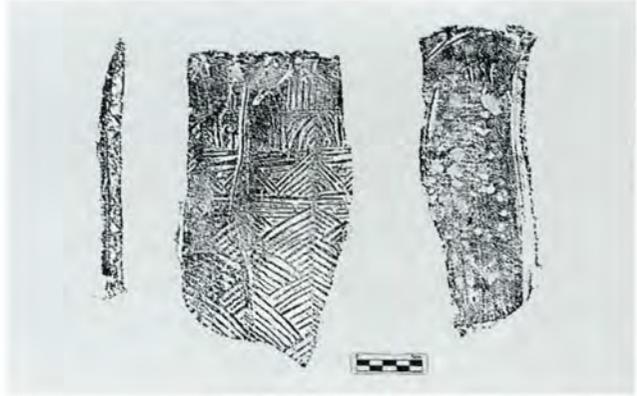
사진 15. 기하문 평기와



탑본 15. 기하문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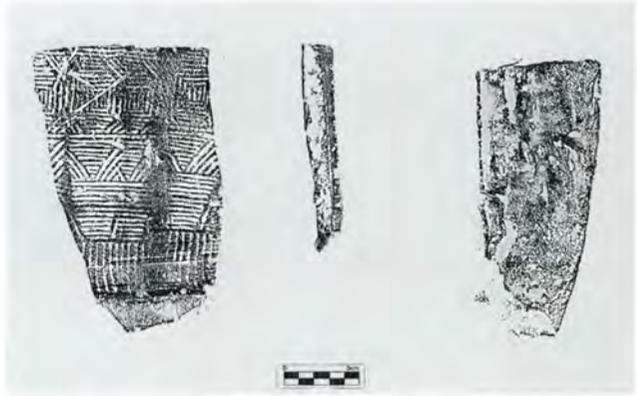
사진 16. 기하문 평기와



탑본 16. 기하문 평기와



사진 17. 기하문 평기와



탑본 17. 기하문 평기와



사진 18. 기하문 평기와



탑본 18. 기하문 평기와



사진 19. 기하문 평기와



탑본 19. 기하문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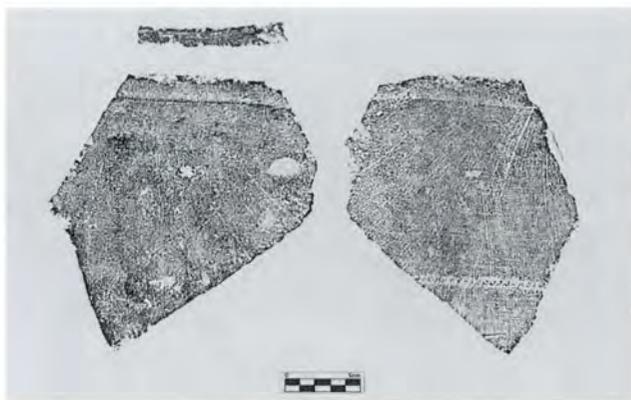
사진 20. 기하문 평기와



탑본 20. 기하문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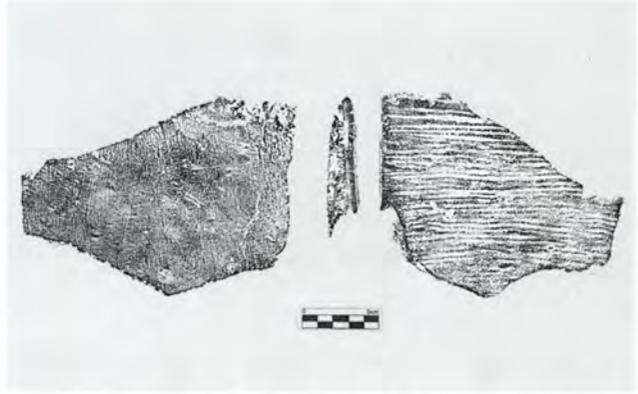
사진 21. 무문 평기와



탑본 21. 무문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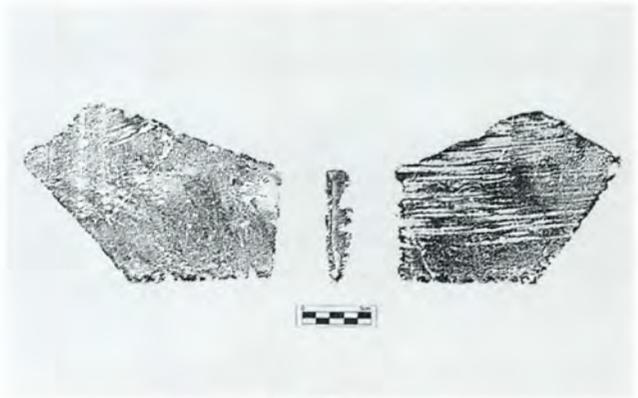
사진 22. 무문 평기와



삽본 22. 무문 평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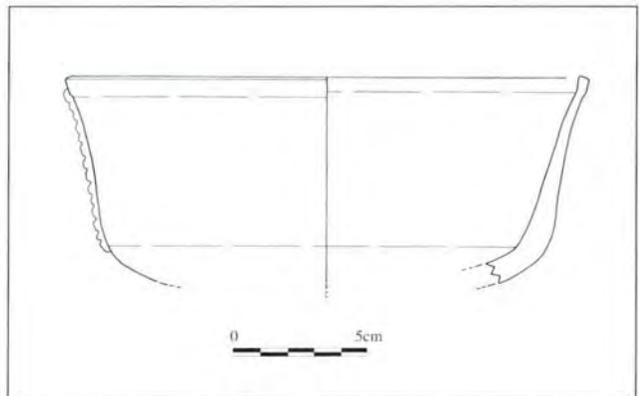
사진 23. 무문 평기와



삽본 23. 무문 평기와



사진 28. 백자 제기삽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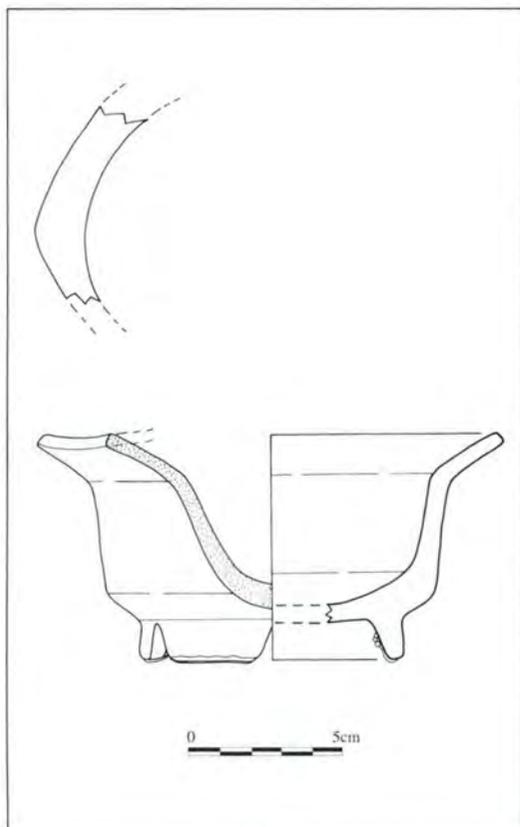
도면 1. 백자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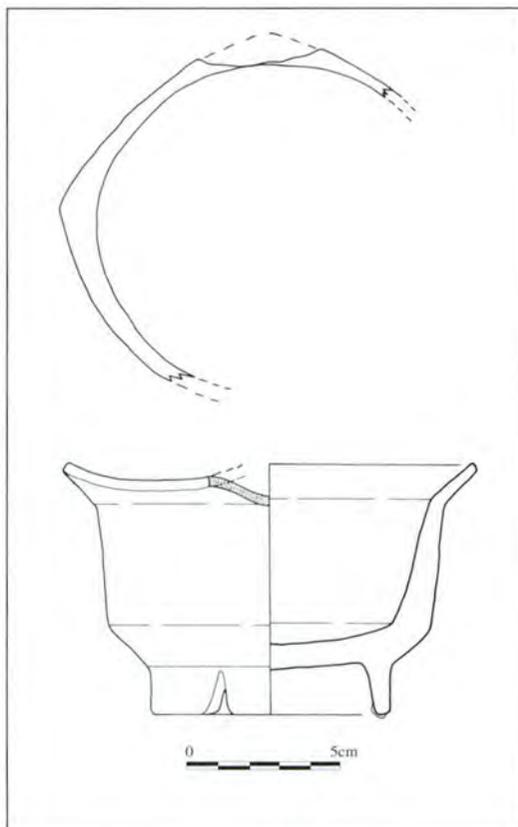
사진 25. 백자 제기



사진 26. 백자 제기



도면 2. 백자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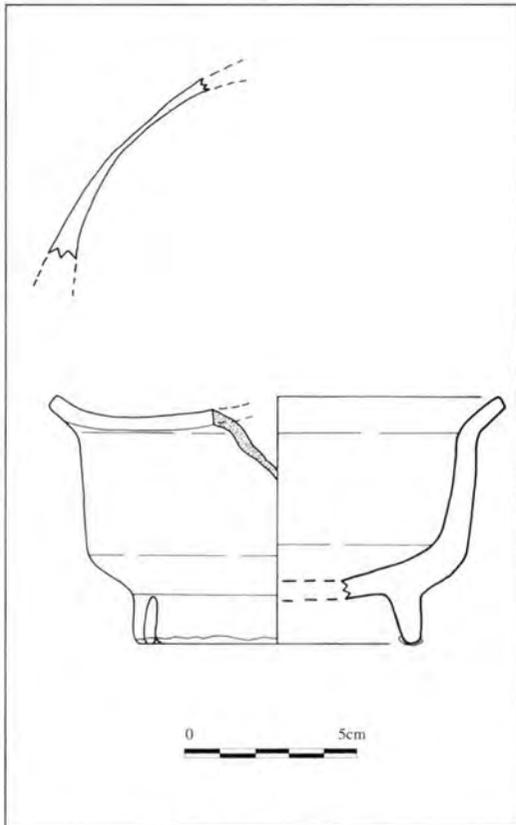
도면 3. 백자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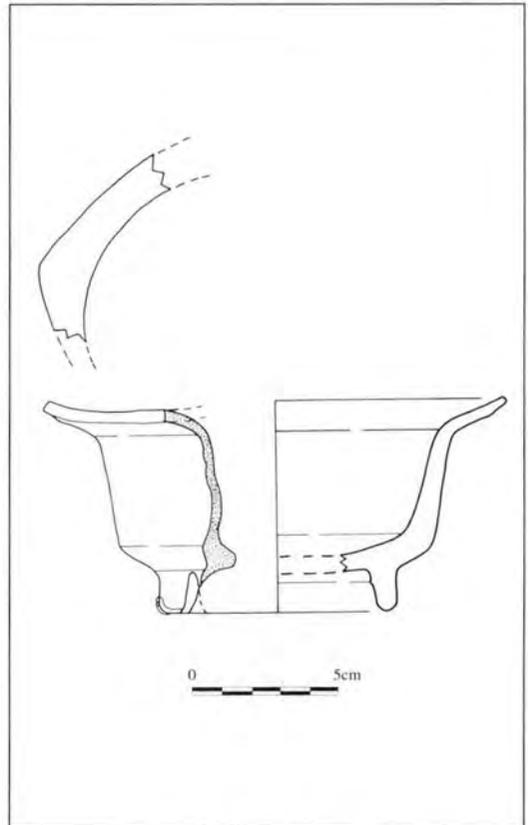
사진 27. 백자 제기



사진 28. 백자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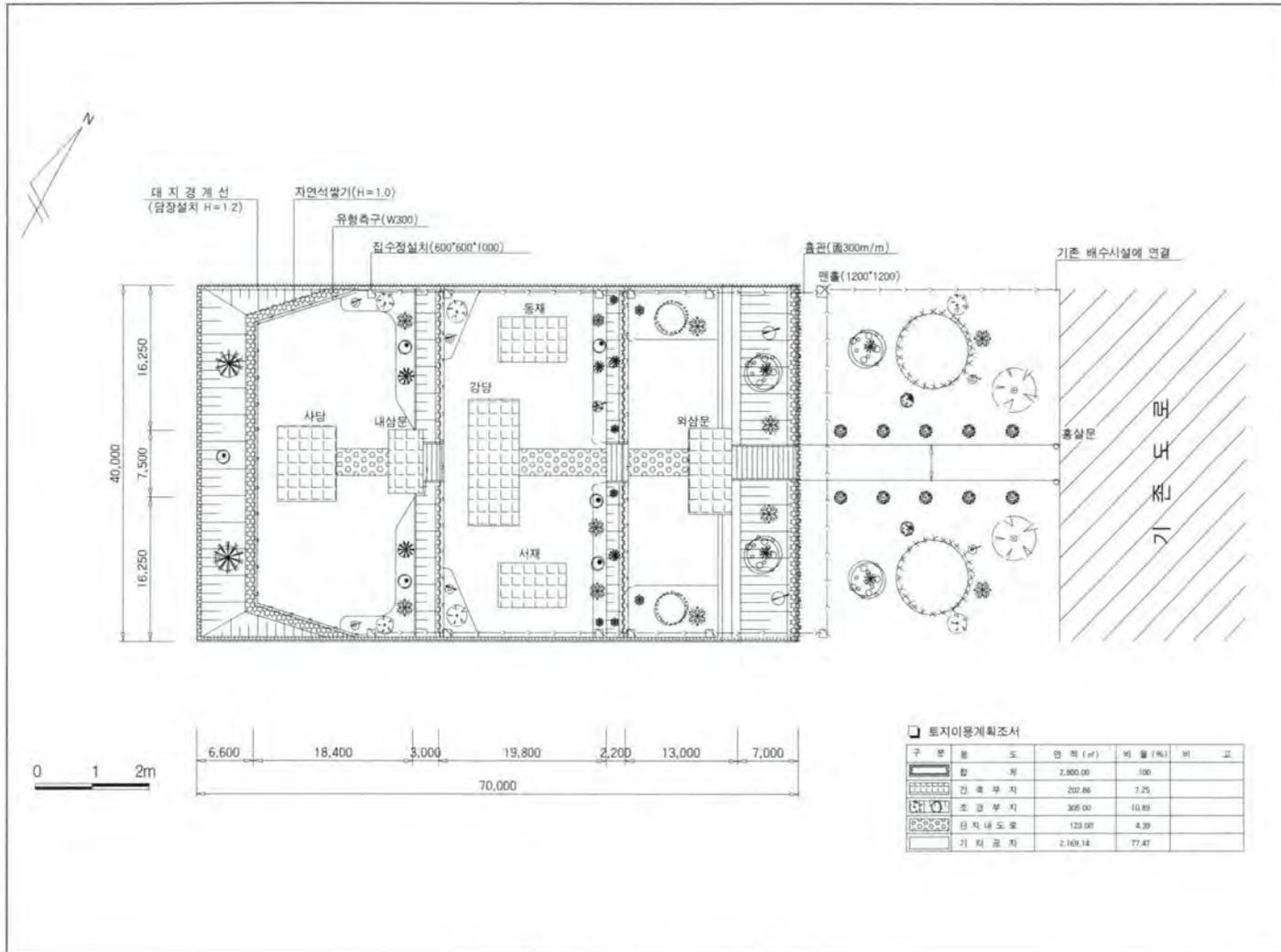
도면 4. 백자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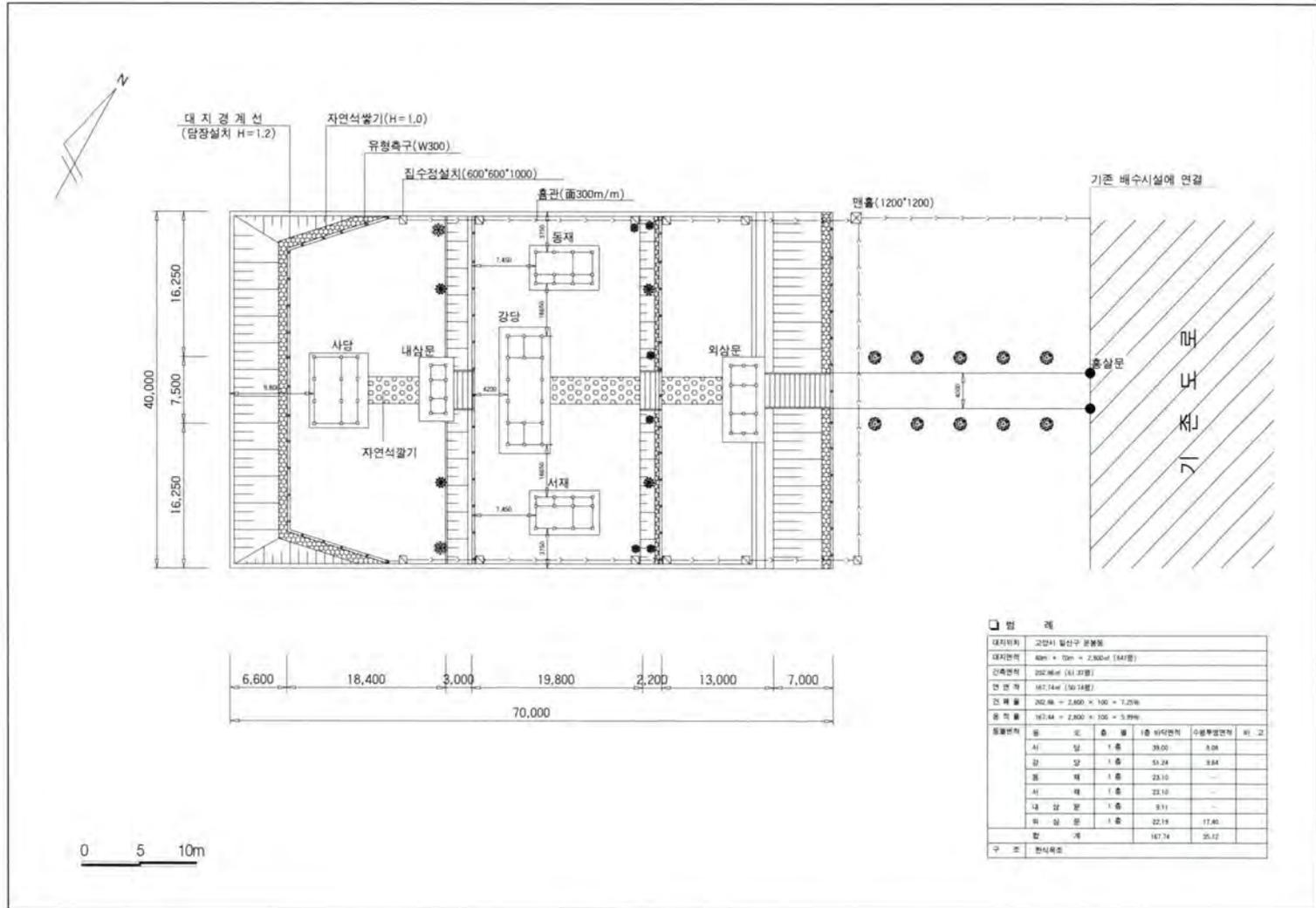
도면 5. 백자 제기

Ⅵ. 문봉서원 복원조사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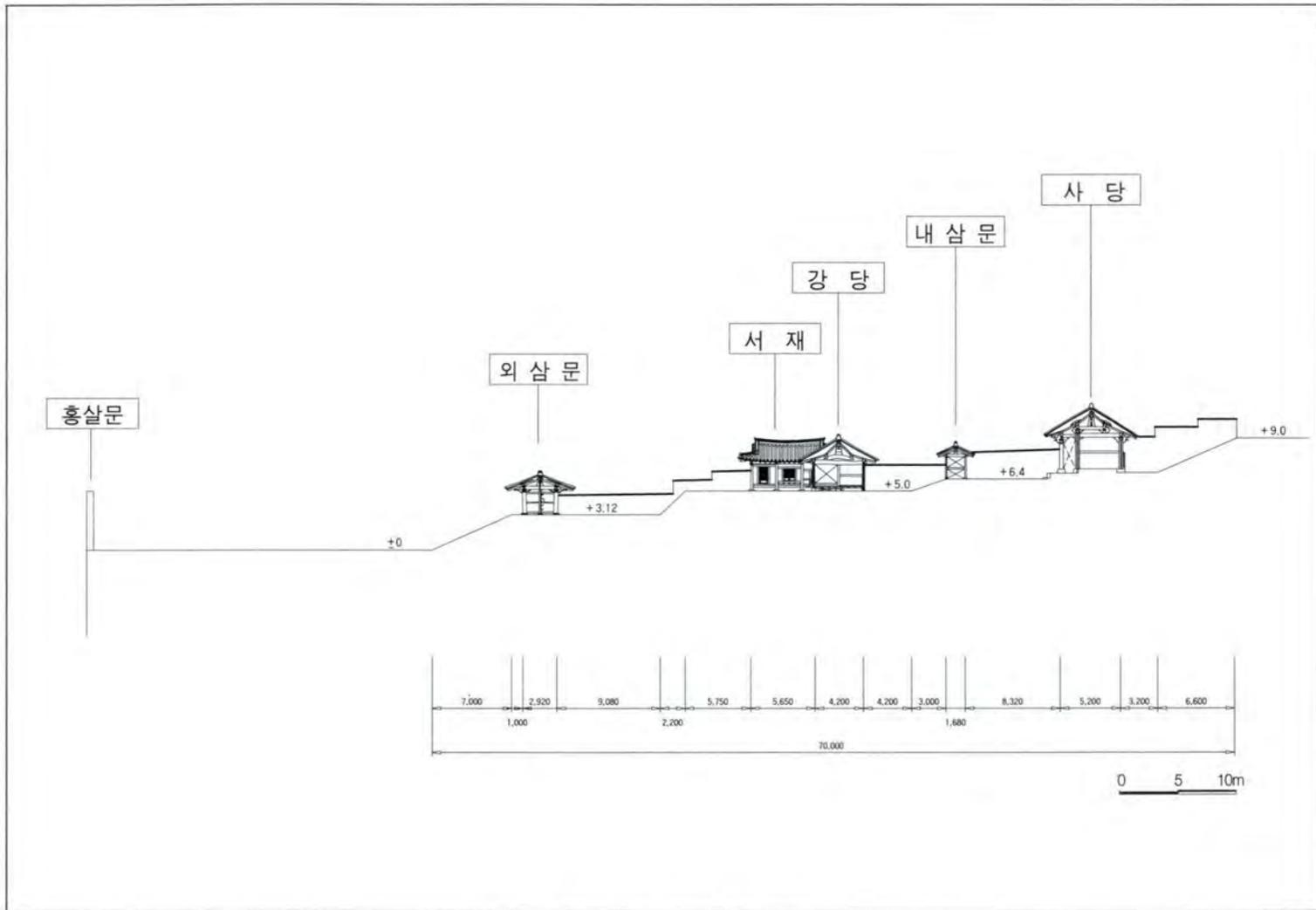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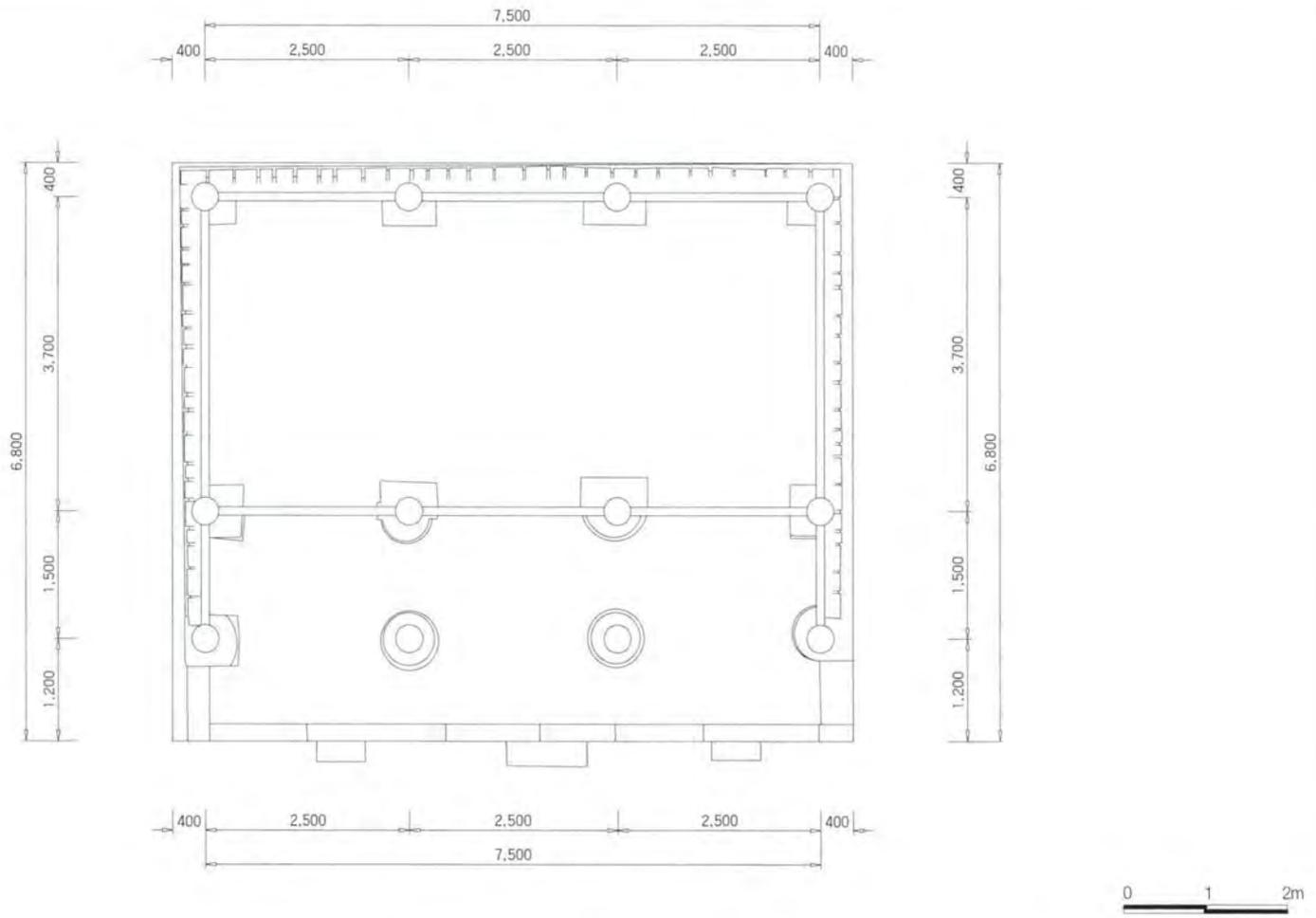
도면 1. 토지 이용 계획도 (1:400)



도면 2. 배치도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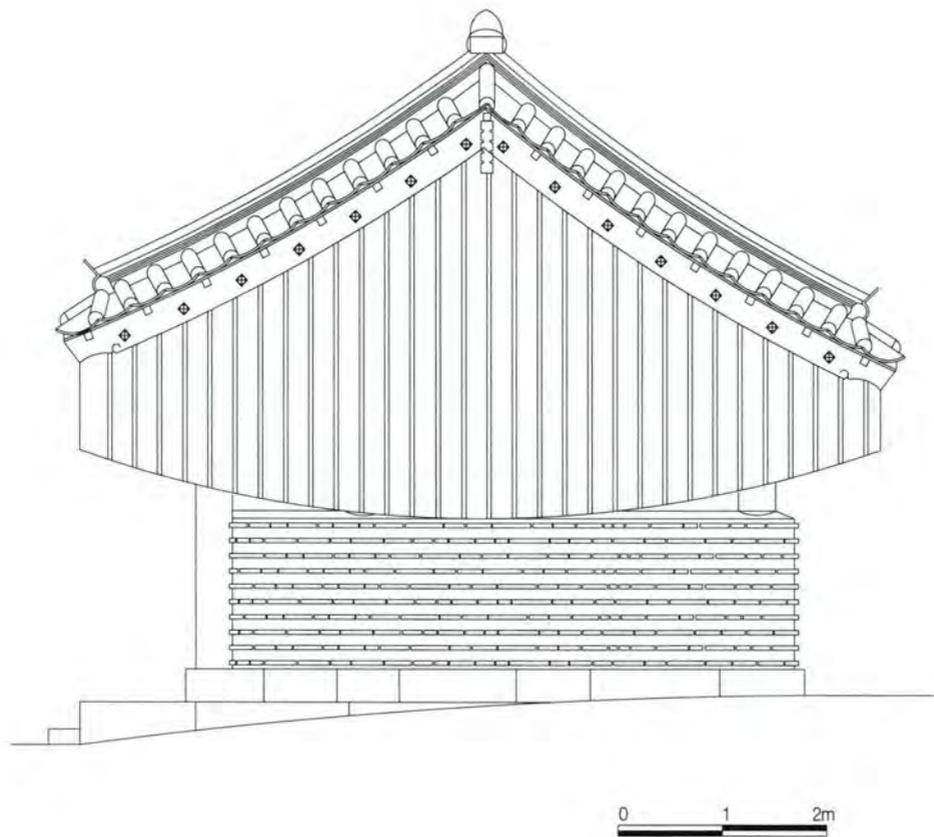
도면 3. 대지 종단면도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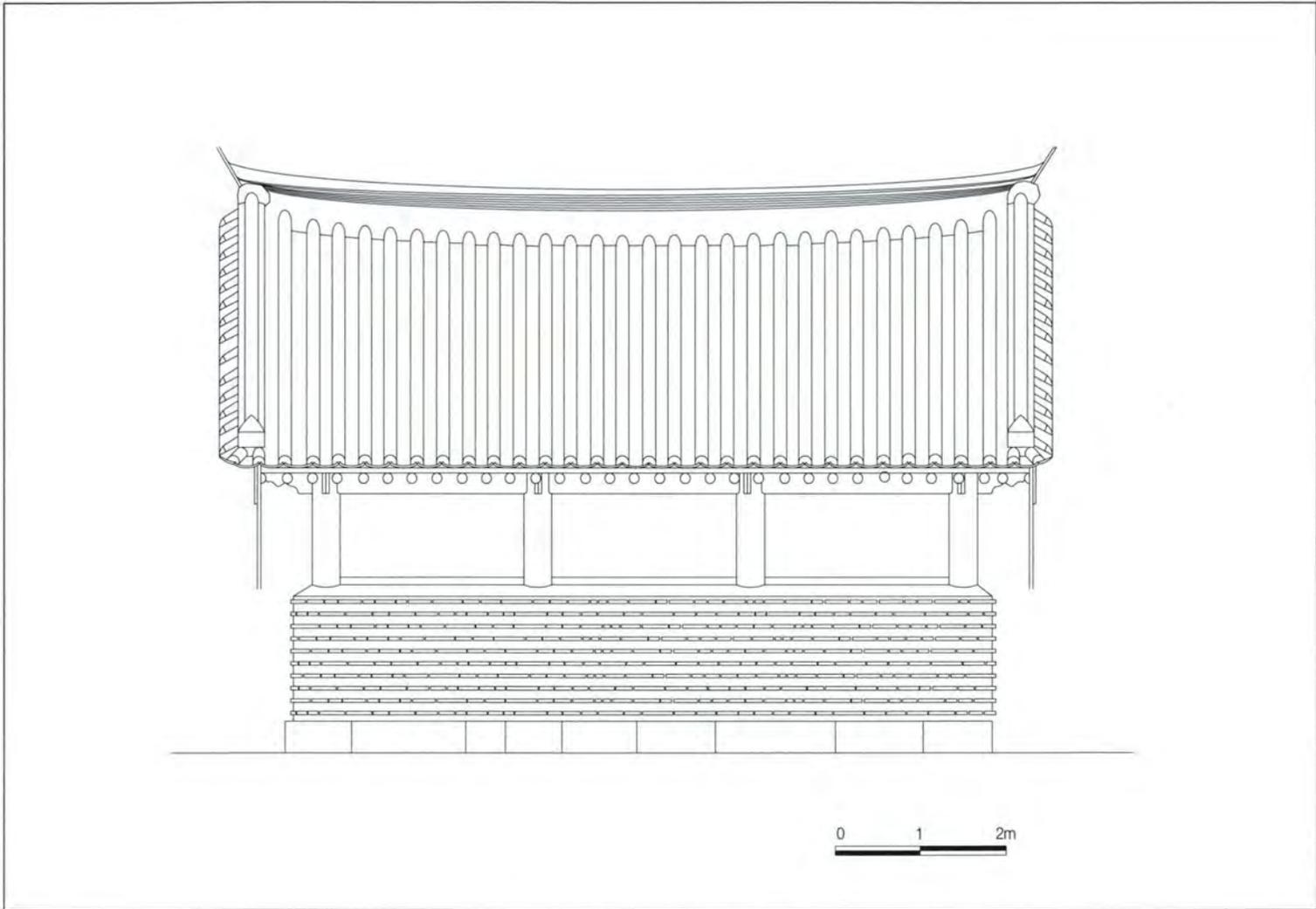
도면 4. 사당 평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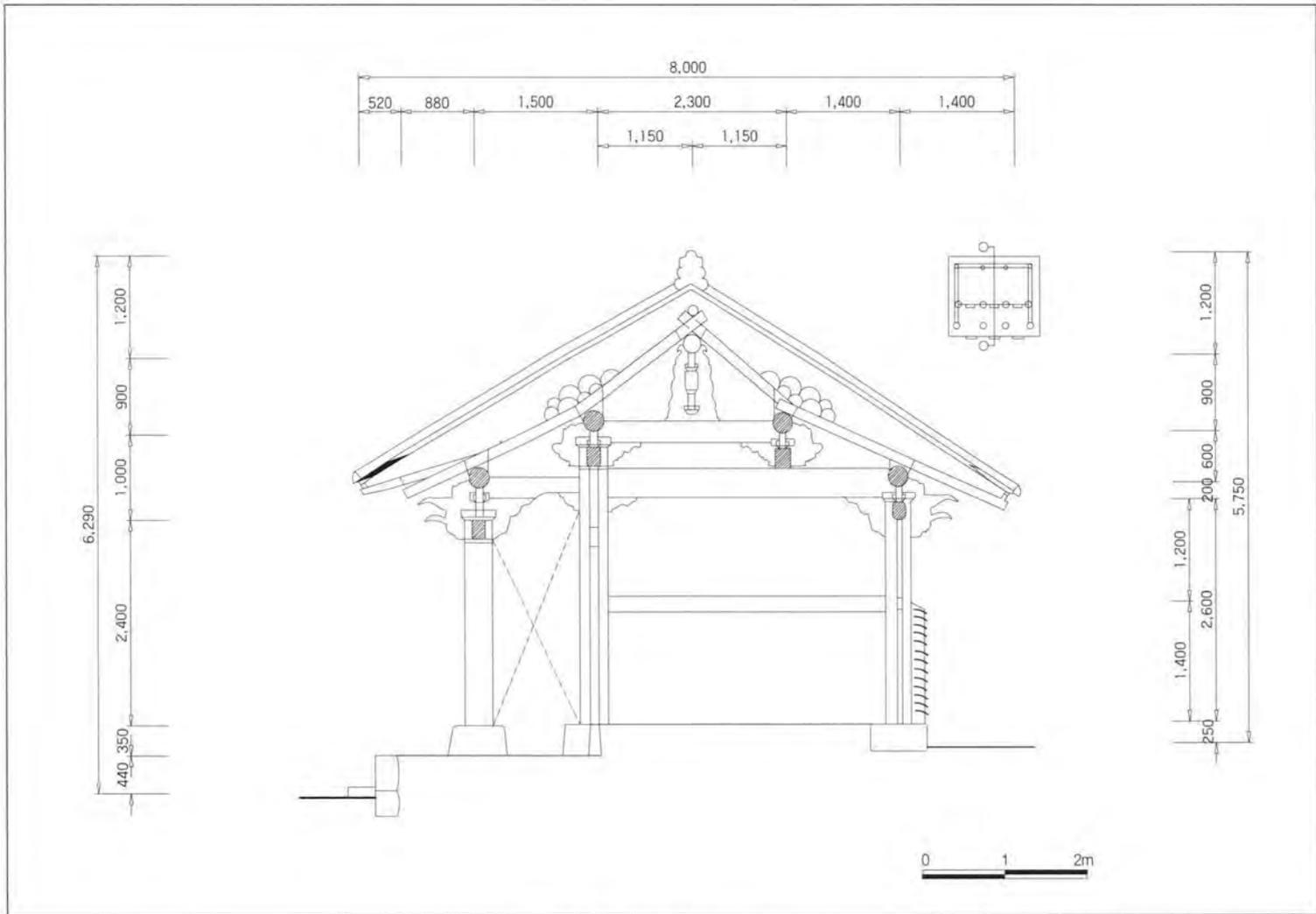
도면 5. 사당 정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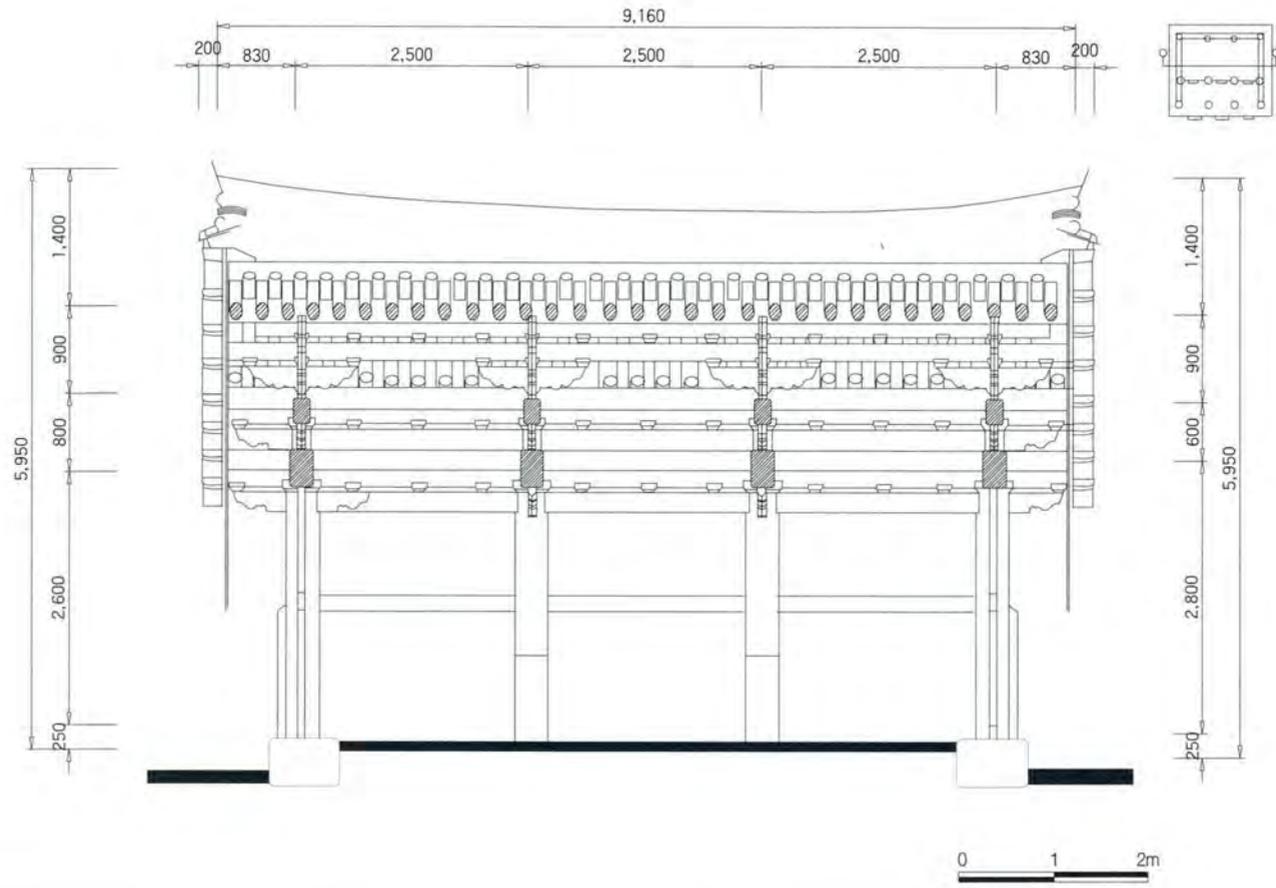
도면 6. 사당 측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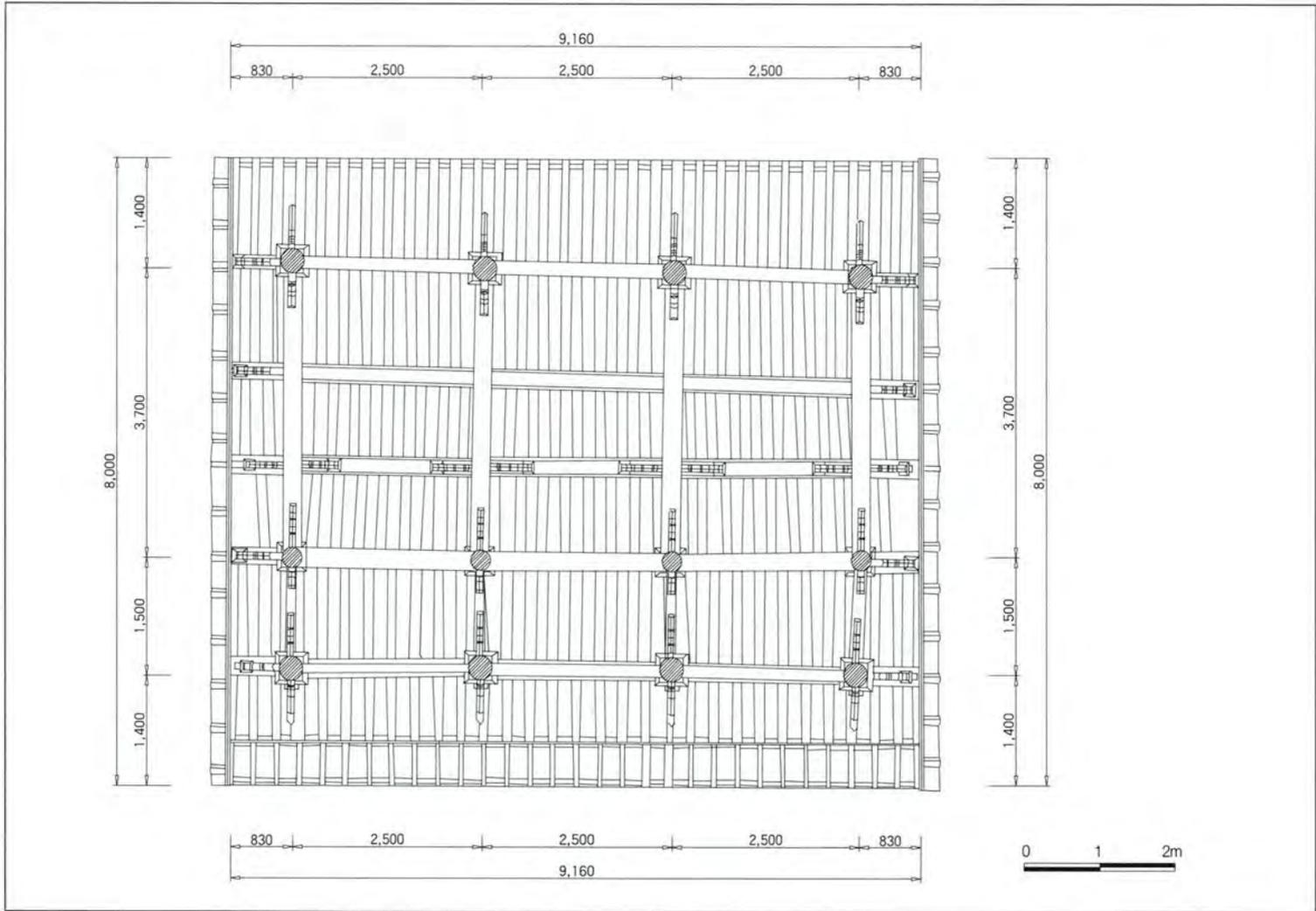
도면 7. 사당 배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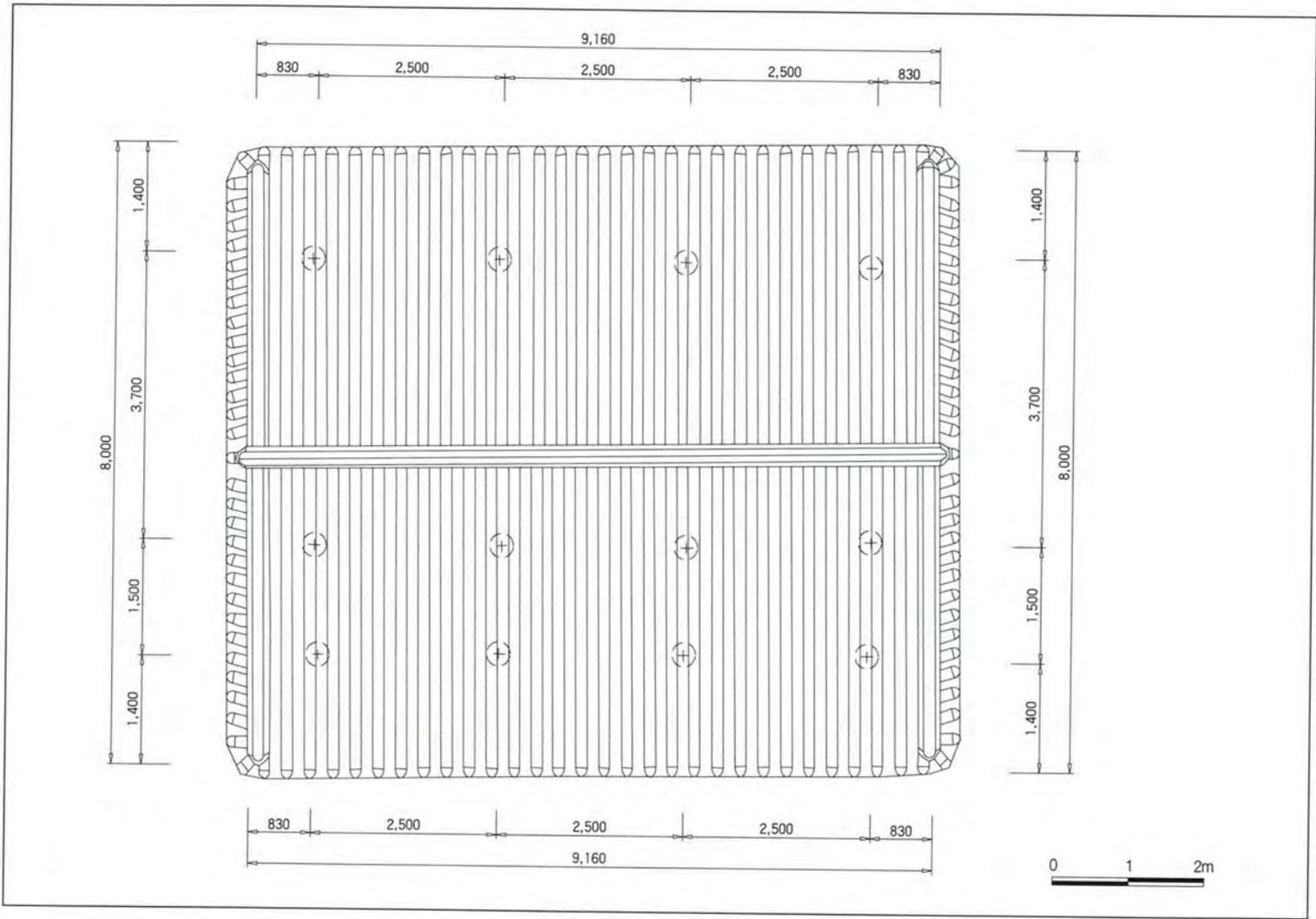
도면 8. 사당 종단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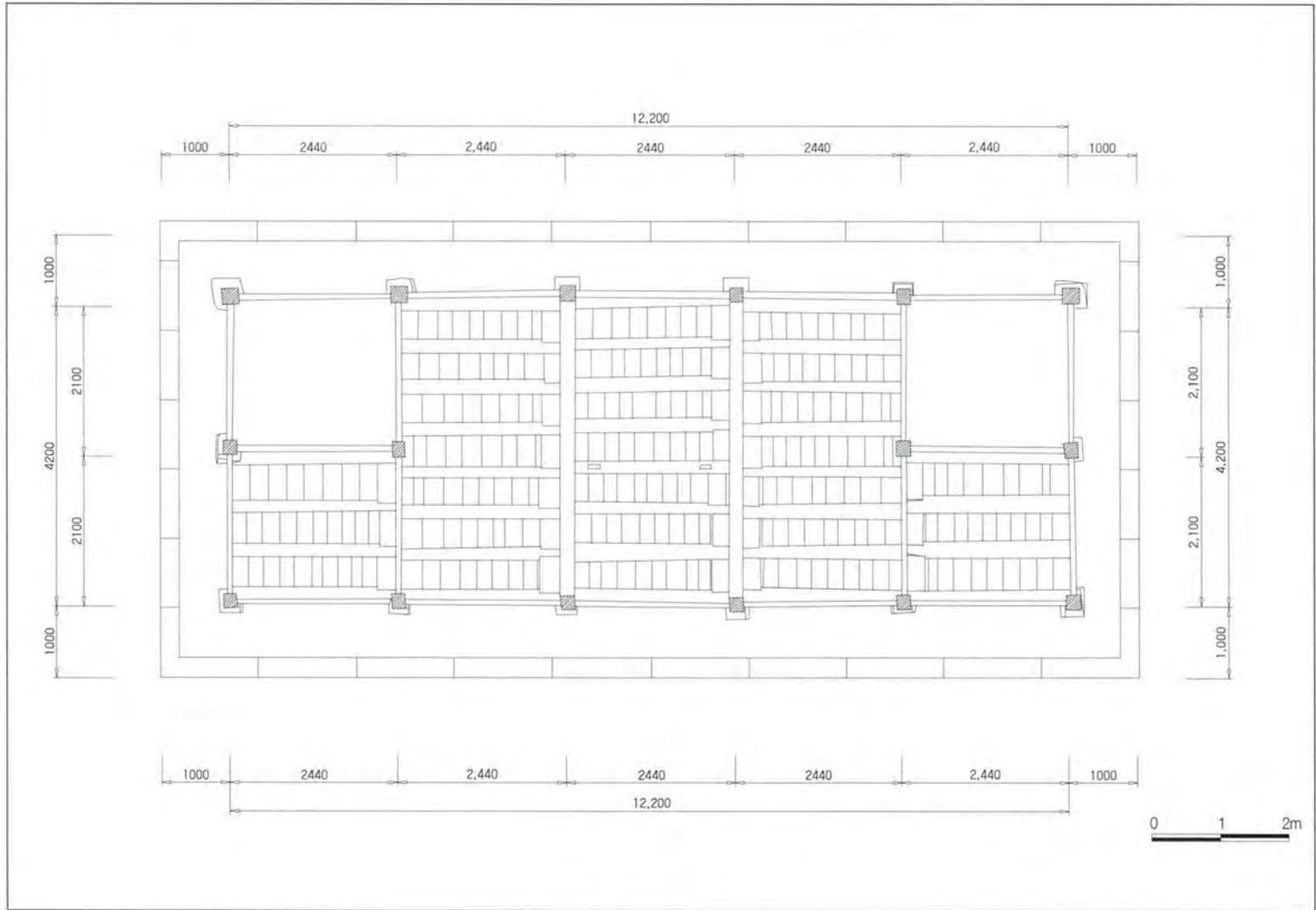
도면 9. 사당 횡단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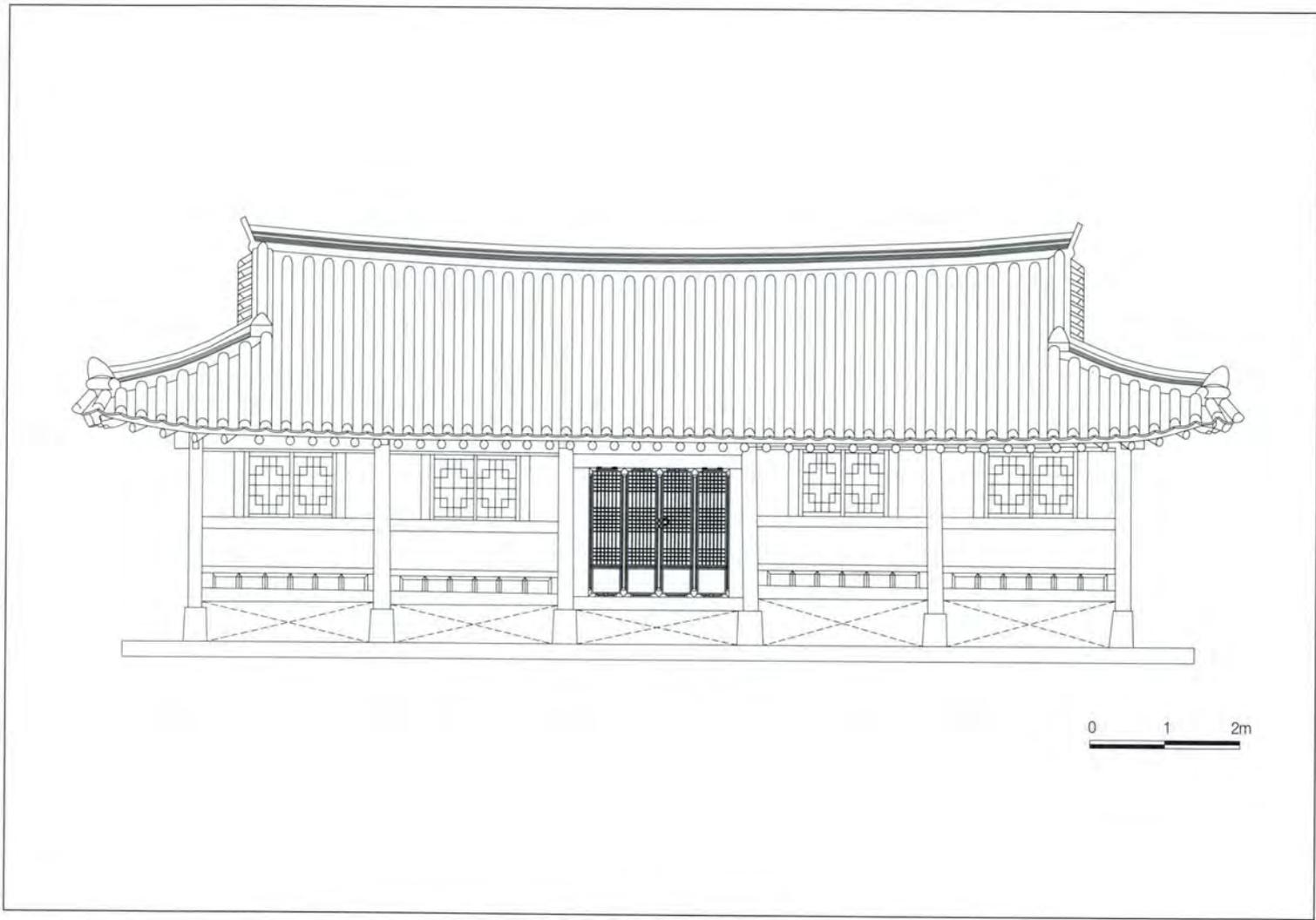
도면 10. 사당 양시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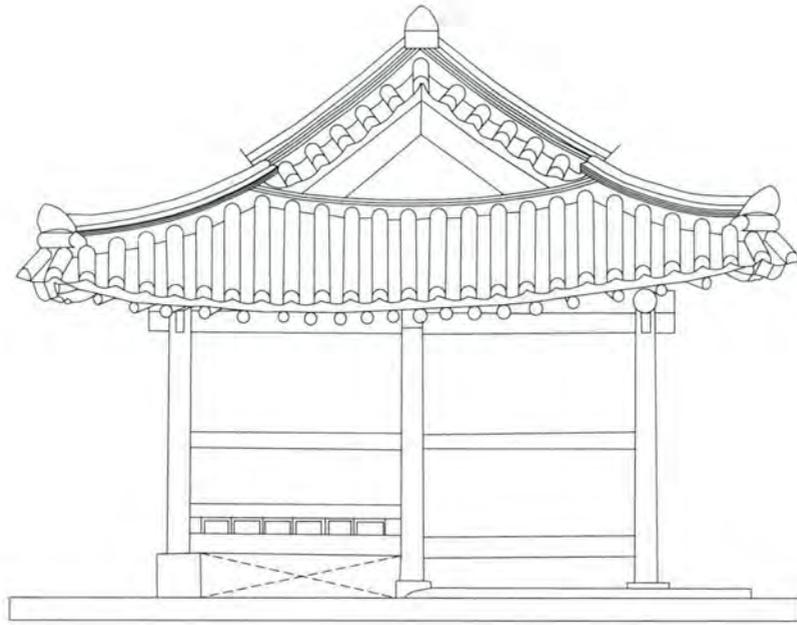
도면 11. 사당 와복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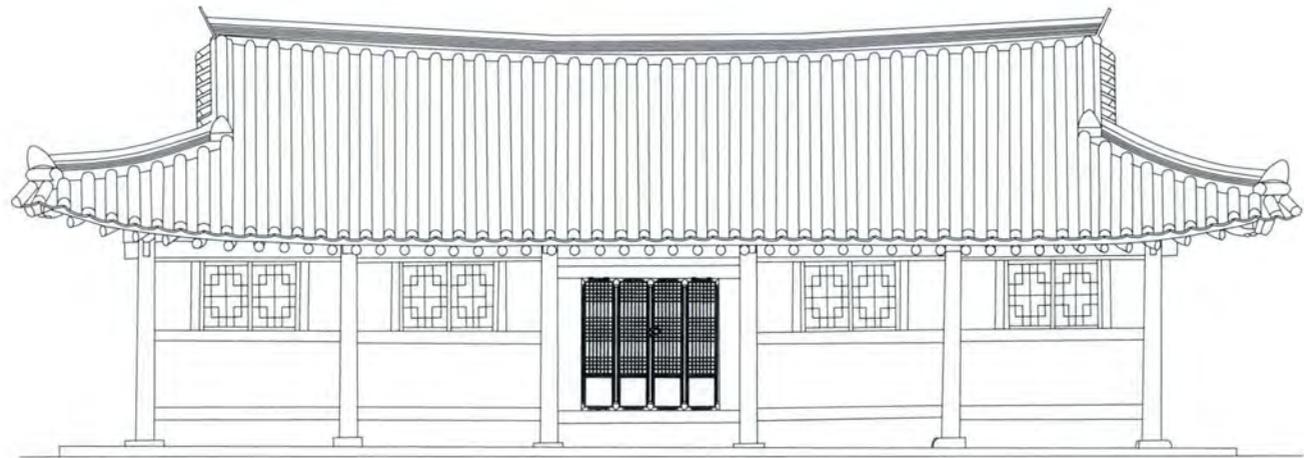
도면 12. 강당 평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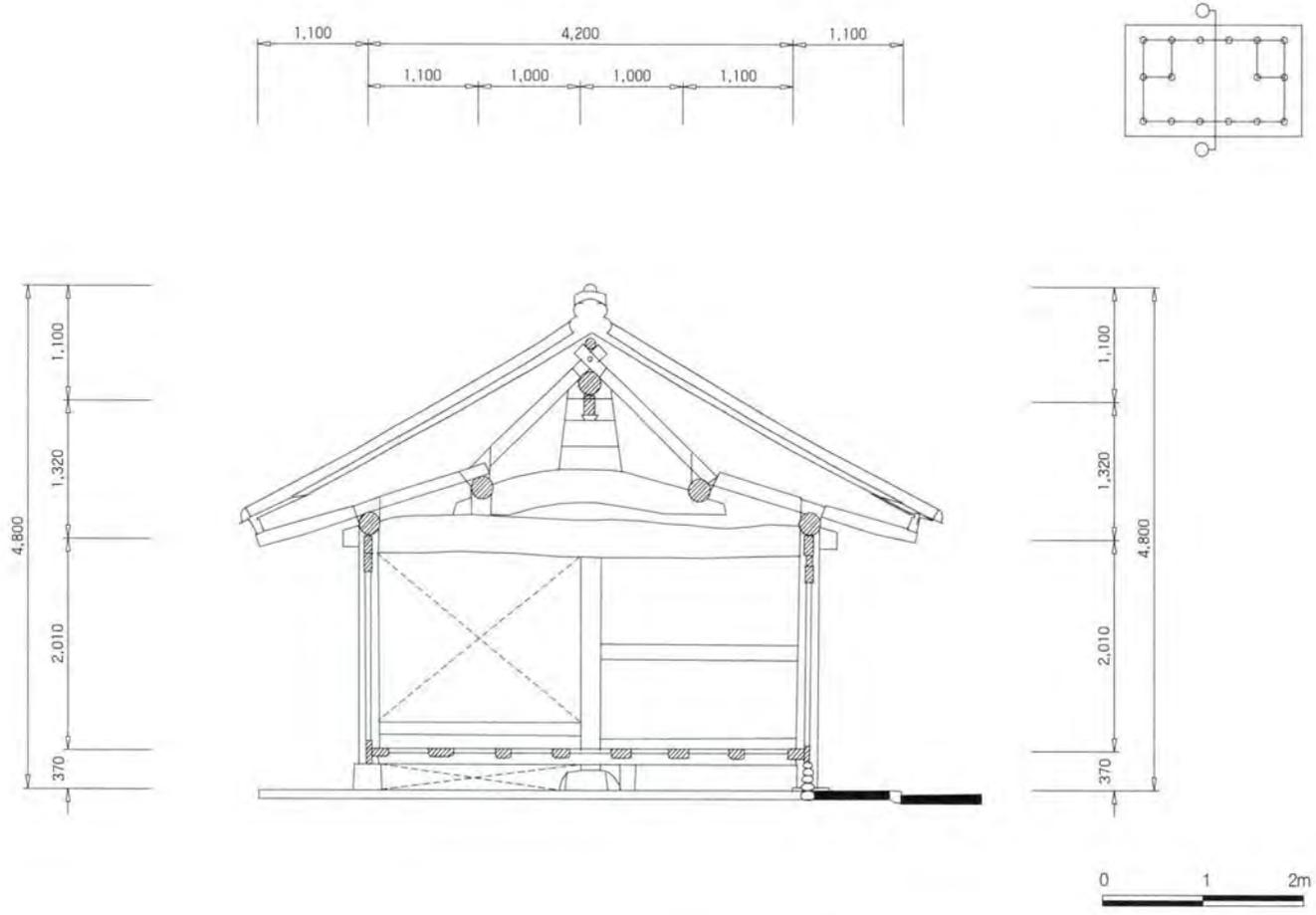
도면 13. 강당 정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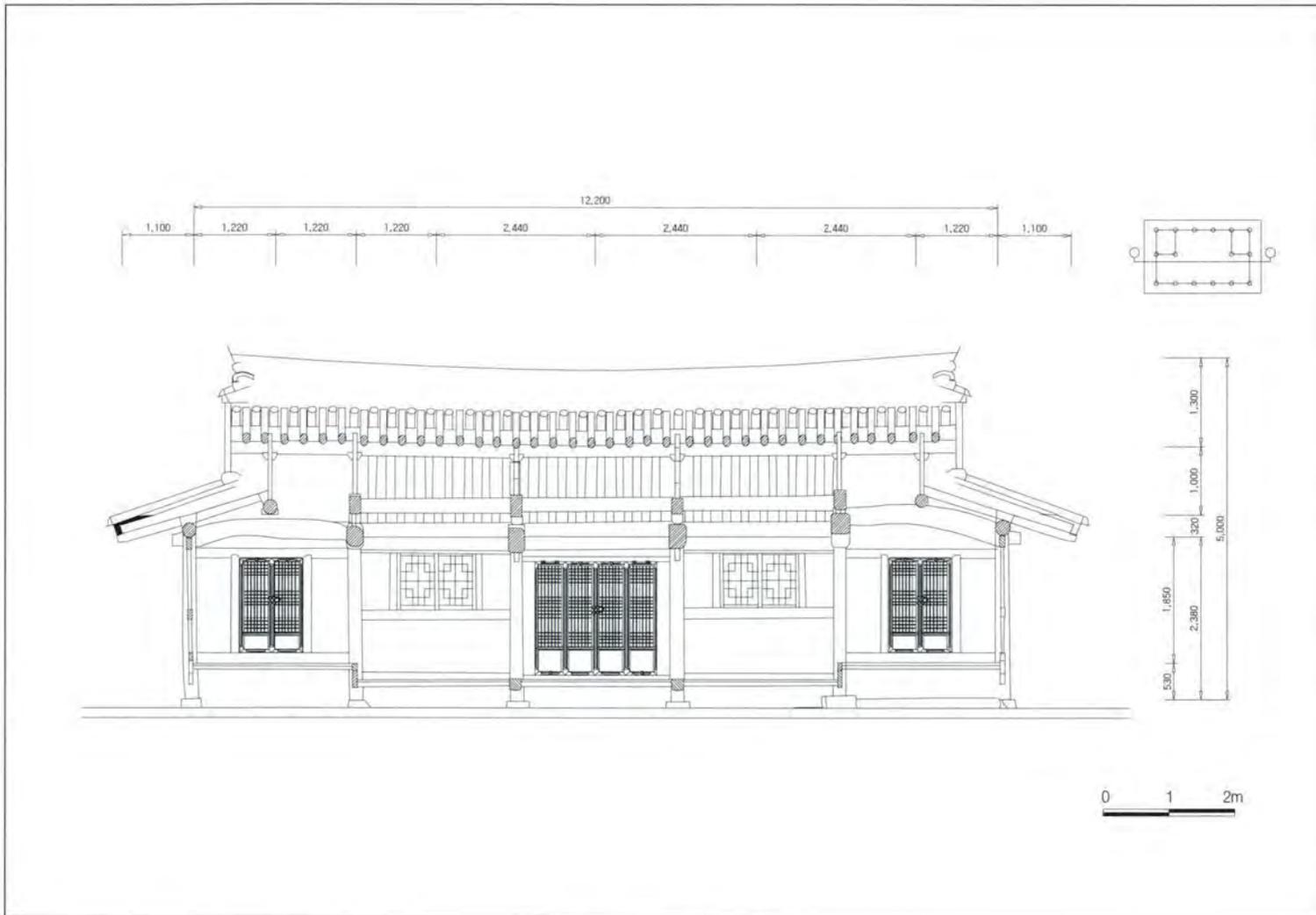
도면 14. 강당 측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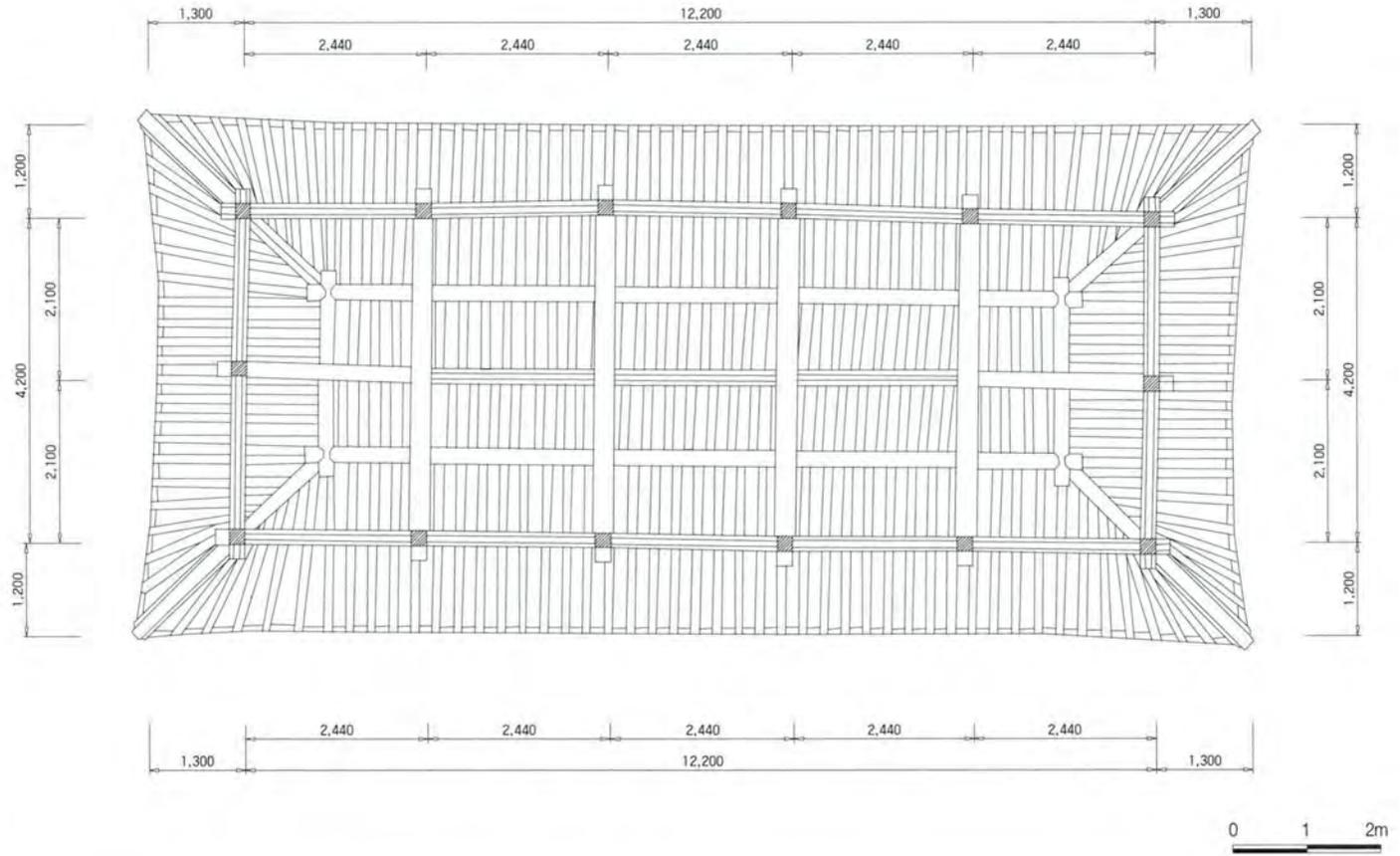
도면 15. 강당 배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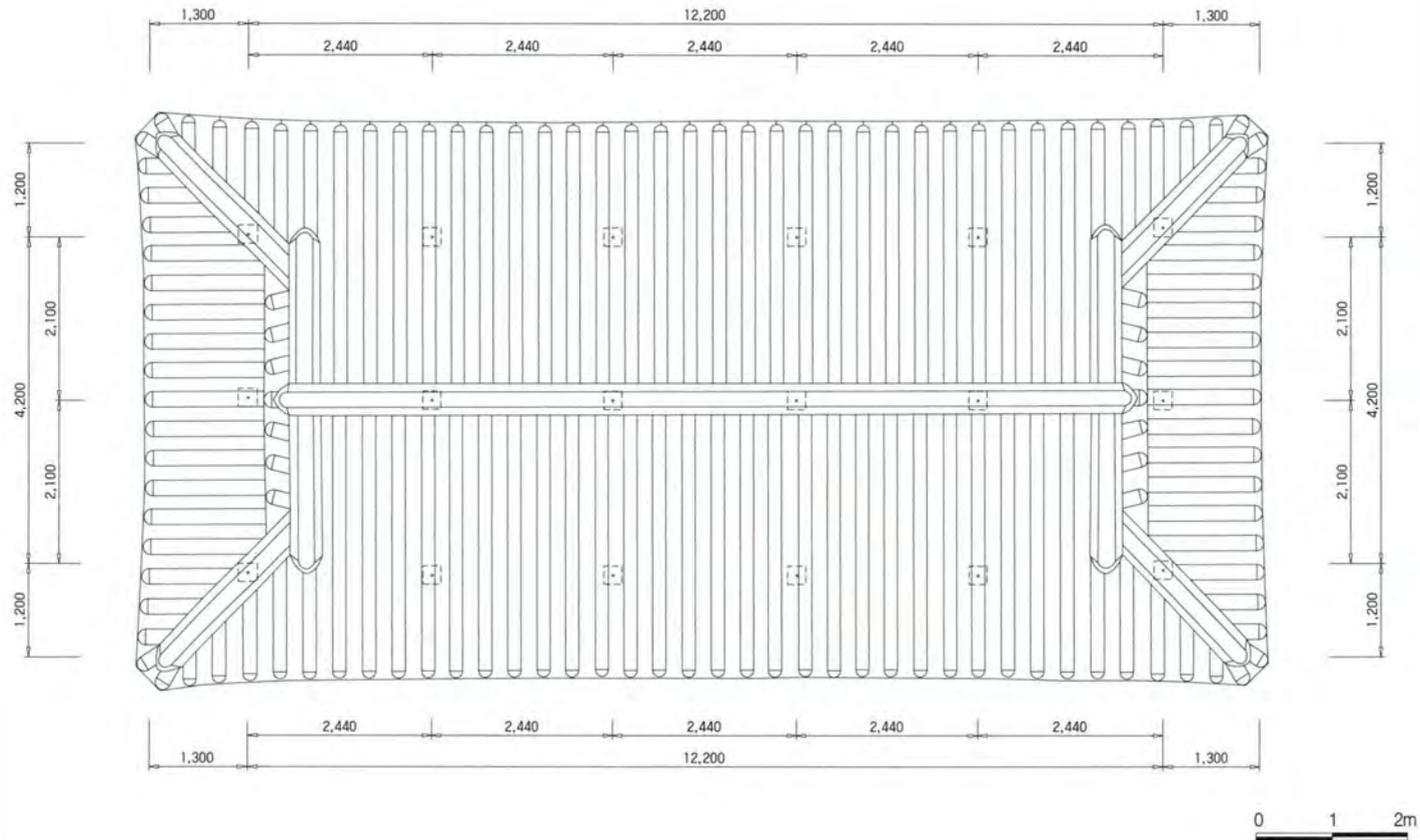
도면 16. 강당 종단면도(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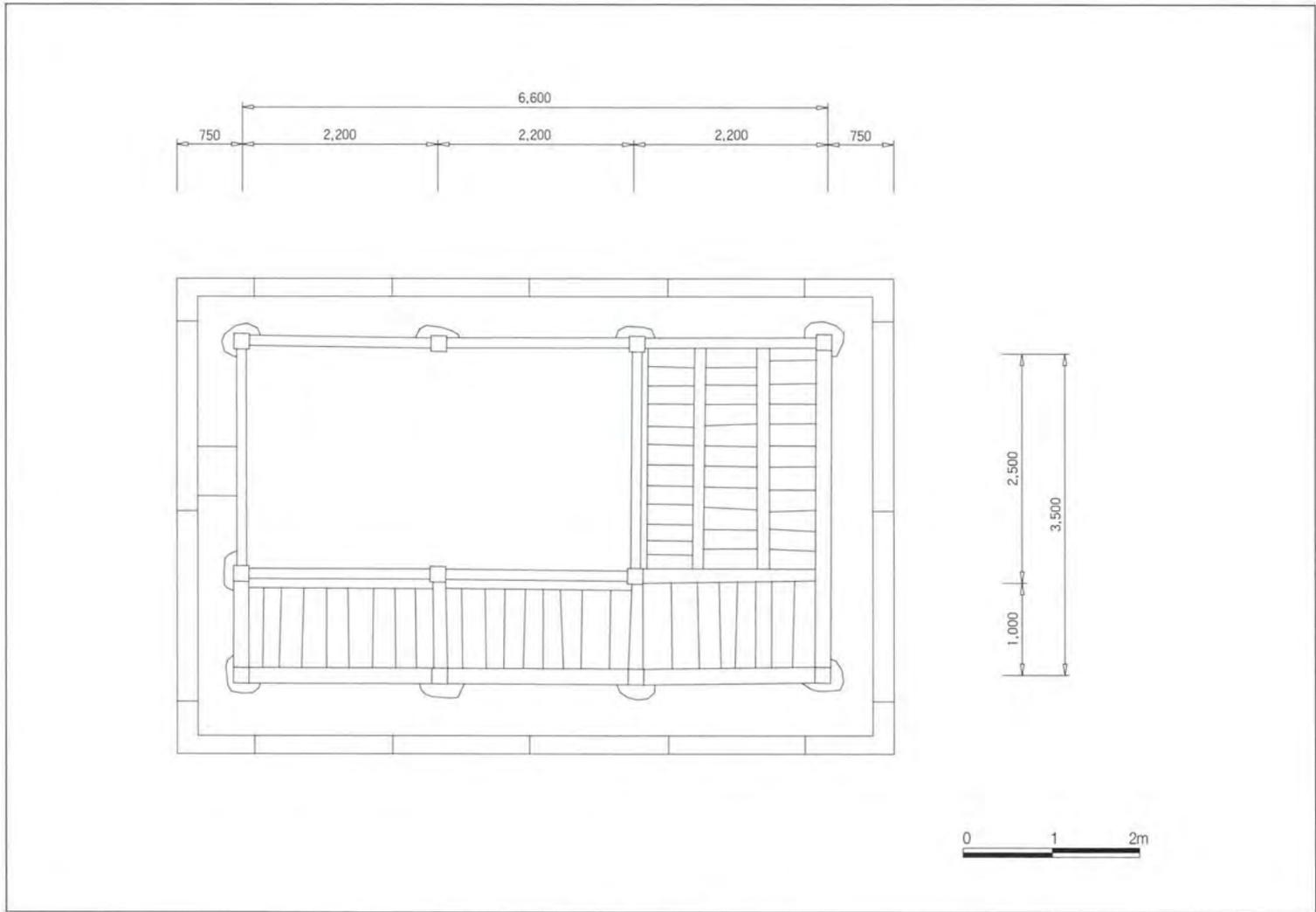
도면 17. 강당 횡단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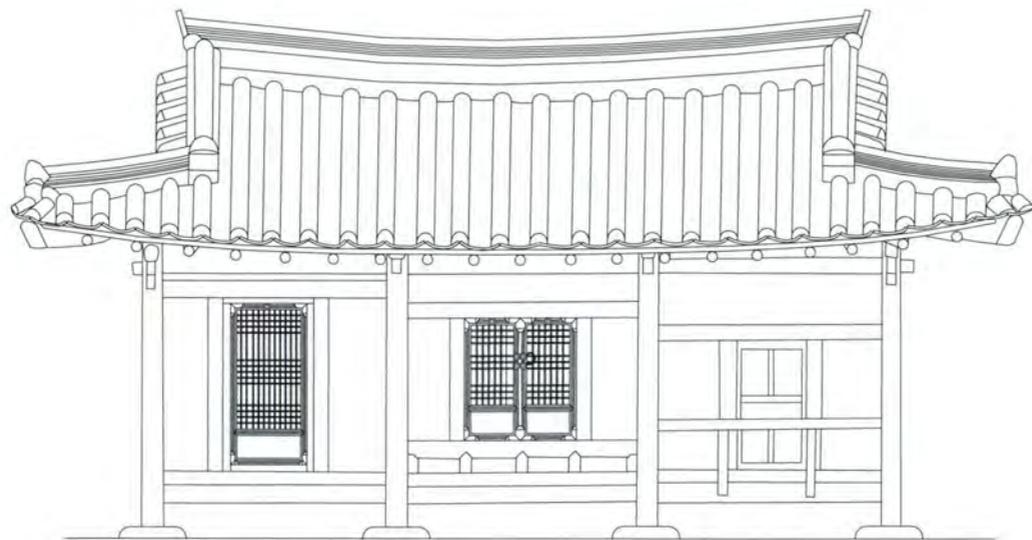
도면 18. 강당 양시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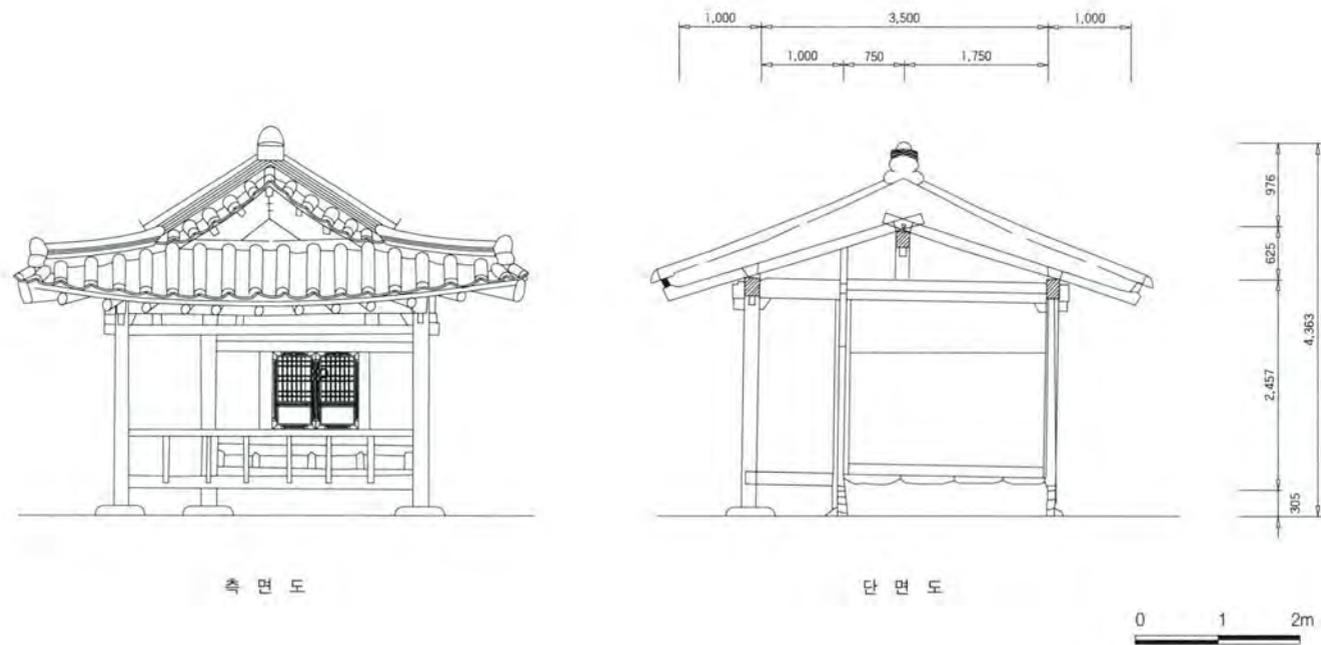
도면 19. 강당 외복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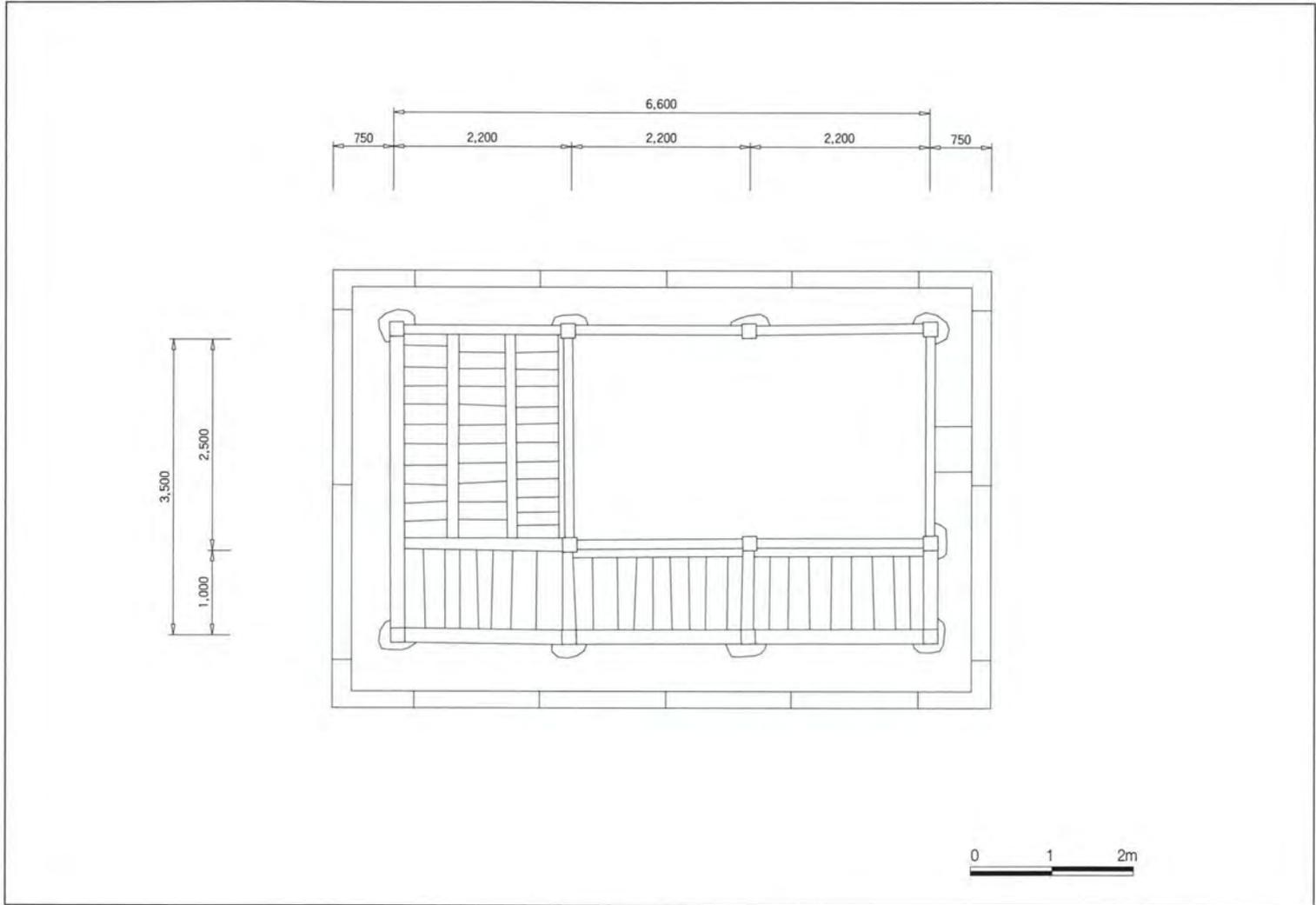
도면 20. 동재 평면도 (1:50)



도면 21. 동재 정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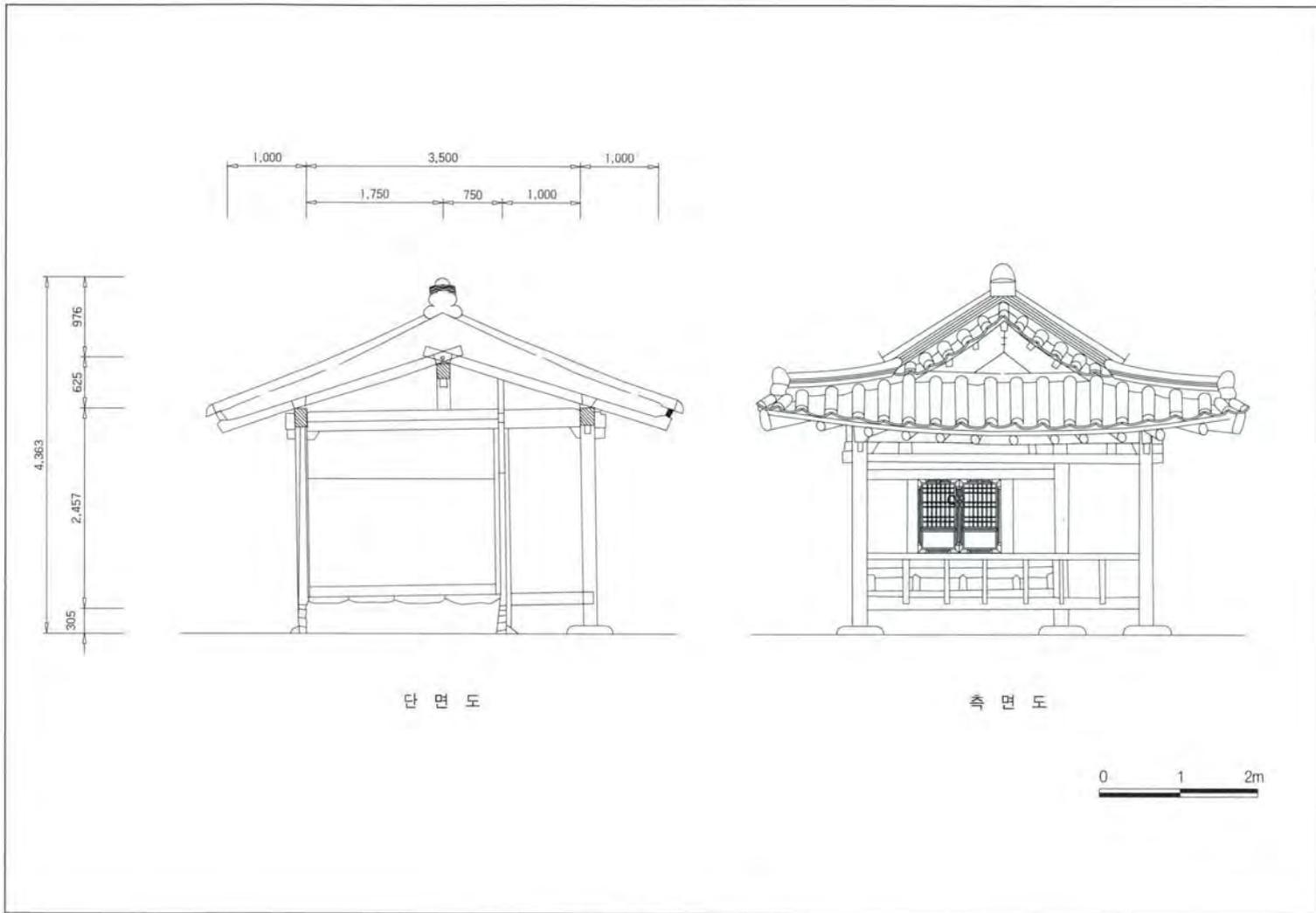
도면 22. 동재 측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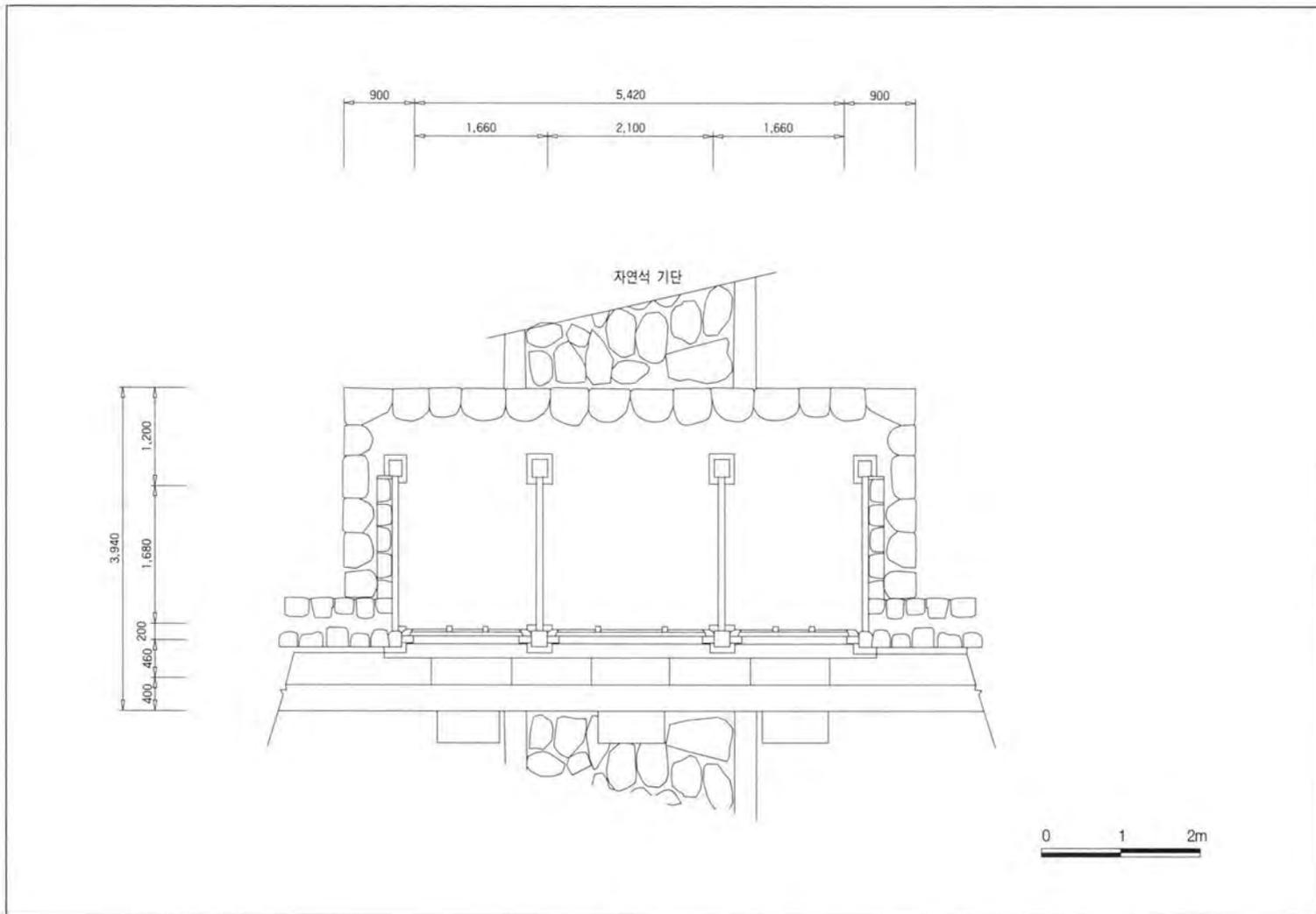
도면 23. 서재 평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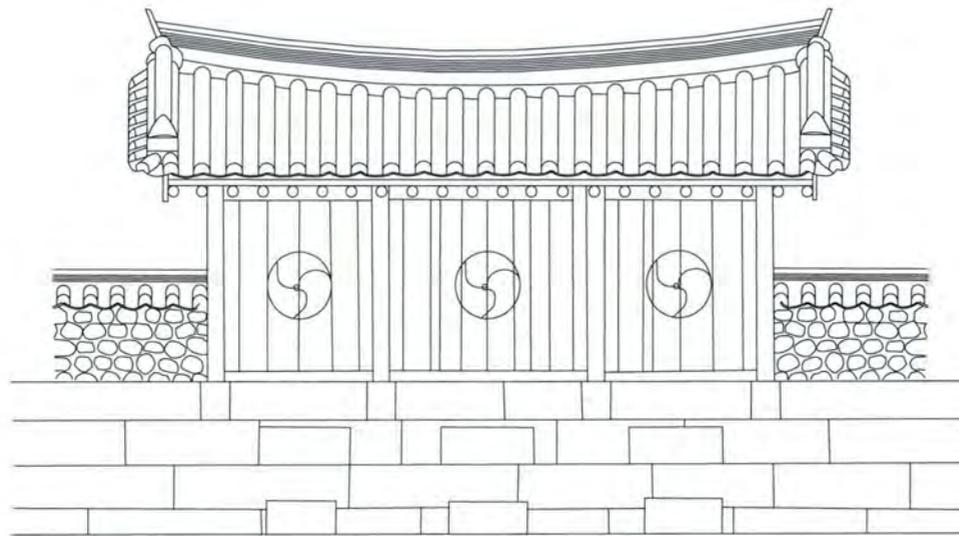
도면 24. 서재 정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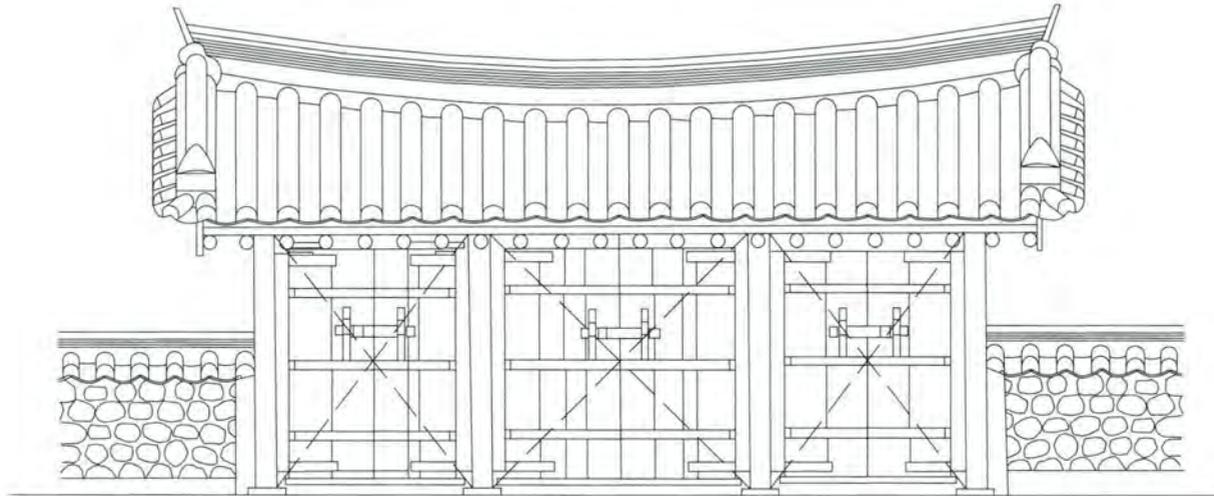
도면 25. 서재 측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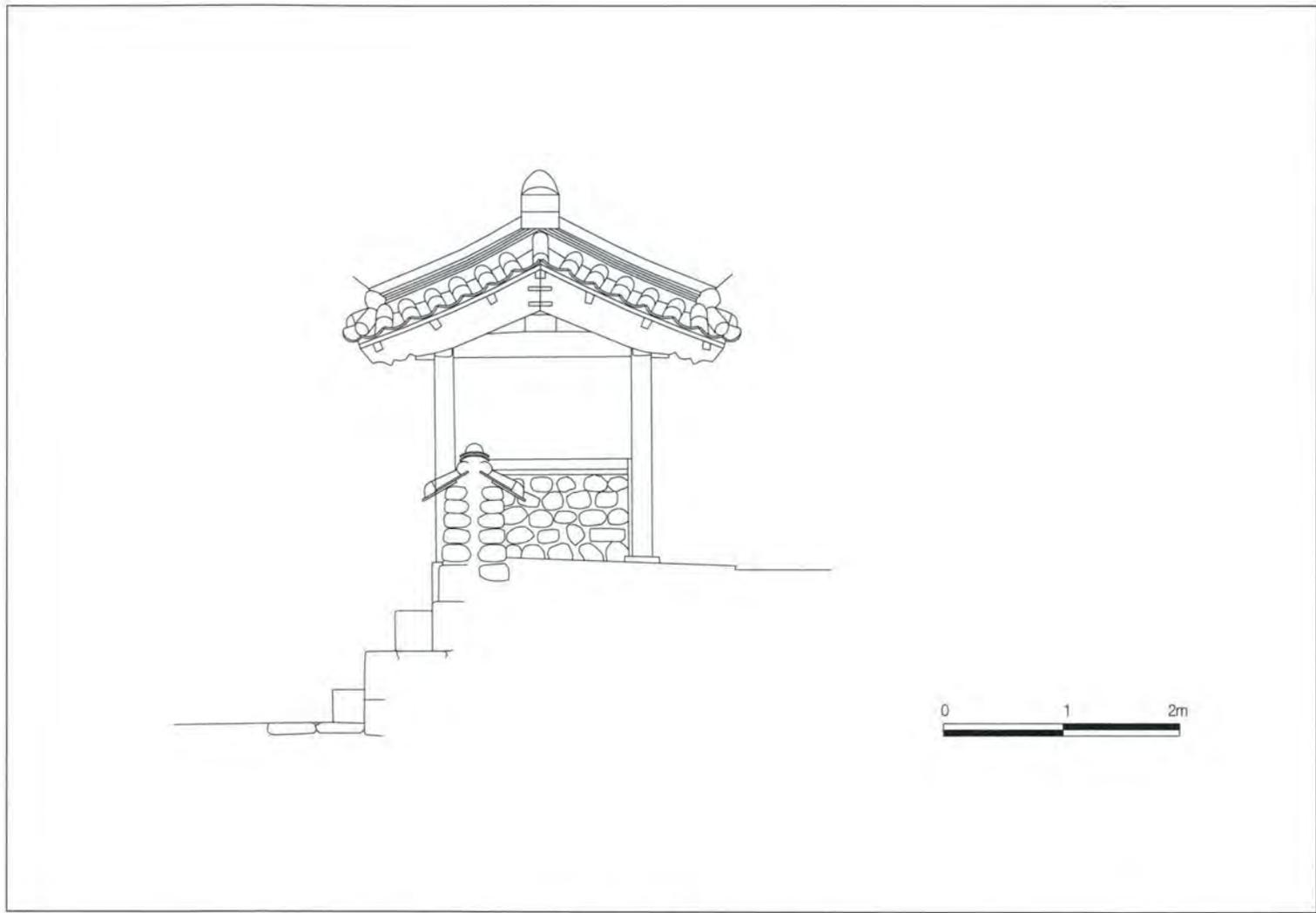
도면 26. 내삼문 평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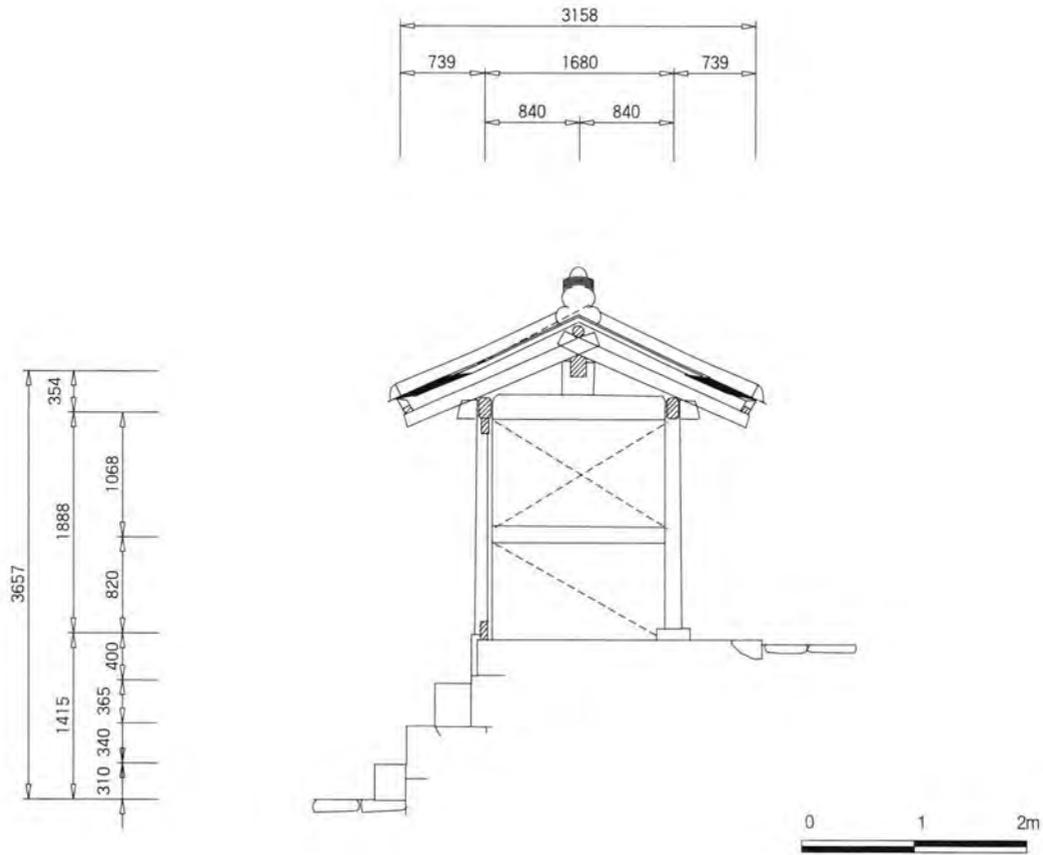
도면 27. 내삼문 정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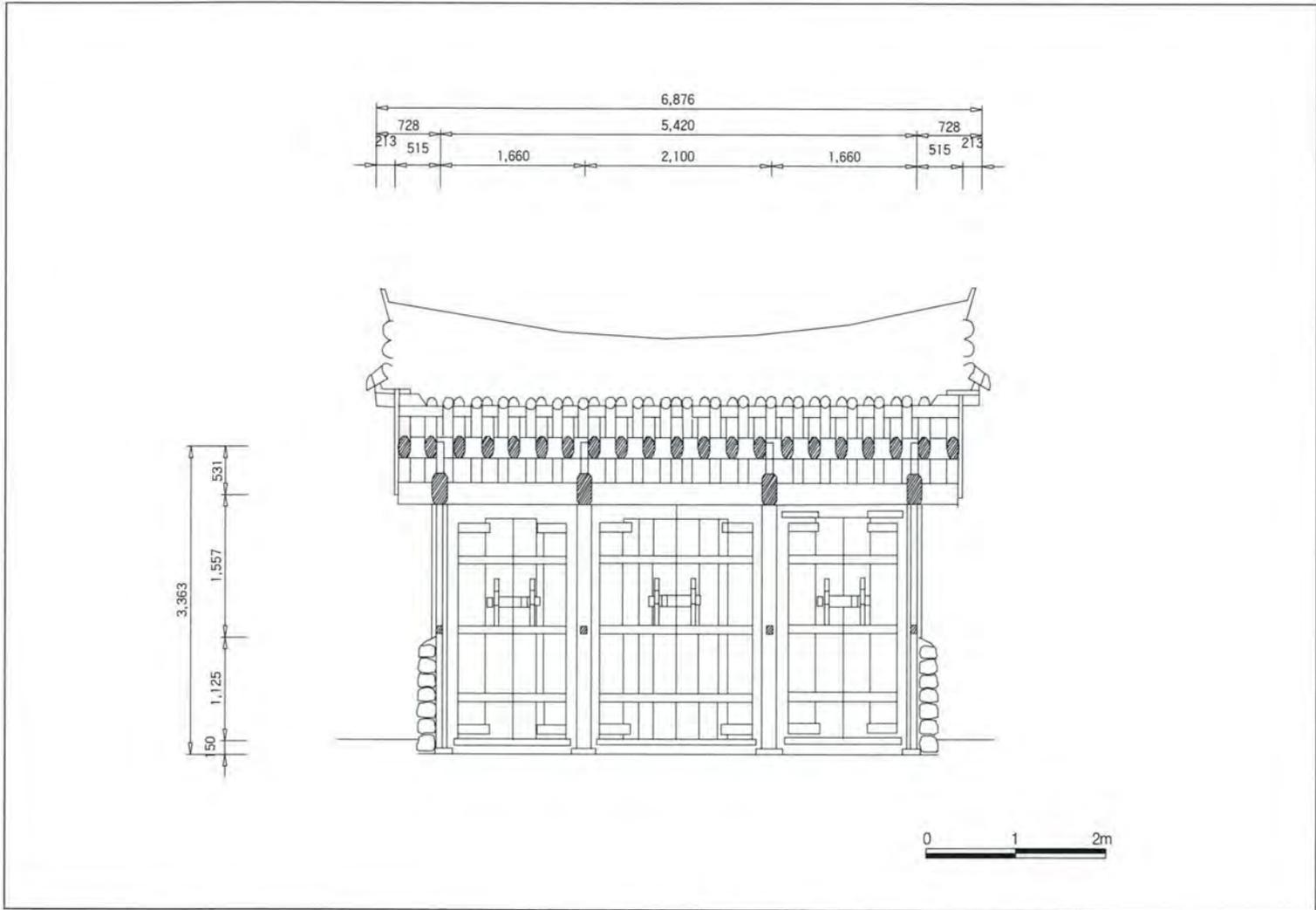
도면 28. 내삼문 배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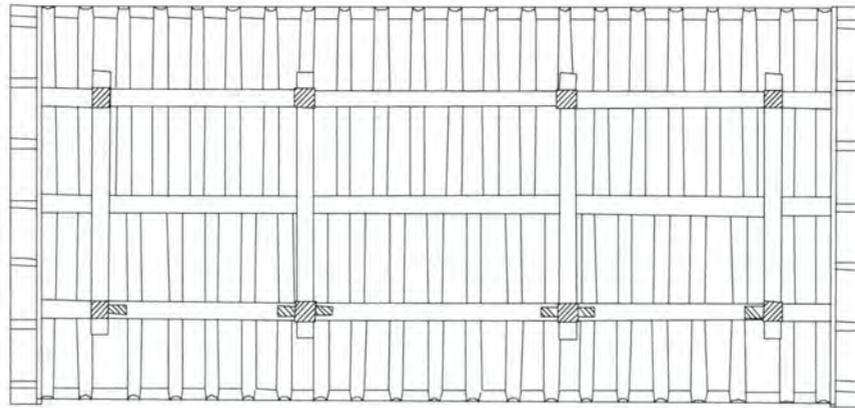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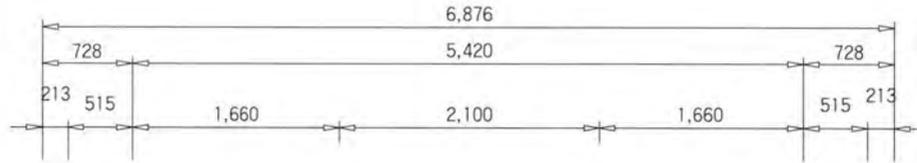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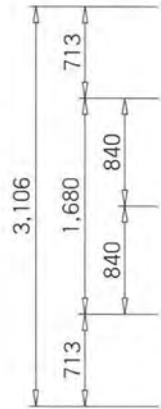
도면 29. 내삼문 측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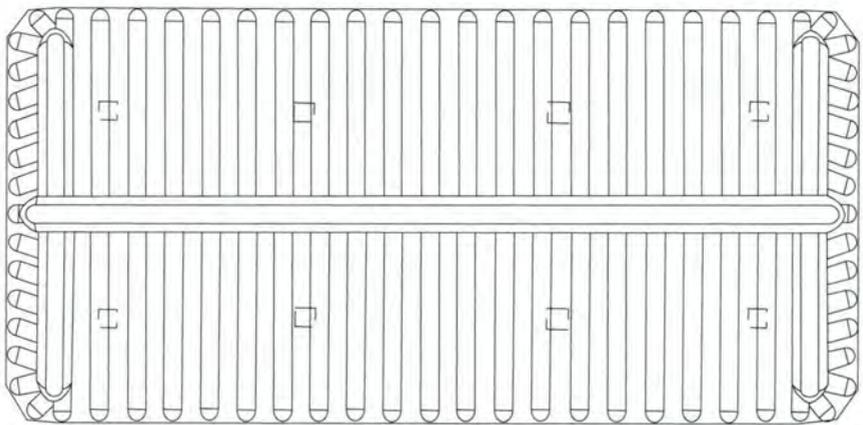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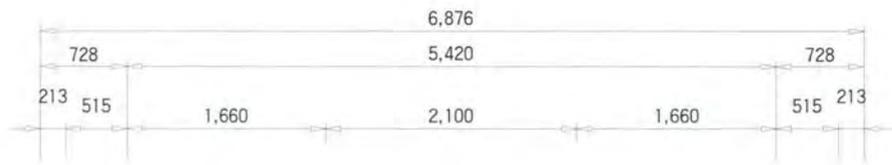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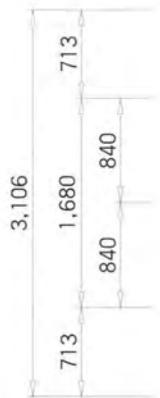
도면 30. 내삼문 종단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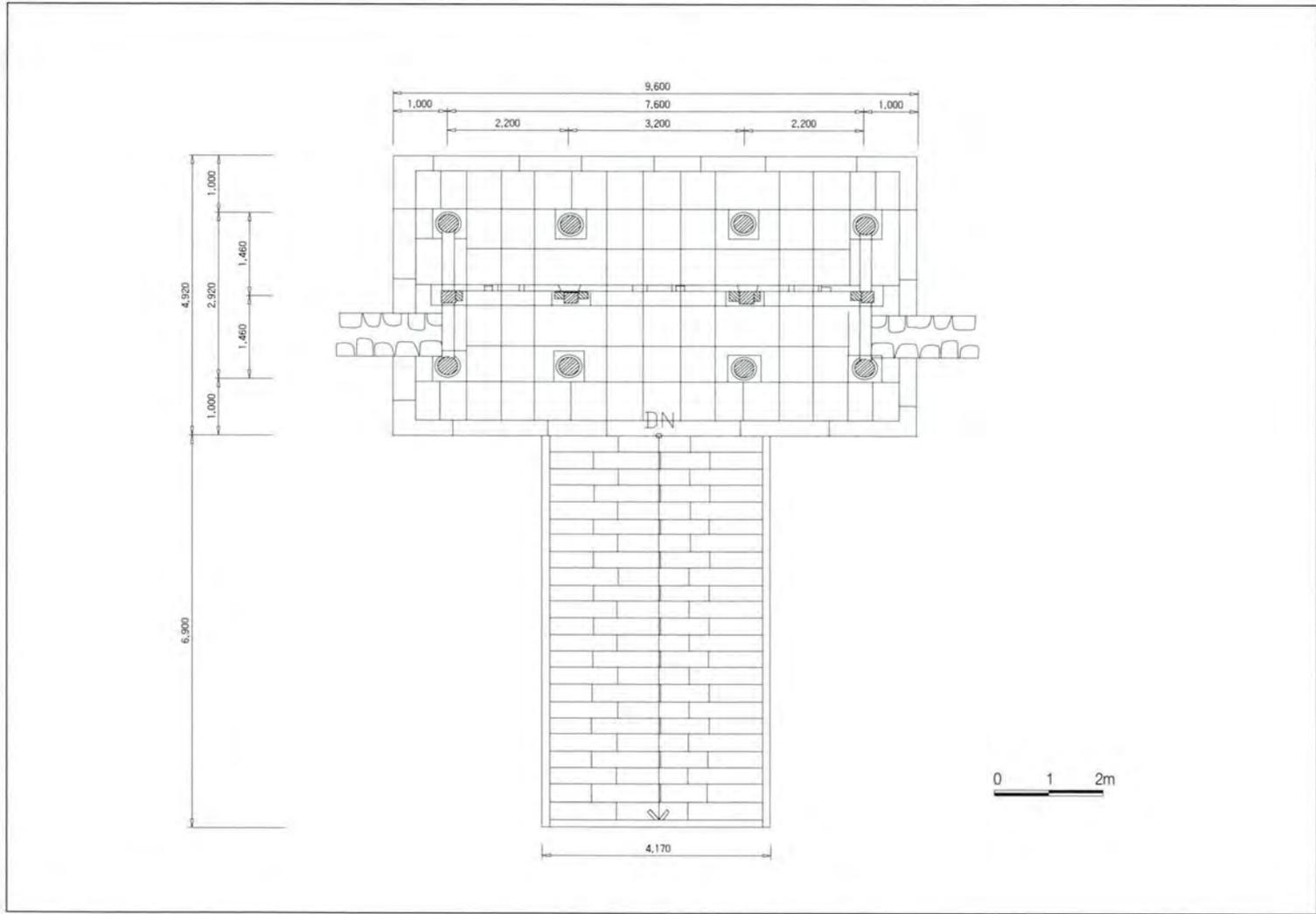
도면 31. 내삼문 횡단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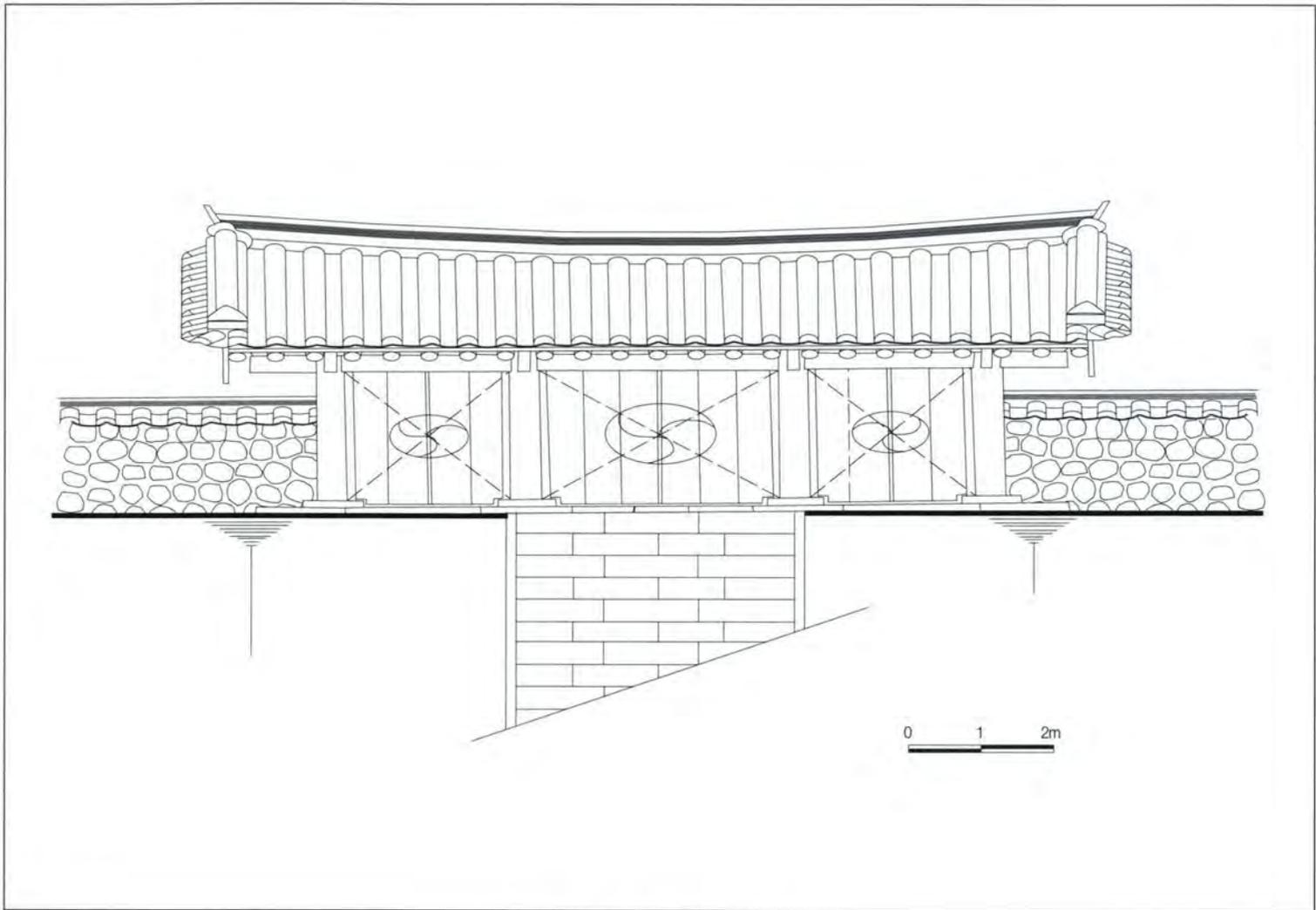
도면 32. 내삼문 양시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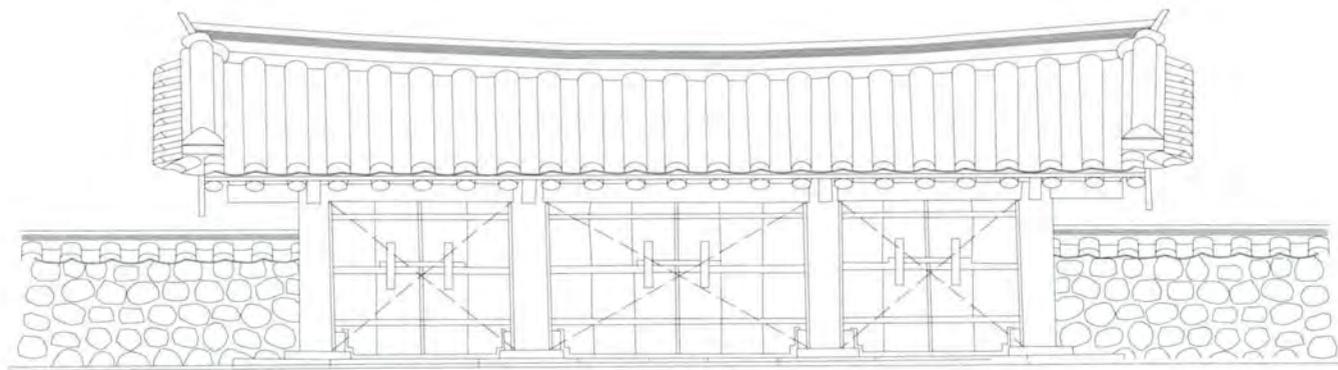
도면 33. 내삼문 와복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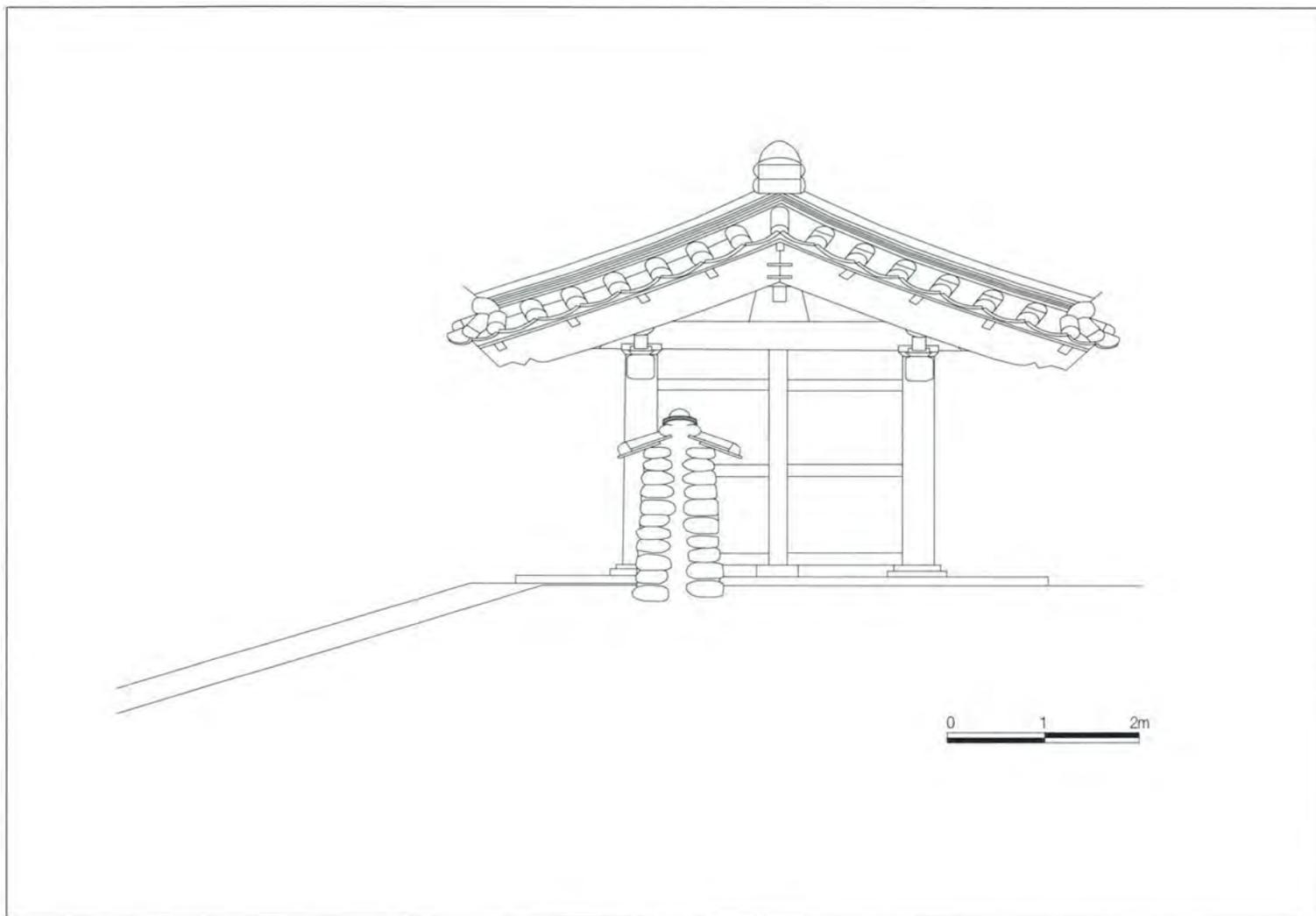
도면 34. 외삼문 평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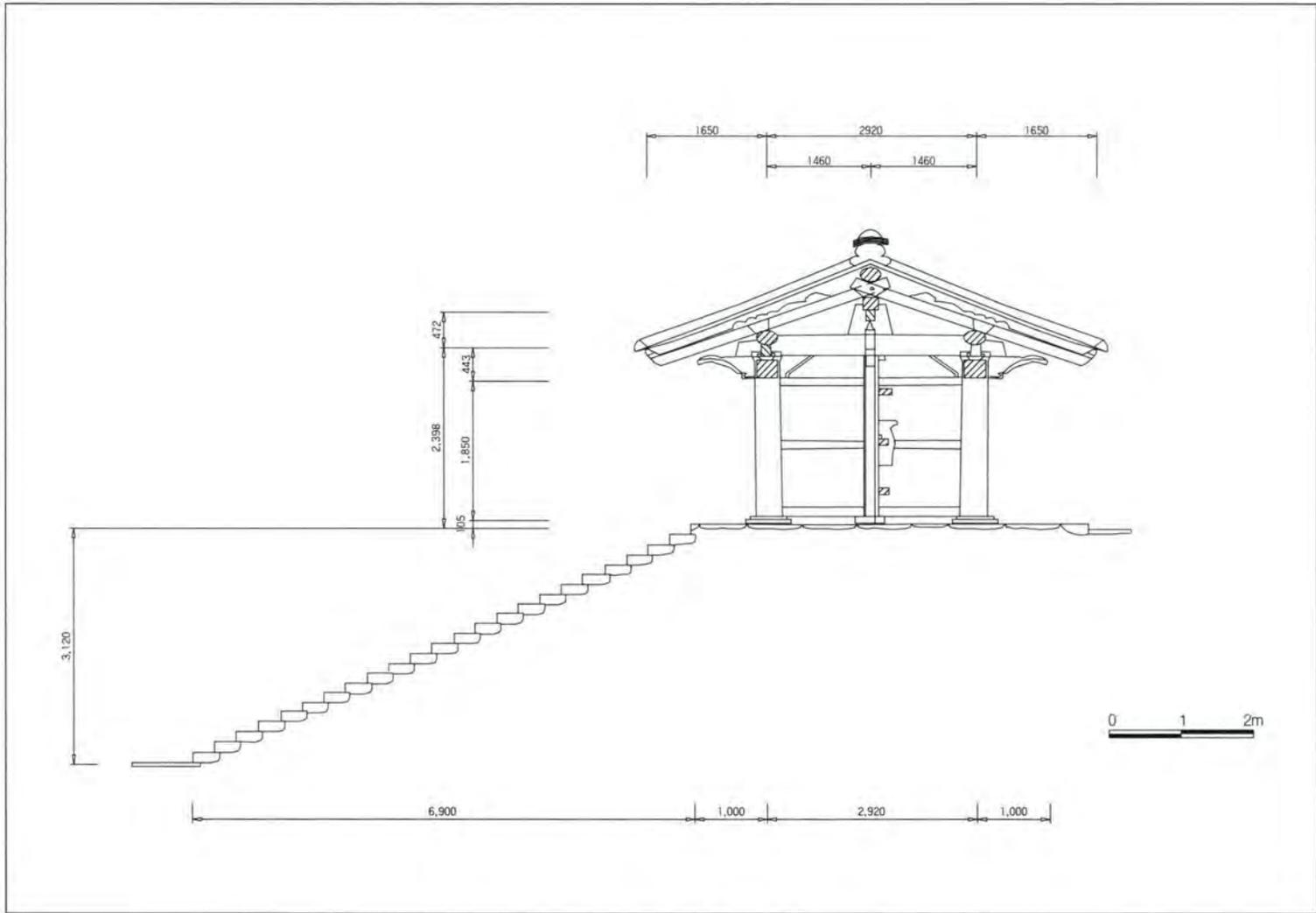
도면 35. 외삼문 정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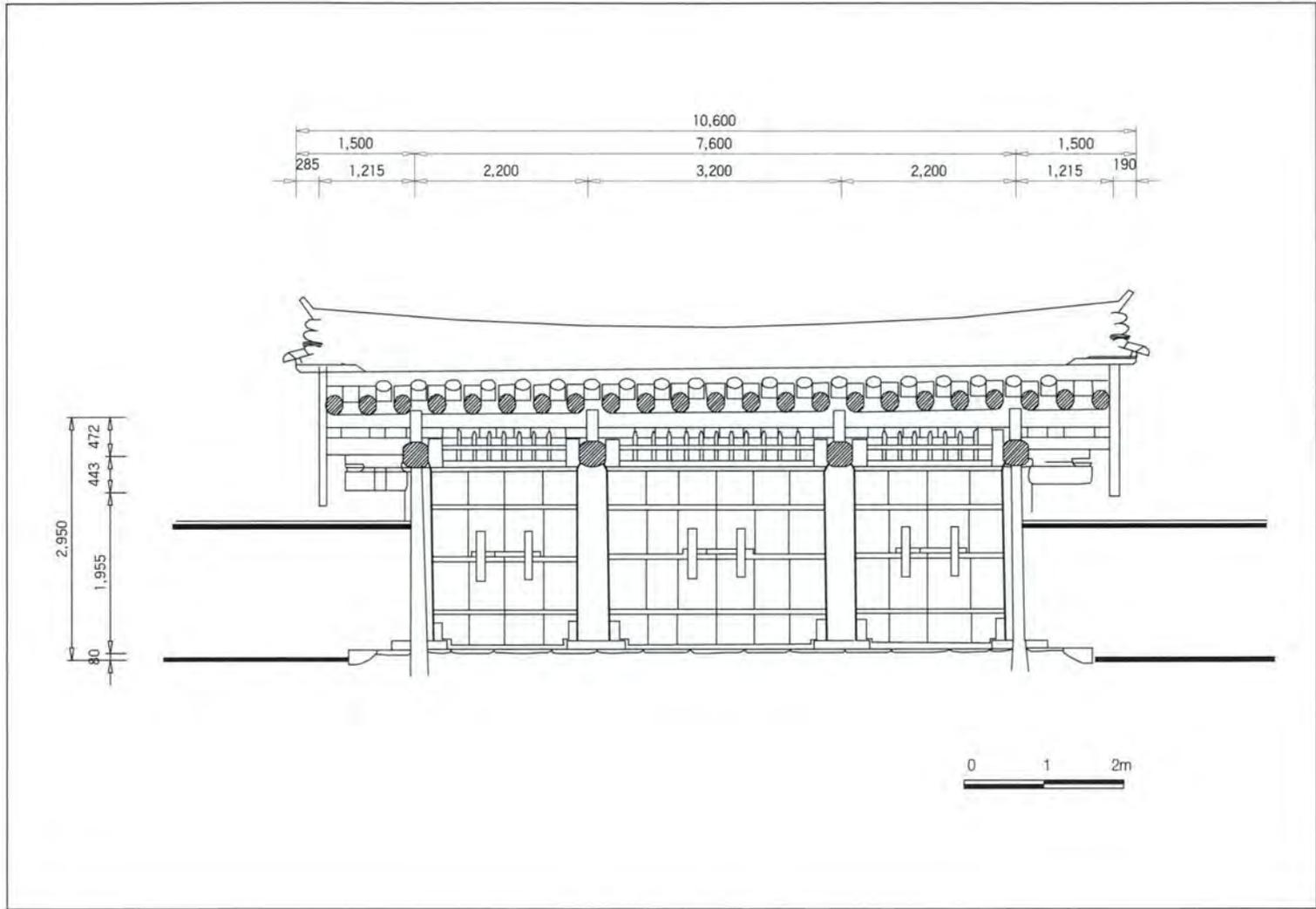
도면 36. 외삼문 배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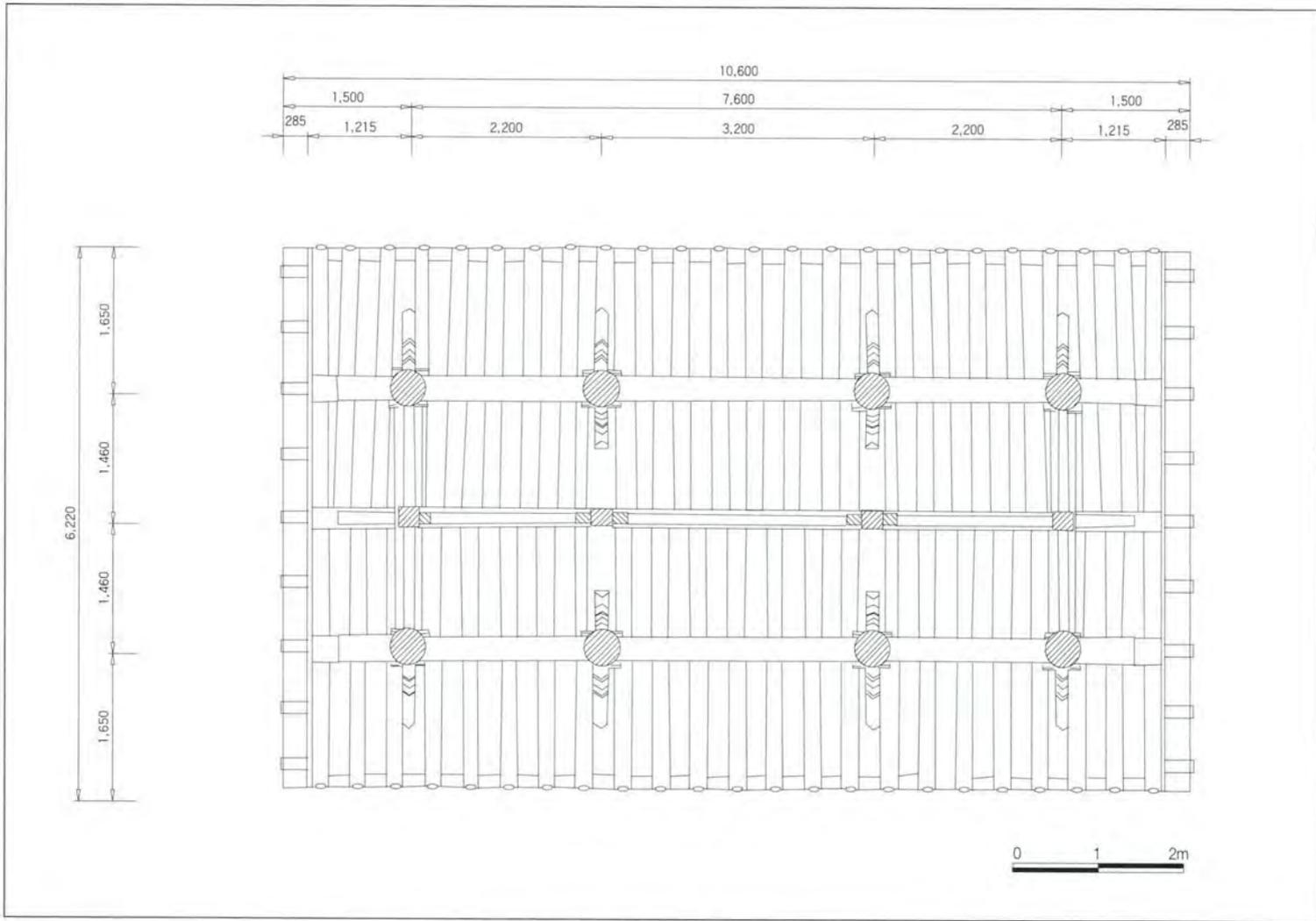
도면 37. 외삼문 측면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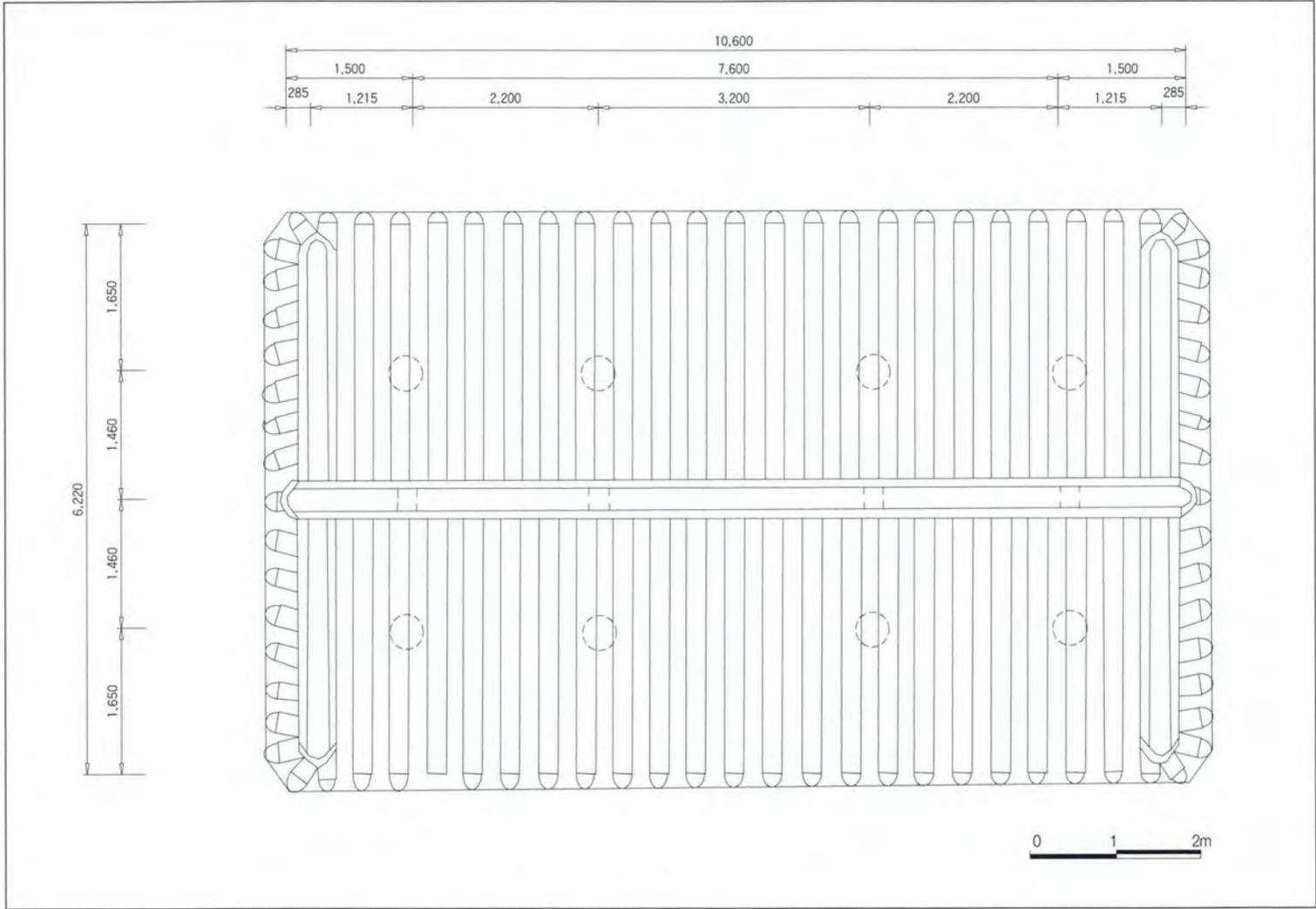
도면 38. 외삼문 종단면도 (1:50)



도면 39. 외삼문 횡단면도 (1:50)



도면 40. 외삼문 양시도 (1:50)



도면 41. 외삼문 외복도 (1:50)

Ⅶ. 조사자 의견 - 정비 복원을 위한 제언

고양시 문봉서원지 지표 및 시굴조사에 따른 조사자 의견 - 정비 복원을 위한 제언

고양시 덕양구 문봉동 산 73-2번지에 위치한 문봉서원지에 대해서는 그간 본격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진행된 바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서원지에 대한 지표 및 시굴조사는 문봉서원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유적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서원지의 전체 대지는 최근까지 진행된 경작과 더불어 인근은 모두 주택지, 상업시설 등으로 인해 모두 파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시굴조사 결과 비록 일부지역에 한정되었지만, 서원에 속해있던 건물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진행했던 지표 및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중인 문봉서원에 대한 복원은 현 위치보다는 다른 지역을 물색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시굴조사 결과 문봉서원은 서쪽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서원의 부속건물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 지형은 형상이 변경되어 남 북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즉 현 대지의 동쪽은 산세를 깎아 경작지화 하는 과정에서 원형이 파손되었고, 서쪽 지역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쪽에는 창고 및 주택이 서원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서원에 속한 건물을 모두 건립하기에는 동서 방향의 지형이 협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형에 서원의 복원을 진행할 경우 강당과 내삼문, 사당, 제실, 외삼문, 홍살문 등의 부속시설을 원상과 같이 동서방향의 일직선상에 배치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게 되어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문봉서원의 복원은 기본계획 도면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 대지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굴 및 지표조사를 진행했던 고양시 덕양구 문봉동 산 73-2번지 일원은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와 출토된 유물로 보아 그간의 추정대로 문봉서원지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시 당국에서는 지표 및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내판을 설치해 이 곳이 문봉서원의 옛 터였음을 알림과 동시에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매장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총서 제9책

고양문봉서원지 기본조사용역 보고서

2001년 7월 20일 인쇄

2001년 7월 25일 발행

편집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발행 : 단국대학교 출판부

등록 : 1968. 2. 27 가제-3-95.

141-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 02) 709-2389

인쇄 : 학연문화사

☎ 02) 865-5072 FAX 02) 853-3679



고양 문봉서원지 기본조사용역 보고서

